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904-0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위원회 활동 보고서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위원회 활동 보고서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Contents

제1장

- 004 발간사
- 006 편집의 방향과 원칙
- 007 일러두기
- 008 위원회 활동 화보

제1장·총론

- 020 제1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유형·판단 기준
 - 020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
 - 022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유형
 - 024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단 기준
- 027 제2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규모 및 범위
 - 027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요 문건 현황
 - 030 2. 블랙리스트 DB 분석 결과
- 042 제3절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요 경과
 - 042 1. 블랙리스트의 징후를 보여준 사건들
 - 050 2. 검열에 맞선 문화예술계의 저항
 - 053 3. 블랙리스트의 존재 확인
 - 057 4. 특검 고발 이후 블랙리스트 판결까지

제2장

제2장·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운영

- 068 제1절 위원회의 설치 경과 및 목적
 - 068 1. 설치 배경과 목적
 - 073 2. 설치 과정
- 075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내용
 - 075 1. 조직 체계
 - 078 2. 전원위원회
 - 084 3. 소위원회
 - 092 4. 운영기구
- 100 제3절 위원회 주요 활동
 - 100 1. 진상조사 주요 활동
 - 108 2. 제도개선 주요 활동
 - 111 3. 백서발간 주요 활동
 - 113 4. 대외소통 주요 활동
 - 116 5. 기타 사업
 - 117 6. 성과와 한계



제 3 장

제 4 장

124	제3장·종합 권고
124	제1절 종합 권고 개관
124	제2절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조치
124	1.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126	2. 책임규명 및 처벌
127	3. 피해자 명예 회복 및 구제를 위한 조치
128	제3절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128	1. 법제도 개선 권고
129	2. 문화행정 개선 권고
130	3. 주요 문화예술기관 개선 권고
136	제4절 후속 진상 규명과 문화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기구의 설치
136	1. 후속 기구 설립의 필요성
136	2.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위원회(가칭) 설립
137	3. 이행협치추진단 운영
140	제4장·별첨
140	자료 1 위원회 활동 일지
149	자료 2 위원회 명단
149	1. 위원회 명단
150	2. 소위 명단
152	3. 전문위원 명단
153	4. 백서 편집위원 명단
154	5. 지원팀 명단
154	6. 파견 검사
155	자료 3 위원회 훈령
159	자료 4 위원회 운영세칙
166	자료 5 위원회 조사세칙
166	1. 조사세칙을 규정하는 이유
166	2. 주요 규정 내용
167	3. 조사 일정 (안)
167	4. 조사 신청에서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까지 경과

발간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데 1년이 지나고, 결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과 문화예술인에게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해야 하는 정부가 도리어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습니다. 공무원은 상명하복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일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러한 사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법령이 아닌 훈령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한계로 조사권 등에 제약이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의 구조와 흐름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진상 규명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적극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 백서는 11개월간의 위원회 활동과 결과물을 정리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기록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성의 거울로 삼아 창작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예산과 활동 기간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역사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백서를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촛불로 삼아 ‘사람이 있는, 사람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2019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 편집의 방향과 원칙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위원회 활동 보고서』, 2권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3권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4권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으로 구성되었다. 1권에서 3권까지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집필을 담당하였다. 3권 말미의 별첨 부분에는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수많은 토론회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들의 옥고들이 참고 자료로 수록되었다. 4권에는 주로 외부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각적으로 조망하였다. 외부 필진이 집필한 부분은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

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의 부록으로 기관별, 분야별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전문이 총 6권으로 편집되었다. 부록 1권은 기관별, 부록 2권과 3권은 공연 분야, 부록 4권은 문학·출판 분야, 부록 5권은 영화 분야, 부록 6권은 시각예술 및 기타 분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이다.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위원(조사관)들이 방대한 양의 관련 문서들과 수많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고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신청 사건들은 주로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조사 신청에 의해 다루어졌고, 직권 사건들은 조사 과정에서 개별 사건들의 범주화 또는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사건명을 설정하였다.

이 백서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실명으로 표기되었으나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 때문에 비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실행 범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되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장관, 차관 및 각 기관장들은 실명을 공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5급 사무관 이상은 직급과 성까지만 표기하였고, 6급 이하는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산하기관의 경우 본부장과 부장 또는 팀장까지는 직급과 성까지 표기하였고, 그 이하는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직급은 사건 발생 당시의 직위를 명시하였다.

문체부는 백서 1차 편집이 완료된 후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편집본을 열람하도록 하여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사자로부터 문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전문위원 확인, 당사자 소명, 사실 재확인 과정을 거쳐 백서의 최종 수정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문체부는 2018년 9월 13일에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나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31일에 최종 이행 계획을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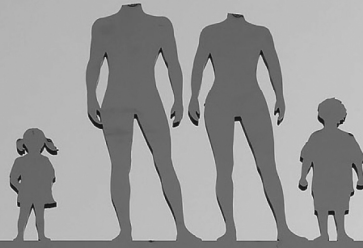
이 역사적인 백서가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발간 소위원회 위원장 **김 미 도**

일러두기

분류	원 명칭	약칭
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조특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특별검사, 특검, 박영수특검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법, 특검법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 중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기소 사건 재판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재판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공운법
법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증언·감정법
법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보호법
법령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문예진흥기금 운영규정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예진흥법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법령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영화진흥심사규정
청와대	청와대	BH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소통비서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교문수석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산하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비서관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대수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실수비
국회	국회 국정감사	국감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기재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국정원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문화부, 문화관광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복지부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부처	행정자치부	행자부
정부부처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실
유관기관	대한승마협회	승마협회
유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유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유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경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 문예위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공연예술센터, 한팩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
유관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복
유관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중
유관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
유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
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예기금
사업·기금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세종도서
사업·기금	영화발전기금	영화기금
기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기타	심의위원 후보단	심의위원 풀

| 위원회 활동 화보 |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라 분류한 문화예술인들은 2016년 11월 4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7,449명의 문화예술인들, 289개의 문화예술단체들은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라고 외치며 박근혜 정부의 예술 검열, 문화행정 파탄,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퇴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 개인용 텐트 다수를 설치하고 이 예술인 캠프촌을 거점으로 하여 다양한 예술 행동을 실천하고 촛불 시민들과 연대하고자 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2016년 11월 11일 광화문 캠프촌에 방문하여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하여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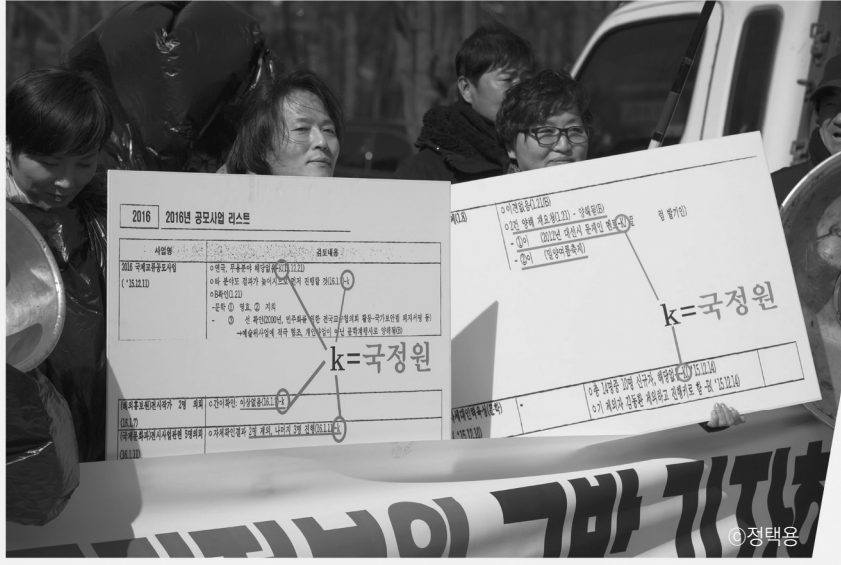
1

2
3

- 1 2016년 12월 9일 광화문 광장. 이날 오후 4시 10분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개표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1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2016년 12월 10일 7차 촛불집회는 서울 80만, 전국적으로 104만 3400여 명이 참여하여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심판을 요구했다.
- 2 2017년 1월 11일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15동 문체부 정문 앞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책임자인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 3 2017년 3월 7일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정보원을 고발하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입안 문건이 만들어진 이후 국정원은 주도로 관여해 블랙리스트를 구체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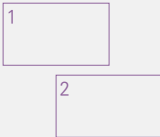


©정택용



©정택용





1 2017년 3월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광화문 광장에 캠프촌을 꾸리고 약 140일 간 노숙 농성을 벌인 문화예술인과 노동자들이 캠프촌을 철거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1차 목표를 달성했으니 해단한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은폐한 점(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 최씨의 이권 개입에 도움을 준 점(직권 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직무상 비밀을 유출한 점(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배), 검찰·특별검사의 조사·압수 수색에 불응한 점(헌법수호의지 없음)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며,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었다.

2 2017년 7월 3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위원은 장르별 문화예술계와 법조계에서 추천 받은 민간 전문가들과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한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신학철 위원장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를 두었다. 첫 회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다.

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7. 31(월) 10:00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정택용



©정택용

1

2

1 2017년 9월 18일, 위원회의 첫 대국민 소통 행사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 현장에서 제보 및 조사 신청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홈페이지 제보센터, 이메일, 우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의 조사 신청을 받았다.

2 2017년 9월 18일, 위원회의 첫 대국민 소통 행사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이 열렸다.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처음으로 알리는 대국민 보고에 이어 블랙리스트 예술가들의 이야기마당이 펼쳐졌다. 이 행사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지원이 배제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개최되었다.

1

2

3



1 2017년 10월 30일 위원회의 언론 브리핑 현장. 위원회는 중요한 조사 결과가 있을 시 보도자료 배포 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렸다.

2 2017년 12월 21일 대학로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에서 '백서 발간을 위한 전체 위원 워크숍'이 열렸다. 30여 명의 민간위원, 전문위원, 백서 편집위원이 모여 백서 발간에서의 쟁점 사항들을 논의하고 백서 구성의 원칙을 점검했다.

3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 정책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8차에 걸쳐 문화재정, 문학, 연극, 영화, 시각예술, 무용 및 전통, 문화산업 분야 별로 이루어졌다. 사진은 2017년 9월 21일 서울 마포구 카페 창비에서 개최된 문학 분야 현장 토론회 개최 현장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

일시 : 2018년 4월 18일(수) 14시-18시 장소 : KT 광화문빌딩 1층 올레스퀘어 드림홀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재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문위원 Workshop

일시 : 2017. 12. 26(화) ~ 27(수) 장소 : 일성설악콘도&리조트



1	
2	4
3	

- 1 2018년 4월 18일(수) 오후2시~6시, KT 광화문빌딩 1층 드림홀에서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17년 7월 31일부터 약 9개월 간 위원회 진상조사 활동 분석, 분야별 현장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현안 분석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제도개선안 연구 및 컨퍼런스 개최, 문화예술계 현장 및 문화예술지원기관 간담회 등 여러 활동을 바탕으로 준비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기관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 2 2017년 12월 26~27일 일성설악콘도리조트에서 전문위원 워크숍이 1박 2일 간 열렸다. 전문위원 및 위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위원회 활동 전략,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방안, 진상조사결과와 제도개선안 연계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3 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공개하고 예술 현장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컨퍼런스는 2018년 1월 17일(수), 18일(목) 양일 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1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4 2018년 5월 8일 11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1강의실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가 있었다. 위원회는 활동 경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 권고를 발표하였다.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사진 제공: 뉴스핌



1

총론

- 제1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유형·판단 기준
- 제2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규모 및 범위
- 제3절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요 경과



1

총론



제1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유형·판단 기준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

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이다.

블랙리스트의 사전적 정의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 인물의 명단이다. 흔히 수사 기관 등에서 위험 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다고 설명한다. 블랙리스트라는 용어 대신 ‘감시 대상 명단’, ‘요주의자 명단’으로 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떻게 표현하든 국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감시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각종 사건에 대한 성명서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선언 등에 이름을 올리거나 창작 활동에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작성한 명단이다.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은 블랙리스트를 기초로 하여 각종 문화예술 사업이나 공연 등 창작 행위에 있어서 해당 문화예술인에게 다양한 인권 침해적 불이익을 가했다. 해당 문화예술인

들의 표현 행위는 어떤 위험을 초래한 것도 아니었고, 감시 당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에 근거한 예술적·정치적·사회적 표현 행위였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문화예술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했다. 그 목적은 문화예술계를 권력에게 순응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비판 의식을 억압하기 위함이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다양하게 차별한 사건들이 있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행위를 침해하고 관련 문화예술인의 예술 활동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파시즘 국가로 전복하려는 범죄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배 세력이 공권력을 오·남용하여 문화예술계 영역에서 위헌적 범죄를 저지른 다양한 사건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더욱이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다. 2016~2017년에 걸친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듯이 한국의 국가체제 자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가범죄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내용
행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준정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기타 공공기관
행위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적 수단 : 법·제도·정책·행정·프로그램의 편법·불법적 운용 비공식적 수단 : 강요·회유 등 비공식적 수단 활용
행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인의 정치적 성향 및 정치적 표현 행위 사찰·감시·관리 문화예술 창작·표현 활동 검열 및 각종 지원 등에서 배제·차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제도·정책·사업 개악
불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조 평등권과 평등원칙, 제22조 예술의 자유,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침해 『문화기본법』 제4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자유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침해
행위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이 다양한 층위에서 부당·탈법·위법·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총체적 국가범죄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유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김기춘 외 6인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문화예술계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거나, 특정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명단을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에 하달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헌·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¹⁾ 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단’을 하달하여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특정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피해가 ‘지원 배제’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 문화예술 창작·표현 활동에 대한 검열,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통제 및 불이익과 차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블랙리스트에 따라 직접적으로 배제당한 피해를 입은 개인·문화예술 단체는 물론, 직접 피해는 없었지만 사찰의 결과로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 배제를 예견하여 지원 사업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과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한 문화예술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 피해 배·보상 또는 치유 조치,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추궁, 재발 방지 대책 등 일련의 ‘적폐 청산’ 또는 ‘과거 청산’은 관련자에 대한 각 위헌·위법·부당 행위에 상응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한 처벌, 각 기관에서의 징계, 관련 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과 개선책 마련, 관련 기관 구성원에 대한 일정한 인권 또는 헌법 교육 등 다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 김기춘 외 6인(조운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조영철)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 병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 유형

피해	유형 정의	사례
사찰	정부의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상·표현의 동태를 살피 조사하는 행위	시국선언 명단 수집, 정치적 성향 파악 등
감시	정부 또는 기업이 시민을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해 행동을 지켜보는 행위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정보 수집 포함)	• 전화 도청, 스마트폰 사용 내역·문자·컴퓨터 해킹 등의 정보 수집부터 도청기,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한 감시 포함
검열	정부가 책, 영화, 연극 등의 내용이 사회적 또는 윤리적 규범에 위배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예술 매체에서 제시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공권력에 의해 예술 작품의 표현이나 공개를 통제·위축하는 행위)	• 사전 검열 : 작품 불허·취소·교체, 작품 내용 개입, 상영 거부, 작품 손상, 작품 철거, 작품 운송 거부 등 • 사후 검열 : 상영 중단, 문화예술인에 대한 고발, 예술가에 대한 과도한 법적 제재 등 • 위축 효과 '자기 검열' : 작품 내용 수정, 지원 신청 철회 등
배제	정부가 다양한 권리, 기회, 자원(예: 고용·참여·예산 지원)으로부터 개인 또는 특정 단체를 조직적으로 제외시키는 행위	• 지원(금) 배제 또는 삭감·중단 등 • 심사위원 선임 배제, 인사 선임 시 특정 인물 배제 등 • 공연자·연출가·작가 배제, 행사 초청 배제, 수상 배제 등 • 대관 배제(공연장 폐쇄), 전시 취소, 강연 취소 등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 •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또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지휘하거나 결정하는 권력의 행사로서 결과를 평가하고 시정하며 조정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정책, 제도, 사업 개편 등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변경·사업폐지 등) • 사업 예산 축소·전용·폐지 등 • 심사 과정에서 심사 반복 요구 등 부당한 압력 행사 • 불공정한 사후 평가를 통한 제재 조치 등 •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등 • 민간의 활동에 부당 개입 (선거 개입, 인사 개입, 포기 각서 요구, 표적감사, 공연 방해 등)
차별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인종, 신체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혜 (특정 단체 및 개인 특혜 지원 등) • 사업 위상 격하 (작품 및 행사 위상 격하, 시상 결과 격하 등) • 고용, 모집,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특혜 또는 배제 등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단 기준

가. 위원회의 관점과 원칙

1) 피해자 관점의 실질적 공정성 원칙

위원회는 진상조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지만,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고발자의 관점에서 실질적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가해자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을 동원한 권력자들이기 때문이다. 재판 또는 징계 절차를 통해 가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자가 법적인 배·보상을 받는 일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하게 복구할 수 없다. 피해자 또는 고발자에게 2차적인 가해도 생겨날 수 있다. 더욱이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저질러진 ‘정책 범죄’는 개별적·구체적·물질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진상 조사와 피해 판단 행위가 오히려 가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 또는 고발자를 재단하여 배제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과 직접적 피해만이 아니라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시행을 통해 국가범죄 세력이 노리는 실제적인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블랙리스트는 그 존재만으로 사회 또는 문화예술계에 가공할 위력을 미칠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개인의 직접적 배제와 피해를 넘어 모든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에게 권력·체제를 비판하지 못하게 위축시킴으로써 맹목적으로 순응하게 하여 행동은 물론 내면까지 강제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안고 있다.

2) 기록자 관점의 합리적 추론 원칙

위원회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시민의 관점에서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조사 권한이 취약하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고발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주장과 의견,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기록해야 한다. 배제 당한 목소리를 되살리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다.

위원회는 수사기관도 법원도 아니다. 증거에 입각해 형사 처벌을 위해 가해자를 기소하는 기구가 아니다. 더욱이 정책을 동원한 범죄의 경우 개별적·구체적 지시나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고발자,

목적자 등의 진술과 정황 증거에 대한 판단, 무엇보다도 조사자의 관점이 중요한 까닭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르지 않고 시민 관점에서 합리적 추론에 따라 조사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접근하면 된다.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사 또는 징계 의뢰 등 권고를 하면 해당 권한 있는 기관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면 될 일이다. 물론 위원회는 최대한 성실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결론을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블랙리스트 행위 유형과 판단

블랙리스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유형화하면, ① 블랙리스트 명단에 따라 직접적으로 배제한 경우가 있다. 명단 작성은 사찰·감시의 결과로서 검열·배제·통제·차별이다. 명단 포함 배경, 경위, 방법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위법(법 관점)·부당(행정 관점)·불합리(시민 관점)한 행위에 따른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피해가 존재한다. 재판·감사에서 가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지만, 직접 배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명단 작성이 사찰·감시의 결과로서 검열·배제·통제·차별이다. 위법(법 관점)·부당(행정 관점)·불합리(시민 관점)한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피해가 없어도 인권적 피해는 있다. 재판·감사에서 가해성을 인정한다.

③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지만, 블랙리스트의 연쇄 작용에 따라 권력에 비판적 의견을 내거나 비판적 행위를 한 문화예술인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배제한 경우다.

④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지만, 민간 영역에서 배제한 경우다. 검열이 겨냥하는 것은 표현의 직접 억제도 있지만, 냉각 효과를 통해 표현의 자유 자체를 축감하는 데 있다. 국가 범죄는 모방범죄를 낳아 사회적 위계 관계에 따라 연쇄적 사찰·감시·배제·차별 효과를 낳는다.

⑤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블랙리스트가 소문으로 유명처럼 떠돌면서 문화예술인으로 하여금 자기 검열하고 자기 제한하게 했던 파급 효과의 경우가 있다.

⑥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관점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원 등에서 배제한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관점이 있다.

⑦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자 과거 불이익 등을 반추하면서 블랙리스트 사후 효과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위의 블랙리스트 행위 유형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① ②는 재판·감사에서 드러나고 가해자 문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위원회 활동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그친다면 사법기관도 아니면서 법의 틀 안에 갇히게 되는 오류를 범한다.

둘째, ③ ④ ⑦은 위원회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제기되었지만, 연관성과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다. 그렇지만 위원회 활동의 존재 이유가 있는 사안이다.

셋째, ⑤ ⑥은 위원회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거의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위원회의 한계이자 향후 진상조사 또는 고발과 증언의 제도를 통해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개별적·집단적·공공적 피해 확인과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이다.

좀 더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블랙리스트 명단 자체는 형식적 판단 기준으로 1차적 판단 기준이다(① ②).

둘째,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지만, 블랙리스트 명단의 파급 효과로서 체제·정권의 배제·불이익 범주에 포함된 경우다. 가해자 관점의 한계가 있지만,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다(③).

셋째,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지만, 체제·정권 비판 행위의 결과로서 지원에서 배제되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의식한 경우다. 피해자·고발자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④ ⑦).

넷째, 피해자가 아닌 고발자 관점에서 사건을 제기한 경우여서 인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설령 기각 또는 각하 하더라도 위원회 한계에 따른 결과임을 인정하고 향후 조사·명예 회복·법제 개선·기억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밝힌다(앞의 세 경우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안, ⑤ ⑥).

블랙리스트 유형과 판단은 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 등에서 참고를 위한 활동 기준일 뿐, 위원회 활동 권한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위원회 활동을 일단락 지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지만 위원회 활동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 그리고 다양한 변종으로 재등장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관심과 기억, 실천을 지속해야 할 책임은 민주시민의 몫이자 국가의 엄중한 책무다.

제2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규모 및 범위

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작성된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입수하여 각 문건에 기재된 인물, 단체들의 명단을 토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이하 DB)²⁾를 구축하였다. 이 DB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단체의 규모 및 피해 사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 블랙리스트의 특성 및 비교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DB 분석을 통해 한시적 위원회로서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블랙리스트 피해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하였는지를 밝힘으로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심각성을 양적 자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배제가 반헌법적·위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대상이었던 많은 문화예술인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및 구체적인 피해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위원회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정리된 이 DB가 후속 진상 규명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기록물화할 예정이다.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요 문건 현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DB’는 위원회가 조사 활동 기간 동안 입수한 공식 문건 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 입안 또는 실행을 위해 작성된 주요 문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정부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특정 문화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의 정치적·사회적 성향이나 활동을 조사·분류하여 관리한 리스트 형태의 자료들이 DB에 포함되었다.

주요 문건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기초를 확인할 수 있는 전략 문건(2건)³⁾과 국정원에서 작성한 ‘좌성향’, ‘정부 비판 세력’ 현황 자료(2건)⁴⁾, 박근혜 정부 시기 문체부에서 배제 실행을 확인 할 수 있는 리스트(4건)⁵⁾, 박근혜 정부 시기 시국

2) 본서 43쪽에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3) 이명박 정부의 문화 정책 기초를 보여주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작성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4)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현황 자료,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현황 및 고려사항」 BH 보고서.

선언 명단(1건)⁶⁾ 등 총 9개의 문건이다. 각 문건에 대한 작성 주체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 현황

문건 제목	작성 시기	작성 주체	내용
①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이명박 정부)	2008.8.27.	청와대 기획관리 비서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정부 출범 후 6개월 후인 2008년 8월 만들어진 문건으로 ‘문화권력’을 ‘이념 지향적 정치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좌파 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분석,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 건전 문화 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과 좌파 자금줄 차단을 대책으로 보고.
② 「문화·연예계 정부비판세력」 (이명박 정부)	2009. 2. ~ 2009. 7.	국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2월 취임한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에 만들어진 리스트.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하여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 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2009년 7월, 당시 김OO 기조실장 주도로 문화·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 퇴출,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함.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 2017.9.11.)
③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박근혜 정부)	2013.3.10.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만들어진 문건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사본 형태로 입수한 문건. 김기춘 비서실장 부임(2013. 8.) 이후 ‘좌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 재건의 호기로 보고 세 확대 시도, 면밀한 대처 필요’라고 청와대에 보고. 문체부는 국정원과 별도로 김기춘 실장의 ‘특정 성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마련 지시’에 대한 관련 대책(2013. 9)을 작성해 보고. 이어 문화예술정책 점검 TF(2013.9.9.) 구성.

5)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문체부의 검증 요청을 받아 선별 통보한 181명의 명단,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리스트 문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및 아르코문화창작기금 배제 대상 명단이 포함된 「청와대 정무리스트 113명」

6) 세월호 관련 시국 선언, 문재인 지지 선언, 박원순 지지 선언 등 소위 「9,473명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명단.

7) 블랙리스트 주요 문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제는 위원회 백서 제2권 진상조사종합보고서 참조.

문건 제목	작성 시기	작성 주체	내용
④ 「문예계내 작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 사항」 (박근혜 정부)	2014.3.19.	국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생산한 블랙리스트로 정치적 편향, 사회 풍자 등을 이유로 들며, 주요 작성향 문화 예술단체 현황, 문예계 주요 작성향 인물 현황 리스트를 첨부함. (국정원 개혁위 보고서, 2017.10.30.)
⑤ 「국정원이 문체부 에 선별·통보한 181명」 (박근혜 정부)	2014. 2. ~2016. 9.	국정원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 통보한 181명 명단으로 이름과 함께 소속 등을 기재. 동일인이 겹쳐서 총 163명으로 파악됨. (국정원 개혁위 보고서, 2017.10.30.)
⑥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리스트」 (박근혜 정부)	2014. 2. ~2016. 9.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성, 보고, 관리한 문건. 담당 공무원은 청와대에 「이념 편향 논란의 사업 선정 관련 대책 방안」(2014.3),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 문건(2014.10),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 사업 신청 현황」(2014.11~2016.1, 7여건),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 문건(2015.3), 「BL(블랙리스트) 관련 경위」 문건 등을 보고함.
⑦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박근혜 정부)	2014.5.	정무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기춘 등 3인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기춘은 각 부처별 보조금 지원 실태 문제점을 점검하는 TF를 만들라고 지시. 민간단체보조금TF가 구성되고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용철 소통비서관이 소통비서관실 박 OO 행정관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케 했으며, 이 문서가 그것임.
⑧ 「청와대 정무리스트 113명」 (박근혜 정부)	2015. 7. 6.	정무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검이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압수한 문건. '2015. 7.6. 받음'이라고 기재된 문건으로 113명의 명단 기록. 동일인이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총 98명의 명단. (※ 예술위가 2014. 10. '2015년도 아르코문학 창작기금사업' 지원 신청 공고, 2014. 11.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 신청)
⑨ 「9,473명 시국 선언 명단」 (박근혜 정부)	2015. 5. 6.	교문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5월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세월호 정부 시령 폐기 촉구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 지정해서 문체부 예술정책과에 통보, 인터넷에서 명단을 확인하여 장관 및 교문수석실에 보고할 것을 지시.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9,473명의 명단을 표로 작성해 보고.

위 9건의 문건 외에도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동향보고 및 대외비 문서 등이 다수 존재하고, 문체부 예술국에서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한 리스트 외에도 타 실국에서 배제 대상으로 관리해 온 유무형의 리스트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니었던 점, 다수의 배제 지시가 공문 또는 문서 형태가 아닌 구두·이메일 등으로 통보된 점을 고려한다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규모는 위의 문건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가 활동 기간 동안 확보하지 못한 대통령기록관 문건, 국정원 문건, 이명박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 문건 등이 확보된다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규모와 그 대상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후속 진상 규명의 과제로 남는다.

2. 블랙리스트 DB 분석 결과

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전체 규모

위원회는 위 9건의 문건을 바탕으로 사찰, 검열, 배제 등의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블랙리스트 규모를 파악하였다. 9개의 문건에 등재된 개인 및 단체의 전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 이름+유사 분야’인 경우 중복으로 간주하였고, 동일 인물·단체의 중복 등재 횟수를 파악·반영하여 피해 건수를 종합하였다. 위 과정을 거쳐 블랙리스트 DB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전체 규모는 중복을 제외하고 단체 342곳, 개인 8,931명 등 총9,273건의 명단(전체 중복 제외)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확인된 인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문건 현황 및 규모

문 건 명	전체 규모 (중복제외)	인원수	
		개인	단체
① 이명박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5	3	2
② 이명박 국정원,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82	82	-
③ 박근혜 청와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29	17	12
④ 박근혜 국정원,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 사항」	309	294	15
⑤ 박근혜 국정원,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181	181	-

문 건 명	전체 규모 (중복제외)	인원수	
		개인	단체
⑥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리스트(2014.2~2016.9)	903	622	281
⑦ 박근혜 청와대, 「문체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200	122	78
⑧ 박근혜 청와대 정무리스트 113명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배제명단 등)	108	104	4
⑨ 9,473명 시국 선언 명단 (세월호, 문재인, 박원순 지지선언 등)	8,229	8,229	-
계 ①~⑧ 합계 (시국 선언 명단 제외, 중복 제외)	1,436	1,094	342
①~⑨ 총계 (선언 명단 포함, 전체 중복 제외)	9,273	8,931	342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된 ①「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좌파 문화 세력 배제를 기조로 하여 블랙리스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보고서로서, 이 문건에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문화예술단체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과 문화연대 2곳이며 명계남, 문성근, 이창동 등 3명의 문화예술인이 적시되었다. 이 문건은 구체적인 명단 형태의 블랙리스트는 아니었으나, 문건에서 제시한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 전략에 따라 문체부 산하 기관장이 직권 면직 또는 해임된 경우가 최소 20건에 달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다⁸⁾.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작성한 ②「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자료에서 확인되는 인원은 총 82명으로, 단체는 적시되어 있지 않고 문화계·배우·영화감독·방송인·가수로 구분하여 강성 성향 69명, 온건 성향 13명의 문화예술인이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정책 기조 입안 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 ③「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건에는 <붙임>형식으로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문건에도 포함된 문화연대, 민예총을 비롯하여 한국작가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다음기획 등 단체 12곳, 문화예술인 17명 등 총 32건이 기재되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④「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 사항」청와대 보고서에는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에 15개 단체,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에 문학·미술·연극·음악·영화·방송·기타 7개 분야로 구분하여 294명 인물들의 특이 사항 및 등급(A·B·C)이 적시되었다.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개입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인 ⑤「국정원이 문체부

8)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 「청와대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집행 결과 분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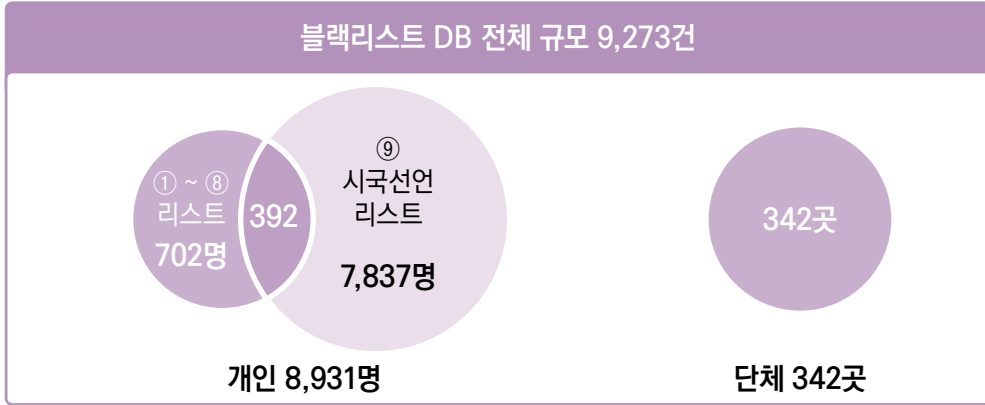
에 선별·통보한 181명」은 2014년 2월~2016년 9월 사이 국정원이 문체부로부터 검증 요청 받은 8,500명에서 배제 대상으로 통보한 348명 중 자료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명단(181명)이다. ⑥「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리스트」는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문체부가 청와대, 국정원 등을 통해 배제 지시를 받은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서, 개인 622명, 단체 281곳이 포함되었다. 그 규모가 국정원 검증 명단보다 월등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배제 지시 등을 포함한 결과이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하달한 배제 지시 명단이 있다. ⑦「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의 「[첨부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과 「[첨부2] 주요 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 현황」, 「[첨부3]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에는 리스트 형태의 배제 인물(122명) 및 단체(78곳)가 적시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문화예술계 외에도 노동, 복지, 교육 분야의 단체와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⑧「박근혜 청와대 정무리스트 113명」 문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검토하여 문체부에 하달한 배제 명단으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 사업 신청자 등 개인 104명, 단체 4곳이 포함되었다. 이는 등재된 113명 중 중복을 제외한 규모이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세월호 시국 선언을 포함한 '9,473명 선언 명단'이 실제 블랙리스트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여 이 명단을 블랙리스트 DB에 포함하였다. ⑨'9,473명 시국 선언 명단'의 실제 규모는 중복자 제외 8,229명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전체 선언 명단의 13%에 해당하는 인원이 두 개 이상의 선언 명단에 중복 등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시국 선언 명단'을 블랙리스트 DB에 포함시켜 블랙리스트 규모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블랙리스트 DB 전체 규모 9,273건 중, ①~⑧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개인)은 1,094명이며, 이중 '⑨시국 선언 리스트'와 중복되는 인원은 전체의 35.8%인 392명이다. 7,837명은 '시국 선언 명단'에만 기재된 인물이며,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찰·검열·배제 대상으로 적시된 인물은 702명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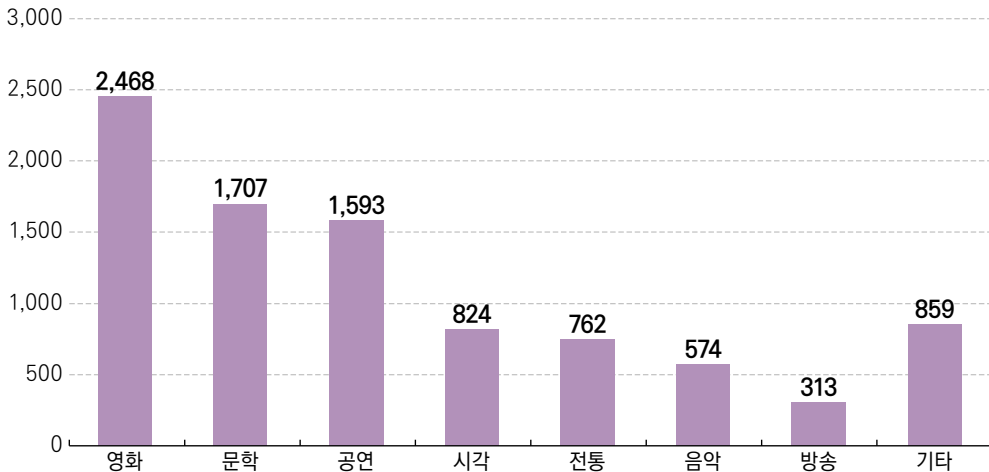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DB 규모



나. 분야별 규모

블랙리스트 문건에 등재된 총 9,273건(개인·단체) 중 ‘분야’가 명시된 경우는 단체와 개인 포함 9,100건으로 확인되었다. 등재된 분야는 영화·문학·공연⁹⁾·시각¹⁰⁾·전통·음악·방송·기타¹¹⁾로 분류하였고, 각 분야별 규모는 다음과 같다.

분야(장르)별 블랙리스트 규모 비교



9) 공연 분야는 연극, 무용, 뮤지컬 등 포함.

10) 시각 분야는 미술, 건축, 사진, 만화 등 포함.

11) 패션, 게임 등 독립된 분야이나 인원수가 소수(10명 이하)인 경우 기타에 포함. 문화 일반, 장애인 등 장르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표기된 경우는 기타에 포함.

총 9,100건 중 영화 분야 블랙리스트는 2,468건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하며, 그 뒤로 문학 분야 1,707건, 공연 분야 1,593건으로 확인되었다. 시각예술 분야는 824건, 전통예술 분야는 762건, 음악 분야 574건이며, 방송 분야는 313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야는 패션, 게임, 문화일반을 포함하여 859건이다.

영화 분야의 경우 ②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82명 중 영화감독, 배우를 포함하여 60명(73%)이 포함되었으며, ④ 박근혜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로 등재된 인물 249명 중 영화인이 104명으로 약 42%를 차지하는 등 국정원에서 관리한 영화 분야 인물의 비중이 높은 것이 반영되어 블랙리스트 규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⑨ 9,473명 시국 선언 명단 중 영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2,665명(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블랙리스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분야(장르)별 블랙리스트 규모 비교

분야	영화	문학	공연	시각	전통	음악	방송	기타	합계
규모(건)	2,468	1,707	1,593	824	762	574	313	859	9,100건
비율(%)	27.1	18.8	17.5	9.1	8.4	6.3	3.4	9.4	100%

다. 블랙리스트 중복 등재 범위

위원회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 또는 단체가 블랙리스트 문건에 중복으로 등재된 횟수를 분석하였다.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전체 9,273개의 개인 또는 단체가 총 12,026회에 걸쳐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하나의 문건에 중복 기재된 경우도 포함한 수치이다. 블랙리스트에 한 번만 기재된 개인·단체명은 7,619개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2회 기재는 1,109개 개인·단체(11.97%, 2218건), 3번 이상 중복 기재는 540개 개인·단체(5.7%, 2189건)를 차지한다.

블랙리스트 중복 기재 횟수

중복기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상
명단	7,619	1,109	279	130	68	24	18	6	4	11

블랙리스트 문건에 5회 이상 중복 기재된 개인 및 단체의 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지원 사업 등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아 그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10회 이상 기재된 경우도 11건이 확인되며 최대 19번 기재된 경우도 있다. 특히 공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중복 피해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중복 기재된 단체는 다음 표와 같다.

블랙리스트 5회 이상 중복 기재 단체

번호	단체명	중복 기재 횟수	번호	단체명	중복 기재 횟수
1	극단 하땅세	19	13	극단 허리	7
2	연희단거리패	15	14	다빈나오	7
3	그린피그	12	15	문화창작집단 공터다	7
4	극단 새벽	12	16	극단 완자무늬	6
5	조은컴퍼니	12	17	극단 이루	6
6	극단 산	11	18	극단 현장	6
7	극단 떼아뜨르 고도	10	19	문화아이콘	6
8	극단 골목길	9	20	서울변방연극제	6
9	예술공장 두레	9	21	ACC프로젝트	5
10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9	22	극단 그림연극	5
11	극단 연우무대	7	23	극단 미연	5
12~	극단 집현	7	24	극단 사니너머	5

라.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키워드 분석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리스트(배제 대상 사업 내용 및 전원 제외 조치 기재)

사업내용	진행상황
사업 "빨갱이, 갱생을 위한 연구" 공연(국가보안법 비판)	전원 제외
미국주에서 완전 독립했는기에 대한 고민을 다룬 연극 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 견, 따돌림을 돌아봄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이슈화한 토론 연극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사찰 및 배제 대상 명단(이름, 단체명)과 함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가 적시되어 있다. DB 분석 결과, 특정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가 블랙리스트로 등재된 사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노무현·문재인 등 특정 정치인 지지 및 정당 활동과의 관련성, 둘째, 4대강 사업 반대,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및 비판 활동, 셋째, 쌍용자동차 또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같은 노동 문제 등에 대한 사회 연대 활동 등이다.

1) 특정 정치인 지지 및 정당 활동 관련

야권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한 인사들과 야권 정치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지지 선언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공연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안철수 대선 후보 선거 활동 참여 및 지지 선언이 블랙리스트 사유로 적시되었다. 또한 도종환, 김두관, 박원순, 노회찬 등 당시 야권 인사와 민주통합당 등 야당 지지자 및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 지지 선언 참여자들도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다. 이와 관련된 블랙리스트 문건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기재 내용(특정 정치인 지지 및 정당 활동 관련)

구분	문건 기재 내용
노무현 관련	△노무현 스토리 제작비 모금(차OO)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인 모임(노문모) 가입(강OO) △노무현 지지 선언 (오OO) △‘노무현 티셔츠’ 제작(강OO)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전야 추모 문화제 추모시 낭송 (강OO)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모 공연(김OO), △참여정부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 △노무현 시민학교 강좌(정OO)
문재인 관련	△문재인 찬조연설 참여(이OO) △정권 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 교수 1000명(정OO) △문재인 후보 대선 광고 촬영(오OO) △문재인 지지 1만명 예술인 △문재인 씽크탱크 담쟁이 포럼(서OO) △문재인 미래캠프 일자리혁명위원회(양OO) 등
기타 정치인 관련	△前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권OO) △도종환과 정치 활동 적극 참여(오장환 문화제 추진위원회) △단체 대표 남편이 (민)도종환 의원 비서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김OO) △상임대표가 박원순 보궐선거 캠프 정책자문지원 역임(도시농업 시민협의회) 등
야당 관련 활동	△야권연대 공동선대위 및 시민사회 멘토단 활동(군포문화재단) △서울시장 선거, 대선 시 야권 후보 선대위 활동 활발(권OO) △2012 야권연대 공동선대위, 시민사회 멘토단, 6.2지방선거 범야권단일후보, 인천 지역 중심 진보적 활동가(민OO), △총선,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연대활동 강화(문OO, 명OO) 등
진보 정당 지지	△문화예술계 531인 민주노동당 지지(이OO) △18대 총선 시 진보신당 지지 선언 및 노회찬 후보 지원 활동(김OO), 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 선언(강릉씨네마떼크) 등

2) 정부 정책 반대 및 비판 활동

블랙리스트 문건에 적시된 배제 사유 중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 선언 및 비판적 문화예술 활동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미국산 소고기 협상, 4대강 사업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 및 용산참사 시국 선언 등을 반정부 투쟁으로 규정해 관련 단체 및 인물들을 블랙리스트로 적시하였다. 세월호 참사 및 역사 교과서 문제 등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도 블랙리스트 사유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주 4.3사건, 4.19 항쟁, 광주 5.18 항쟁 등 시국 사건 관련한 공연·영화 제작 등도 배제 사유에 포함되었다. 또한 정부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언론사, 문화예술 단체, 개인이 다수 등재되었다. 이와 관련된 블랙리스트 문건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기재 내용 (정부 정책 반대 및 비판 활동 관련)

구분	문건 기재 내용
정부 정책 반대·비판	△소고기 협정 폐기 촉구 및 대운하 반대(김OO) △범민련, 실천연대 등과 연대해 평택기지 이전, 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반대 활동, 반미 반정부 투쟁을 통한 문화선동대 역할(민예총) △‘강원래 프로젝트(4대강)’, ‘야만의 언론(보수언론)’, ‘두 개의 문(용산사고)’ 등 시대고발성 독립영화 제작, 상영을 지원하며 반정부 활동 전개(독립영화협회) △용산참사 해결 시국 선언(김OO) △광우병대책회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한글문화연대) △〈MB의 추억〉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한 다큐멘터리(비투이)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집회 △국정원 국기문란 비판 성명, 미국 규탄 성명(정OO) △〈빨갱이, 갱생을 위한 연구〉 공연(국가보안법 비판)(윤OO) △역사교과서 단골반대(변OO) △세월호 관련 추모시 발표(광주전남 작가회의) 등
시국 사건 관련	△제주 4.3사건을 소재(놀이패 한라산) △4.19 범국민 10만 촛불대회(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5.18 연극 제작 경험(놀이패 신명) △연극〈짬뽕〉 5.18을 소재(극단 산) △〈남영동 1985〉 배급사(옛나인필름) △영화 〈26년〉 초반부 애니메이션 제작(오OO) △동백림 사건에 연루된 이응노 작가를 위한 재단 운영(이OO) △문익환 방북 헌정(전통예술 류OO) 등
좌파 성향	△좌파 성향 언론사(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시사인, 한겨레21) △좌파 활동(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맑시즘 교육을 하는 영상교육기관 역할(미디어트) △진보연대 활동(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적기가 논란(음악 민OO) △6.15공동선언 등 좌파 활동(임OO) △민변변호사, 좌파(김OO)

3) 노동문제 등에 대한 사회 연대 활동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투쟁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활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관련 문화예술 활동이 블랙리스트 배제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폭력버스’로 기재하여 관련 활동 또는 지지 선언을 한 영화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였으며, 밀양 송전탑 저지 투쟁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활동 문화예술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및 해직교사 복직 촉구 활동 문화예술인들, 전태일 평전을 다룬 공연을 만든 극단 등도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사회 연대 활동이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블랙리스트 문건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기재 내용(노동문제 등 사회 연대 활동 관련)

구분	문건 기재 내용
노동문제 등 사회 연대 활동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이슈화한 토론 연극(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해)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 법과 자본의 모순을 파헤치는 프로젝트(서울변방연극제) △콜텍 등 노동자 2000일 투쟁 지지(일상예술창작센터) △밀양 희망버스 △폭력버스 지지 영화인 선언 참여 ¹²⁾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활동(김OO) △전태일 평전을 기초로 삶을 추적(탐구생활) △전교조 해직교사 철회촉구(안OO)

4) 등재 사유 주요 키워드별 빈도 분석

블랙리스트 DB에서 개인 및 단체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를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각 키워드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키워드에 대한 기재 횟수 3만여 건 중에서 ‘문재인’ 관련 키워드가 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박원순’, ‘세월호’ 관련 키워드가 각각 16%, 13%를 차지하였다. 이는 ‘9,473명 시국선언’ 명단이 포함된 결과이나, 선언 명단을 제외하여도 ‘문재인’은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로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좌성향/좌파’ 키워드는 3%를 차지하였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용산참사, 한미FTA 등 관련 키워드는 약 1%를 차지하였다.

12) ‘폭력버스’는 한진중공업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뜻함.

주요 키워드별 등재 사유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키워드별 등재 사유 빈도 분석 결과

키워드	포함 빈도	비율(%)
문재인	16,713	55.0
박원순	4,827	15.9
세월호	4,026	13.3
시국선언	3,192	10.5
좌성향/좌파/반정부	968	3.2
야권연대/진보정당	228	0.8
제주해군기지/광우병/용산참사/희망버스/한미FTA	229	0.8
기타	195	0.6
총 계	30,378	100.0

마. 시국 선언과 블랙리스트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배제 명단」(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2014.11.)

경남지역 문화예술인 869명 문재인 지지선언(2012.12.5) / 소설가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인 지지선언(2012.12.5)
문화예술계 531인, 민주노동당 지지선언(2006.5.23)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시인소설가 137명 선언(2012.12.14)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시인소설가 137명 선언(2012.12.14)
문화예술계 531인, 민주노동당 지지선언(2006.5.23)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 선언(2012.12.14)
젊은 문인 183명 MB정부 비판 6.9작가 선언(2009.6.9) / 작가

한국일보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확인」 보도(2016년 10월 12일)로 알려진 박근혜 시국 선언 명단은 여러 블랙리스트 중 일부로, 2015년 청와대 지시를 받아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자에 의해 작성되어 관리되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그동안 이 9,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 기초 자료라고 보았으나, 이 외에도 위원회는 각종 블랙리스트 문건의 검열 및 지원 배제의 사유로 'MB 정부 비판 6.9 작가 선언' 등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의 시국 선언 명단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하였다. 선언 명단의 출처는 대부분 국정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정원법에서 금지한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이 오랜 시기 동안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위원회는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에 ‘배제 사유’로 적시되어 있는 시국 선언 명단을 모두 취합,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아래 표 참조. 선언 명단 취합 규모 21,362명. 중복 포함).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 선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선언’,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용산참사 해결 시국 선언’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명단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국 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및 지식인들의 명단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블랙리스트 문건에 배제 사유로 기재된 각종 시국 선언 명단과 규모는 다음과 같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활용한 시국 선언 목록 및 규모

번호	블랙리스트 작성에 활용한 시국 선언 목록	규모
1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 명단(2000-2001)	1,600명
2	문화예술계 531인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2006)	531명
3	젊은 문인 183명 MB정부 비판 6.9 작가 선언(2009)	183명
4	부산경남지역 문인 121명 야권 단일후보 지지 성명(2012)	121명
5	문재인 멘토단(문화예술)(2012)	37명
6	문화예술종교인 102명 야권 단일화 촉구 시민운동(2012)	102명
7	연극인 1000명 문재인 지지 선언(2012)	1,000명
8	정권교체를 바라는 시인 소설가 137명 시국 선언	137명
9	출판인 516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516명
10	어린이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인 지지 선언(2012)	362명
11	경남지역 문화예술인 869명 문재인 지지 선언(2012)	869명
12	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 선언	269명
13	안철수 팬클럽(작가 74명)	74명
14	연극인 513명 문재인 지지	513명
15	부산지역 지식인 문재인 지지	580명
16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선언	436명
17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1,884명
18	용산참사 해결 시국 선언	664명
19	건국대 교수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 선언	62명
20	동아대 교수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 선언	56명
21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시국 선언	128명
22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 교수 1000명	1,000명
23	연세대학교수 131명 세월호 참사 정부대책촉구 시국 선언	131명

번호	블랙리스트 작성에 활용한 시국 선언 목록	규모
24	강원대 교수 107명 세월호 참사 대통령 책임 시국 선언	107명
25	문재인 지지 1만명 예술인	10,000명
총계		21,362명

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 (일부)

BL진상조사위 구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DB												
구분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문건 내용	
순번 (원본)	분야	이름	① MB 문화규 행화 진략 (2008)	② MB 국정원BL (2009)	③ 박근혜 문화-여성 기반 정비(2013)	④ 박근혜 국정원 작성항 BL (2014)	⑤ 박근혜 국정원 선별 통보 (2014)	⑥ 박근혜 청와대 문제단 체BL	⑦ 박근혜 문체부 예술 정책과 관리 리스트	⑧ 박근혜 청와대 정무 리스트	⑩ 선언 명단	특이 기록사항
32	공연	*그린 피그				○		○	○			④결격 사유 해당 단계. 정치적 편향, 사회 풍자 등. 두뇌수술 ⑥(지원 내용) 국가보안법 가제 (특이사항) 연극인 1000인, 문재인 지지 (조 치사항) 지원 배제 ⑥수기로 작성한 명단. 대정부비판문화활동(7) 2012.3 아권연대 공동선대위 및 시민사회멘토단 등, 2010.5. 6.2지 방선거 분야권 단일 후보 ⑥수기로 작성한 명단(Oh&Kim) ⑦음복합 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11명. 단체명 그린피그 대표자 윤한 솔, 사업명 트로이의 여인들-The Refugees. 검토 내용 심사 제외. 13년 사업 "발견이 강생을 위한 연구" 공연 *국가보안법 비란. ⑦소 외계종문화순회(2015 예술위 공모사업)-21명. 단체명 그린피그(윤 한솔), 사업명 원치않는, 나해석, 사업내용 13년 사업 "발견이, 강생 을 위한 연구" 공연(국가보안법 비란). 진행 상황 전원 제외. ⑦기준관 리 리스트-149명. 연극 35명. ⑦기준관리 리스트-149명. 공연과 관리(중요)-79명. ⑦정무리스트(15.4.13. 현재/중요)-59명 ⑦ 2015 연중 사업 리스트-262명. 사업명 두뇌수술. 전원 제외
286	문학	*창비						○	○			⑥(지원내용)(창작과비평) 발간 지원 (특이사항) 출판인 대표 문재인 지지 (조치사항) 지원 배제 ⑦기준관리 리스트-149명. 공연과 관리 (중요)-79명. ⑦정무리스트(15.4.13. 현재/중요)-59명
298	단체	*충북 민예총						○	○	○		⑥수기로 작성한 명단(Oh&Kim). ⑦기준관리 리스트-149명. 연극 35명. 추가(15.1월) ⑦2015 연중사업 리스트-262명. 열린마당축 제 '난장'. 제외 ⑦2015 연중사업 리스트-262명. 문화전문인력 양 성 및 배치사업 운영단체 지원(15.6)/여가 정책과-1명. 충북민예총 (박종관)/정무 ⑥아르코문화창작기금 BL. 민예총.
120	시각	강영민				○	○		○	○		④문예계 주요 작성항 인물 현황(249명) 13.4故 박정희前 대통령. 육영수 여사 사진 위에 인공기를 게재하는 퍼포먼스 전개. 등급 C ⑤ 팝아트조합 대표, 院보고서. ⑦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사업. 시각 예술 글로벌기행인력 양성사업(8.17) K(9.5) 강영민
396	문학	구중서				○		○	○		○	④문예계 주요 작성항 인물 현황(249명) 작가회의 이사장. 등급 B ⑥ (지원내용) 융합적 인간과 한국문화의 발견 (특이사항) 문재인 멘토 단 참여(문학) (조치사항) 지원배제 ⑦기준관리 리스트-149명. 공연 과 관리(중요)-79명. ⑩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⑩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648	영화	김경형	○			○					○	②강성 성향 ④문예계 주요 작성항 인물 현황(249명) 폭력버스 지지 영화인 선언 참여. 등급 B ⑩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 예술인 594인
1009	기타	김미하	○	○	○							②강성 성향 ③김제동, 김미하는 좌파 행사에서 사회를 맡으며 활동. SNS 등 개인 언동은 자제 ④문예계 주요 작성항 인물 현황(249명) 4대 강 사업, 원전 반대. 등급 C

제3절 |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요 경과

1. 블랙리스트의 징후를 보여준 사건들

문화예술계에서 검열과 관련하여 최초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것은 2013년 9월 12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박정희·박근혜 풍자냐 비하냐. 국립극단 연극 논란」¹³⁾부터라고 할 수 있다. 기사가 문제 삼은 작품은 아리스토파네스 원작, 박근혜 각색·연출로 국립극단이 공연 중이었던 <개구리>(2013년 9월 3일~9월15일, 백성희장민호극장)였다. 당시 기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깎아내리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극을 만든 게 일반 민간 극단이 아닌, 국립극단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¹³⁾고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파악한 박근혜 정권 최초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은 2013년 3월 초순 경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문건에서는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이라는 붙임 자료를 통해 민예총, 작가회의, 문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영화감독조합, 영화프로듀서조합, 독립영화협회 등의 조직 현황 및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예총·문화연대 등 골수 좌파 조직들은 예술위·영진위 등의 정부 지원 대상 선정 시 철저 배제하는 등 점진적으로 격리 추진”¹⁴⁾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2013년 8월 5일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었고 그 직후인 8월 16일에 국정원으로부터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 보고」가 올라갔다. 8월 21일 김기춘은 실수비¹⁵⁾에서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 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¹⁶⁾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국정원이 2013년 9월 3일 작성한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左편향 대응책 보고」 문서에 의하면 「문체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정 편향(左편향) 예술 지원 실태

13) 「박정희·박근혜 풍자냐 비하냐... 국립극단 연극 논란」, <중앙일보>, 2013. 9. 12.
<http://news.joins.com/article/12589817>

14) 청와대 작성,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2013년 3월경.

15)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일명 ‘실수비’라 한다.

16) 2017고합 10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0형사부 판결문」(김기춘, 조운선 등에 대한 1심), 5쪽.

및 대책' 보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예술 지원을 하는 예술위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근거를 남길 경우 잡음 발생 개연성에 대비 8월 30일 저녁 교문수석실 A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자료를 전달¹⁷⁾하였다. 즉 8월 30일 이전에 문체부에 의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예술 지원 실태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가 작성되어 8월 30일에 청와대 A 행정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조운선 등의 재판에 출두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업무 수첩에 의하면 2013년 9월 9일자에 “천안함(영화) 메가박스 상영 문제, 중복 세력 지원 의도, 제작자 펀드 제공자 용서 안돼. 국립극단 개구리 상영 용서 안돼. 각 분야의 중복·친북 척결 나서야.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 비정상적 정상화 일환¹⁸⁾” 등의 기록이 있다. <개구리>가 용서 안된다는 김기춘의 실수비 발언은 9월 9일이었고, 중앙일보의 보도는 9월 12일이었다.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김기춘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개구리>의 내용이 공연 초반에 김기춘에게 보고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이었던 김OO은 “최초로 <개구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9월 3일 개막 주 금요일쯤이었고(2013년 9월 6일~7일경으로 기억) 청와대 문체비서관실로부터 <개구리> 공연이 굉장히 정치 편향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공연을 본 후 김OO 예술국장과 공연 내용에 대하여 통화¹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문체부는 다급하게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과장이 2013년 9월 12일 경 최종 완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는 연극 <개구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하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서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 “현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교체 추진²⁰⁾”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2013년 9월 3일 <개구리> 개막 직후 청와대에서 공연을 먼저 문제 삼아 문체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9월 9일에 실수비에서는 ‘국립극단 개구리 상영 용서 안

17) 국정원 작성,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2013. 9. 3.

18) 「“김기춘, 회의 때마다 나라가 많이 좌편향 돼있다”, 자주 언급」, <중앙일보>, 2017. 5. 4.
<http://news.joins.com/article/21541749>

19) 위원회, 「2017직공5, ‘(재)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20) 김OO 작성,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현안 보고」, 2013. 9. 12.

돼'라는 김기춘의 발언이 나왔다. 바로 그 날, 문체부는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하여 기금 보조사업에서 특정 문예인에 대한 지원 배제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9월 12일 경에는 문체부로부터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가 청와대로 올라갔고, 9월 12일에 중앙일보 기사가 나온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심지어 문체부는 컴퓨터에 '개구리'라는 폴더를 만들어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문건들을 저장했다. 문체부 창조행정 담당관이었던 황OO의 진술에 의하면 "전임자인 김OO으로부터 '개구리'라는 폴더를 인수하게 받았는데, 그 폴더는 청와대 보고용으로 회의 결과를 보관하였던 용도로 알고 있다"²¹⁾고 했다.

문학 쪽에서도 이상 징후들이 일찌감치 감지되었다. 2014년 2월 18일, 주간지 <미래한국>은 2013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체계바라와 탈탈라 라틴아메리카』 등 7종의 도서가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의 정치철학과 배치된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 보도와 관련하여 실수비에서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교문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하달되었고, 문체부는 「이념 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 방안」을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심사위원 구성 시 이념 편향적인 사 배제, 도서 심사 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다.²²⁾

2014년 11월 19일에는 신은미 작가가 조계사에서 '통일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하여 큰 문제가 되었다. 신은미는 북한 여행 경험을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30회에 걸쳐 <오마이뉴스>(2012년 6월~2012년 10월)에 기고하였고 이 기고문들을 묶어 동일 제목의 책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은 2013년 6월에 문체부가 주최하고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하 '책사회')이 주관하는 '우수문학도서' 사업에서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종북 콘서트'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2015년 1월 7일경 '책사회'에 신은미의 책에 대한 우수문학도서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였고, 책사회는 신은미의 책을 우수도서 목록에서 삭제하였다.²³⁾

시각예술 분야에서 이상 징후가 크게 터져 나온 것은 2014년 8월에 개최된 '광주비엔

21) 위원회, 「'2017 직공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2) 위원회, 「2017출1 '창비 등 '세종도서' 부당 배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23) 위원회, 「2017출1 '창비 등 '세종도서' 부당 배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날레 특별전-달콤한 이슬'에 전시 예정이었던 홍성담 작가의 걸개 그림 〈세월오월〉이 전시 취소된 사건이었다. 애초에 〈세월오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했다가 논란이 일자 작가는 박대통령 부분을 달 모양으로 바꾸어 다시 그린 후 테이프를 붙여 수정했지만 전시가 유보되었다. 당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세월오월〉 전시를 유보한 데 항의해 같은 전시에 참여하기로 했던 다른 작가들이 작품을 자진 철거하기도 했다.

〈세월오월〉 사건에서 보듯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는 박근혜 정권의 최대 금기어였다. 작품에서 '세월호'를 소재로 삼거나 '세월호'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철저히 검열 대상이 되었다. 작가 자신은 〈세월오월〉 작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걸개 그림 〈세월오월〉에는 자신도 치유 받지 못한 광주 시민군들이 부러진 총으로 비유된 목발을 짚고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우리 현실의 슬픈 드라마가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들어올려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들의 품으로 귀환시키고 있습니다.²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후인 2016년 11월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세월오월〉 작품 전시와 관련하여 당시 김종 문체부 차관이 압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016년 말에 공개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에서는 2014년 8월 6일에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장(윤장현)"이라는 메모가 발견되고, 8월 8일 대수비²⁵⁾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부터 국민 세금 37억 원(국비 21억 원과 시비 16억 원)을 지원하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 행사(8.8~11.9)와 관련, 광주시가 소위 걸개 그림 작가 홍성담의 〈세월오월〉(VIP 풍자그림)이 전시하기에 부적절한 작품이라고 판단, 작품 설치를 불허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도 국민 혈세의 낭비를 방지하고 광주비엔날레의 권위 유지를 위해서도 예술을 빙자한 저급한 정치성 작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해가야 함²⁶⁾

24) 홍성담 전시 자진 철회 기자회견문 중에서, 2014. 8. 24.

25) 대통령이 주재하고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일명 '대수비'라 한다.

〈세월오월〉 사태는 당시 예술위의 이○○ 예술진흥본부장이 2014년 8월 26일에 예술위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된다. 이 이메일 캡처 화면은 당시 아르코 직원이었던 ○○○에 의해 제보되어 201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바 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 목요일, 서울 대학로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광주비엔날레 홍성담 화가 작품의 전시 논란 사례를 언급, 예를 드시고, 오늘 나주에서 다시 지시하셨습니다. 지시하신 사항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 1) 문예진흥기금 지원 또는 직접 운영하는 공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 2) 유사 사례를 미리 파악,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3)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²⁷⁾

이○○ 예술진흥본부장의 이메일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당시 예술위 권영빈 위원장이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논란을 언급하며 문예진흥기금 지원에 있어 사전 검열 및 예방책을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후 문체부가 2014년 10월에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계획」은 “예술위가 주관하는 일반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종전의 ‘공모(신청 및 접수) → 심사(책임심의위원) → 의결(예술위 전체회의) → 집행’의 구조를 바꾸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²⁸⁾

- 기존 관행적 지원 20~40% 축소
- 심사 단계 1차 검증 강화-정치 편향 작품/단체/예술서 선정 배제, 예술위 간부 간사 심사에 참여 (*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관리)
- 최종 의결 전 재확인(문제 발생 시 최종 의결에서 배제)

26)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병합), 「항소심 증거기록」, 2017. 26, 325쪽~26, 326쪽.

27) 위원회, 「‘2017 직공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8) 위원회, 「‘2017 직공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세월호〉 사태 이후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 직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설치하여 온라인 공간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등 정부는 ‘국가원수 모독’으로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시작했다.²⁹⁾ 2014년 10월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가 머리에 꽃을 꽂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려진 ‘미친 정부’ 전단을 서울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대량 살포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2014년 11월 3일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범죄 법정형 상행 개정’ 지시가 있었다.

한편,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문제에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4년 9월 2일경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2014년 10월 6일경 상영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이후 〈다이빙벨〉 상영 방해를 비롯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외압이 벌어졌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기춘은 10월 2일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 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이빙벨〉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당시 조운선 정무수석은 정무수석실의 정관주 소동비서관 등에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 저지를 위해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은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연락하여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후, 2014년 10월 23일부터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고 되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실수비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청와대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다이빙벨〉을 상영한 것에 대한 제재로 인디스페이스 등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였다. 이밖에도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 및 집행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 등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광범위한 외압이 이루어졌다.³⁰⁾

29) 당시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고 실제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 영장을 받아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자 이용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에 가입하는 소위 ‘사이버 망명’을 벌이기도 했다. 「민간인 정보 ‘전부’ 수집, ‘테러 방지’면 괜찮아?」, 〈오마이뉴스〉, 2016. 10. 7.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8762

30) 위원회, 「2017직영1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이와 같이 박근혜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블랙리스트에 의한 사찰과 검열 및 지원 배제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달하고 있었지만 문화예술계는 이를 본격적으로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연극계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원 배제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14년 말에 ‘2015 서울연극제’가 아르코예술극장 대관 심의에서 탈락한 사태에서였다. 서울연극제가 매년 관례적으로 대관해오던 공공극장의 대관 심의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연극계는 당시 이 사태를 ‘검열’로 인식하지는 못했고 단순히 공공기관이 민간 단체를 표적으로 삼은 연극 탄압으로 규정했다. 서울연극협회는 ‘연극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성명서 발표와 항의 방문 등을 이어갔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연극협회는 급기야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한팩’)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12월 31일, 서울연극협회와 한팩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서울연극제를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2015년 4월 3일 예술위는 “아르코 대극장이 구동부의 중대한 이상으로 긴급 점검 및 보수를 위해 폐쇄된다”고 서울연극협회에 통보했다. 폐쇄 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로 서울연극제 기간(4월 4일~5월 10일)과 절묘하게 겹쳤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연극협회는 국정원이 2014년 3월 17일에 작성한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에 이미 배제 대상 단체로 거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¹⁾

1.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된 것과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³²⁾

또한 국정원이 2014년 9월 26일에 작성한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 단체 지원 차대책 추진」 문서에 따르면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배제시킬 구체적 실행 계획을 고안했다.

31) 위원회, 「2017직공1(2017공2 병합), ‘2015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32) 국정원 작성, 「문체부, 좌성향 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2014. 3. 17.

-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약칭: 문예진흥기금)의 좌성향 단체 지원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도 사업 심의시 신규 사업 지원 확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업을 배제시킬 방침³³⁾

즉,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 심의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함으로써 지원 배제에 따른 명분을 마련하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사업 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신청) 지원 대상을 결정했었던 관행을 개선,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문제 사업을 걸러내는 방향으로 개선책 강구”³⁴⁾를 예술위에 지침으로 하달했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가 2014년 10월 31일에 작성한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관련 보고」에 의하면 “BH 협의 결과, 심사위원 3인(김석만, 김미도, 김채현) 제외, 19개 신청 단체(서울연극협회, 조은컴퍼니 등) 미선정 요청(2014년 10월 30일)”³⁵⁾으로 되어 있어 사전에 심의위원 배제를 비롯하여 서울연극협회를 비롯한 19개 단체를 배제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청와대로부터 하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를 위한 구체적 지시와 실행 계획에 의해 서울연극제는 최종적으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관 심의에서 탈락하였으나 연극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아르코예술극장을 다시 대관해주기로 합의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문체비서관 김소영은 다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³⁶⁾, “예술위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의 구동부 장치 고장을 명분으로 서울연극제 기간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³⁷⁾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서울연극제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개막하는 것을 배제하였다.”³⁸⁾

‘2015 서울연극제’의 아르코예술극장 대관 탈락 사태를 계기로 연극계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학로X포럼’이라는 자발적인 토론의 장을 생성시켰다. 2015년 1월 6일, 대학로X포럼은 ‘우리는 생산적 논의를 원한다!-한팩의 공공성 훼손과 서울연극제 문제에 대한 시선과

33) 국정원 작성,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단책 추진」, 2014. 9. 26.

34) 국정원 작성,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단책 추진」, 2014. 9. 26.

35)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작성,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 공모 관련 보고」, 2014. 10. 31.

36) 서울중앙지법 2017 고합77, 「김OO 증인신문조서(제 2회)」, 37~38쪽, 2017. 4. 25.

37) 이와 관련하여 OOO은, 당시 예술위 보고서에 따르면 관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메뉴얼에 따른) 필요한 조치였으며, 당시 예술위 사무처장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의제기하였다. (2018. 11. 7.)

38) 위원회 「2017직공1(2017공2 병합) ‘2015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주장'이라는 1차 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로X포럼은 블랙리스트 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 연극계의 여론을 모으고 투쟁 방향을 잡아나가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

2. 검열에 맞선 문화예술계의 저항

문화예술계 검열에 대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15년 9월 9일 JTBC를 통해 「지원자에 작품 포기 종용... 순수예술 '정치 검열' 의혹」이 보도되면서부터였다. 박근형 작·연출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예술위 '창작산실' 연극 부문 심의에서 선정되었으나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을 재소집하여 심사 결과 번복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였다. 이 보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암시되는데 예술위 직원들이 박근형을 찾아가 “청와대에서 하는 거”라고 털어놨다는 것과, 심사위원이 “문화관광부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위에서부터 이미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한 것 등이다.³⁹⁾ 예술위는 이미 4월 11일에 마무리된 '2015 창작산실' 심의 결과를 두 달 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심의위원들을 재소집하여 박근형 배제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심의위원 중 연극평론가 OOO가 도종환 의원실에 제보한 후, 도종환 의원실이 JTBC와 자료를 공유하고 JTBC가 관련 당사자들을 취재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2015년 9월 11일에는 한겨레신문이 '2015 아르크문학창작기금' 심의에서도 검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10일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예술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예술위는 문학 장르별 우수작품 100편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2015 아르크문학창작기금' 선정에서 특정 작가 배제 및 결과 조정을 요구했다. 당시 심의위원 중 한 명은 예술위 쪽이 이윤택 등 특정 작가들을 거론하며 “선정 리스트를 줄여 달라” “심사 결과를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예술위 쪽이 14명을 빼야 한다며 이씨를 거론했다. 그 명단을 주겠다고 했지만 위원들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예술위는 지난 7월 이사회를 열어 애초 선정됐던 102명 가운데 32명을 제외한 70명으로 지원대상을 축소 선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윤택 작가는 희곡분야에서 100점을 받아 1순위였음에도 탈락했다.⁴⁰⁾

이러한 내용은 심의위원 중 시인 OOO이 도종환 의원실에 제보함으로써 공개되었다. 이밖에도 2014~2015년 예술위 공모사업 심사 과정을 보면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사례들이 빈번했다.

39) 「지원자에 작품포기 종용, 순수예술 정치검열 의혹」,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 2015. 9. 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26116

40) 「[단독] 100점 맞고 1등 해도... 정부 입맛에 안 맞으면 '탈락」, 한겨레 신문, 2015.9.11.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8473.html

곧이어 열린 2015년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2015년 9월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유기홍 의원이 예술위의 ‘다원 예술창작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안산순례길>도 검열에 의해 배제된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은 심의위원 중 연극평론가 000의 제보에 의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 예상된다면 지원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⁴¹⁾고 했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이나 군인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을 나랏돈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⁴²⁾고 주장했다. 9월 18일에 박대출 의원은 박명진 당시 예술위 위원장에게 ‘첫 번째,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위를 훼손시키는 작품, 두 번째,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폄훼하는 행위, 국가기관이라 하면 대통령도 해당, 세 번째, 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라든지 나라를 지키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모멸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랏돈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에 대해 박명진 당시 예술위 위원장은 “그래서 저도 예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공공자금으로 지원하는 창작 예술품에서 허용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어디인지 이것을 좀 폭넓게 사회적인 의견을 들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⁴³⁾

2015년 9월 9일 JTBC의 검열 의혹 보도와 국정감사 이후 문화예술계가 즐기차게 전개한 저항의 과정들을 나열해본다.⁴⁴⁾

- 2015년 9월 11일, 서울연극협회, ‘문화계의 정치 검열에 대한 서울연극협회의 입장’ 발표
- 2015년 9월 13일, 연극미래행동네트워크,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치 검열과 헌법 파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 2015년 9월 14일, 한국작가회의, ‘예술지원사업 공공성 회복하라’ 성명서 발표
- 2015년 9월 17일, 대학로X포럼 주최, ‘긴급 심야 토론-예술위 검열 사태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2015년 9월 20일, ‘예술인 탄압을 통탄하는 원로·중견 연극인들의 성명서’ 발표
- 2015년 9월 21일, ‘예술 검열을 반대하는 연극 단체들의 연대 성명서’ 발표
한국희곡작가협회 ‘연극계의 정치 검열에 대한 한국희곡작가협회의 입장’ 발표

41) 「2015년 9월 11일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58쪽.

42) 「2015년 9월 11일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86쪽.

43) 「2015년 9월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77~78쪽.

44) 검열백서위원회, 『검열백서 준비 2호』 참조.

임인자, 「빼앗긴 극장, 여기 다시 세우다-‘대학로 X포럼’에서 ‘광장극장 블랙텐트’까지」(한국연극평론가협회 편,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블랙리스트에서 블랙텐트까지』, 연극과 인간, 2017. 6. 수록) 참조.

- 2015년 9월 22일, 연극 저항 집단 백치들, '예술가는 권력을 거부한다-정부의 정치 검열 사태에 대한 연극저항집단 백치들의 성명문' 발표
- 2015년 10월 5일, 979명의 연극인이 서명한 '검열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 2015년 10월 5일, 예술인 연대포럼, '검열과 파행' 개최
- 2015년 10월 6일, 연극인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청문회를 요구하며 979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에게 전달

이처럼 연극계를 위시한 문화예술계의 성명서와 토론회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가 열리고 있던 2015년 10월 18일에 자신들이 기획했던 팝업씨어터 <이 아이>에서 '노스페이스', '수학여행' 등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이유로 공연을 방해했다. 당시 한국공연예술센터 직원이었던 000는 공연 방해 과정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바 있다.⁴⁵⁾ 연극계는 곧바로 페이스북의 대학로X포럼 페이지를 기반으로 대학로예술극장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위원회 조사 결과 10월 17일 <이 아이>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고 판단한 예술위 문화사업부장 임00, 공연예술센터장 유00, 운영총괄부장 양00 등이 대책 회의를 갖고, 다음 날 공연을 방해하기로 하고 10월 18일 <이 아이> 공연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팝업씨어터 공연의 취지에 맞게 공연을 진행해야 하니 카페 테이블도 못 움직이고 음악 소리도 줄일 수 없다고 하는 등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방해하였다.⁴⁶⁾

그 와중에 2015년 10월 24일 국립국악원에서는 11월 6일로 예정되었던 <소월산천>의 협업 공연을 맡은 앙상블 시나위 측에 박근형 연출이 맡은 연극 부분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국립국악원의 예술감독이었던 김서령은 정치적 검열에 반발하며 사퇴했다.⁴⁷⁾ 안무가 정영두는 이에 반발하여 자신의 공연도 취소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영두는 당시 실무자로 지목된 A 주영국 한국문화원장⁴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런던 영

45) 「“수학여행이 왜 나와? 이거 세월호 이야기 아냐?”」, 노컷뉴스, 2015. 11. 4.
<http://www.nocutnews.co.kr/news/4498609>

46)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2017공3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및 검열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47) 「김서령 예술감독, '예술 검열'에 항의 사퇴」, 경향신문, 2015. 11. 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12108365

48) A는 2014년 11월경부터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2016년 2월경부터 주영국 한국문화원장으로 일하였다. 2018년 10월 현재 주영국 한국문화원장이다.

국문화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뚜렷한 해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월산천> 공연 2주 전, 당시 기획운영단장 A가 국악원 과장 및 계장에게 박근형 연출가와의 협업 사실을 문제 삼아 공연 조정을 지시했다.⁴⁹⁾ 이에 직원들이 이미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었던 <소월산천> 홍보물을 삭제했고, 앙상블시나위측과 김서령 예술감독에게 연출 및 연극요소를 뺀 단독음악공연으로 변경 요청을 했다. 앙상블 시나위 측은 이에 반발하여 공연 취소 의사를 밝혔고 <소월산천> 공연이 최종 취소되었다. “당시 A 단장이 국악원 내에서 주도적 권한과 역할을 차지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해당 사건은 국악원 자체 내에서 행해진 사건으로, 당시 기획운영단장이었던 A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립국악원장이었던 김해숙은 “A 단장은 문체부에서 오래 일했기에 당시 사정을 잘 알았을 것이고, 조직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컸을 것”⁵⁰⁾이라며 A의 배제 지시를 인정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 검열 의혹은 2016년으로 넘어오며 정치권에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연극계의 투쟁은 식지 않고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젊은 연극인들은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무려 21개 극단의 22개 작품이 참여하는 ‘2016권리장전_검열각하’ 공연을 릴레이로 이어갔다. ‘검열각하’ 공연 릴레이는 2016년 6월 9일에 시작되어 10월 30일까지 144일 간 21개 극단과 개인의 22개 작품, 110회 공연이 이루어졌다. 크라우드 펀딩에 427명의 후원자들이 참여했고, 332명의 배우와 스태프가 참여했으며, 총 6,671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⁵¹⁾

3. 블랙리스트의 존재 확인

정치권에서 더 이상 큰 문제로 다뤄지지 않던 검열 이슈는 뜻밖에도 ‘최순실 게이트’와

49) 이와 관련하여 A행정관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의제기함. (2018. 11. 12.) (위 보고서는)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을 뿐 관련 정황 전반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음. 9월 25일부터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팀에 차출되어 실질적으로 국악원의 업무를 거의 담당하지 못했다는 사실, 예술감독과 앙상블시나위가 공연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야 공연계획을 처음으로 이메일로 보내온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해 4월 같은 금요공감 시리즈로 박근형 연출이 똑같은 형태로 참여한 공연이 국악원 주최로 있었다는 사실, 동 공연에 대해 관객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부분 있었다는 사실 등이 전부 누락됨. 사업 아이디어나 마케팅에 관한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김해숙 국립국악원장이 예술총감독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공연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검토하여 판단을 내렸음.

50) 「김해숙 국립국악원장 “블랙리스트? 문체부 산하기관은 따를 수밖에”», <한국경제>, 2017. 2. 7.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702070172A>

51) 김미도, 「블랙리스트, 네버엔딩 스토리」,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 2016, 107~108쪽.

함께 다시 터져 나왔다. 2016년 10월 10일 도종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예술위의 2015년 11월 6일 제 173차 회의록을 근거로 블랙리스트가 실재함을 주장했다. 도종환 의원은 2015년 11월 6일 예술위 회의에서 박병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포스코에서 미르재단에 30억 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사회에서 추인만 하는 거라고 해서 부결 못하고 왔다”고 한 내용 등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173차 회의록은 도종환 의원이 다른 경로로 확보한 원본(45쪽)보다 14쪽 분량이 빠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이 사람은 배제한다고 해서 심사에서 빠졌다”고 한 부분도 삭제되어 있었다.

도종환 의원은 2015년 5월 29일 161차 회의록 중 삭제된 부분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언급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권영빈 위원장** : 지금까지는 우리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 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중략) 또 하나는 책임심 의위원을 선정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심사 제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 **정OO 위원** :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책임 역시 일정 부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⁵²⁾

예술위 위원들은 최소한 2015년 5월 29일 이후, 블랙리스트의 작동 여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예술위 위원들의 블랙리스트 묵인, 방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된다. 심지어 예술위 위원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협조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 **장OO 창작지원부장** : 지금 오OO 위원님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결정이 됐으면 오늘 위원회 회의에 상정을 했겠습니다만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하략)
- **오OO 위원** : 이번에 얘기를 들으면서 책임심의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고, 차선책으로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심의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⁵³⁾

여기서 장OO 창작지원부장과 오OO 위원 사이에 오고간 발언들은 ‘2015아르코 문학창작기금’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위에서는 회의록 삭제를 인정하지 않고

52) 예술위, 「제 161차 위원회 회의록」, 2015. 5. 29.

53) 예술위, 「제 161차 위원회 회의록」, 2015. 5. 29.

발뺨하다가 결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본을 차례차례 제출했다. 2015년~2016년 사이 예술위 회의록의 원본과 삭제본을 비교해보면 모든 회의록에서 적게는 2~3쪽, 많게는 14~15쪽씩 삭제하거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문위는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한 박명진 전 예술위 위원장을 고발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끊임없이 추적하던 도종환 의원이 2016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주장했다, 당일 오후 한겨레신문에서 이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를 뒤인 2016년 10월 12일에는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드디어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개되기에 이른다.

문화 정책에 밝은 예술계 한 인사는 이날 한국일보와 만나 “지난 해 5월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서 내려왔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푸념을 들었다”면서 “실제 이 문건을 직접 보기도 했거니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사진으로 찍어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는 저 말이 진짜일까 싶었는데 이후 예술계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들리면서 정부가 이 블랙리스트를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⁵⁴⁾

이 자료는 구체적인 명단 없는 표지뿐이었지만 제보한 이는 “표지 뒤에는 9,473명의 구체적 명단이 리스트로 붙어 있었고, 이 때문에 이 문건은 A4용지로 100장이 넘어가는 두꺼운 분량이었다”고 증언했다.

한국일보에서 공개한 블랙리스트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 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전개된 문화예술계 주요 투쟁 활동은 다음과 같다.

2016년 10월 중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대응 모임 발족
 2016년 11월 4일, 220개 문화단체가 연명하고 7,200명의 문화예술인이 서명한 시국 선언 및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프촌’ 농성 돌입
 2016년 11월 6일,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대응 모임이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 위원회’로 전환
 2016년 11월 8일,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박근혜 퇴진 음악인 2,300명 시국 선언

54)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 10. 12.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 2016년 11월 11일, 대학로 X포럼, '헌 시국에 관한 긴급 심야 토론회'
- 2016년 11월,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 결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예술계)
- 2016년 11월 21일, 독립영화인 800인 시국 선언
- 2016년 11월 21일, 문학인 5개 단체 대통령 퇴진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 2016년 11월 28일, 연극계 '검열백서 준비위원회' 구성
- 2016년 12월 3일, 전국 풍물인 700인 시국 선언(전국 풍물인연석회의)
- 2016년 12월 12일, 박영수 특검에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 고소·고발
- 2016년 12월 26일, 검열백서 준비위원회, 검열백서 발족 포럼
- 2017년 1월 7일, 광화문 광장에 '광장극장 블랙텐트' 설치
- 2016년 1월 10일, 광장극장 블랙텐트 개막식 및 개막 기념 공연
- 2017년 1월 11일~12일, 김기춘, 조윤선 즉각 구속 촉구 1박 2일 블랙리스트 버스(세종시 문체부 항의 방문)
- 2017년 1월 16일,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500여 명 국가 손배 청구 소송 및 기자회견
- 2017년 2월 18일~25일, 검열백서 준비위원회, 검열백서 홍보 및 모금 활동
- 2017년 3월 7일, 블랙리스트 몸통 국정원 검찰 고발 및 기자회견(국정원 앞)
- 2017년 3월 28일, 검열백서 준비위원회, 검열백서 3월 포럼 '예술검열의 사건 개요 및 분석을 위한 개관' 개최
- 2017년 4월 19일, 블랙리스트 건 헌법 22조 표현의 자유 침해 위한 판결 소송 및 기자회견
- 2017년 4월 7일, 각 당 대선 후보 캠프 초청 문화혁신 공개 토론회
- 2017년 4월 18일,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들의' 발족
- 2017년 4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와 정책협약식 진행
- 2017년 4월 27일, 검열백서준비위원회가 '검열백서위원회'로 전환,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검열백서 준비1호: 사건 일지와 질문들』 발간
- 2017년 5월 22일,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500여 명 국가 손배청구 2차 소송 돌입
- 2017년 5월,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가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로 전환
- 2017년 6월 20일, 감사원 문체부 감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 2017년 6월 23일,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블랙리스트에서 블랙텐트까지』 발간
- 2017년 6월 26일, 검열백서위원회, 검열백서 6월 포럼, '블랙리스트 사태를 바라보는 정밀한 관점!' 개최
- 2017년 6월 30일, 문화혁신포럼, 현장 문화예술인+국민인수위원회 공동주최(대한민국 국민정책소통 플랫폼 광화문 1번가)
- 2017년 7월 3일, '청산과 개혁-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대학로 이음센터)
- 2017년 7월 17일, 검열백서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 재판 방청자 및 기록자 간담회
- 2017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블랙리스트와 맞서 싸워온 문화예술계의 투쟁은 지속적이면서도 결사적이었다. 특히 촛불혁명의 중심이었던 광화문 광장에서 2016년 11월 4일부터 2017년 3월 25일까지 지속된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 농성은 촛불혁명을 평화적, 예술적으로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광화문 캠핑촌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궁핍현대미술광장, 광장극장 블랙텐트, 광화문미술행동, 목요춤교실, 하야하락콘서트, 광장신문, 광장토론회, 광정정치학교, 비주류 예술가들의 ‘옴’, 길거리 붓글씨 쓰기, 시화전, 대동풍물판굿, 광장문화행진, 다큐영상제, 매주 토요일 집중 광장 예술행동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광장극장 블랙텐트’는 2017년 1월 7일에 기습적으로 설치되었고 1월 10일에 극단 고래 <빨간 시>로 개막 공연을 연 이후, 416가족극단 노란리본 <그와 그녀의 옷장>, 드림플레이테제21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 연희단거리패 <씻금>, 무브먼트 당당 <광장, 꽃피다>, 극단 돌파구 <노란봉투>, 여기는당연히극장 <킬링타임> 등의 연극들이 이어졌다. 공연 외에도 광장극장 블랙텐트 포럼 ‘공공극장으로서 광장극장 블랙텐트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가 열렸고, 독립영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특별 상영이 있었다. 2017년 3월 9일에 광장극장 블랙텐트는 마지막 공연을 올렸고,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다. 그리고 3월 18일에 광장극장 블랙텐트는 해체되었다.

2016년말 연극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검열백서위원회’는 민간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며 정기적으로 검열백서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검열백서 준비 1호』(2017년 4월)와 『검열백서 준비 2호』(2017년 9월)를 차례로 발간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30일, 가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위한 사전준비팀을 가동시켰다. 약 한 달 간의 사전준비팀 활동을 통해 2017년 7월 31일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국정과제 1호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포함한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을 내걸었다.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 2017년부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4. 특검 고발 이후 블랙리스트 판결까지⁵⁵⁾

블랙리스트에 맞선 법률 투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16년 11월 21일 문화

55) 4절은 김미도, 「블랙리스트 2심 판결의 의미, 이제 시작이다!」(『연극평론』 2018년 봄호)에 정리된 내용을 대부분 참조하였다.

예술인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첫 번째 모임을 갖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모임’(이하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으로 정했다.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개시되었다.

당시 국정조사에 김기춘, 김종덕, 조운선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블랙리스트 이슈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제가 국정조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리스트 사태는 중요한 국정농단이자 문화농단이었다. 국정조사에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과 유진룡 전 장관 등의 증언을 통해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2014년 8월 8일 ‘홍성담 배제 노력, 제제조치 강구’, 9월 5일 ‘다이빙벨-교문위(신성범 간사)-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 10월 2일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 등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 사항이 비망록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다. 홍성담과 다이빙벨(세월호) 관련 김기춘의 지시는 블랙리스트 작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블랙리스트를 통한 문화예술계 탄압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유진룡 전 장관과 다수의 문화부 전직 간부들은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에서 문화부로, 다시 산하기관으로 전달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6년 12월 7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시종일관 모른다고 부인하며 위증을 했다. 12월 15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덕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는 물론 모든 것을 부인하며 위증으로 일관했다.

12월 28일 SBS에서는 블랙리스트 명단의 일부를 확보하고 단독 보도했다. SBS를 통해 문체부 대외비 문건과 정무리스트 문건을 추가로 확보한 도종환 의원은 2017년 1월 9일 열린 청문회에서 조운선 전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는데 그 역시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위증했다.

문체부 대외비 문건을 보면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일차로 블랙리스트 실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심사위원들을 거르고, 문제 사업들에서 ‘특이사항’(블랙리스트)을 배제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배제가 여의치 않으면 사업의 기준이나 방향을 바꾸어서 아예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식이었다. 검열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부 블랙리스트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블랙리스트 적용을 위한 문화행정을 펼치다 보니 지원사업이 3개월에서 최대 6~7개월 까지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12월 21일, 박영수 특검이 공식 수사에 돌입하였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률 대응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공개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

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김기춘 특검 고발 1호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루기로 했다. 고발인들은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모철민, 김소영, A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2016년 12월 12일,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6년 12월 26일부터 특검에서 블랙리스트를 조사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은 2017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는 집단 소송 원고를 모집했고 1차로 474명, 2차로 23명이 원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7년 1월 8일, 박영수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2017년 1월 12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이 구속되었다. 2017년 1월 21일에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과 문체부장관 조윤선이 구속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였다.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블랙리스트 관리자 1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의 기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범행을 실행하기 전 또는 실행할 당시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청와대 또는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교문수석 또는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하여 당선되었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⁵⁶⁾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1심 판결은 문화예술계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좌파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도 되고, 진보주의적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파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도 된다고 읽힌다. 즉 정치권력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 청와대가 예술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멋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대선 과정에서야 특정 정치 기반의 지지를 받는 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는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국민의 분파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자의적·상대적 정치 개념인 좌파·우파를 기준으로 배제와 지원을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 차별 행위다.”⁵⁷⁾

2018년 1월 23일에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특검은 일제히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심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사태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허약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블랙리스트 사태가 명백히 ‘위헌’임을 강조하였다.

2심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그 참모진의 수장인 비서실장이 자신들과 다른 사상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막대한 권력을 남용,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수행했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로 인하여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인사들이 금전적으로 고통이나 불이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상 검증을 받는 것에 비견할 만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하다”고도 하였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 근본 가치로 삼고 있다(헌법 전문, 제 4조). 즉 헌법은 전체주의적 국가를 지양하고,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자치에 의한 국가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상의 다원성을 그 뿌리로 하고, 사상의 다원성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기본권의 보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율성과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와도 맞닿는다. 이러한 헌법상 원리들을 배경으로 볼 때 정부가 자신의 이념적, 정치

56)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02 판결문」, 2017. 7. 27.

57) 유승익, 「국가범죄로서의 블랙리스트 사태의 위헌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 「문화예술계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2017. 9. 27,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적 지향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심판자로 나서서 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문화를 억압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길은 폐색되고 전체주의 국가로의 문이 열린다.⁵⁸⁾

1심 재판부를 비롯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단순한 지원 배제 사건으로 오해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금전적 불이익을 넘어서 국가가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며 얼마나 심각하게 예술가들을 모독했는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문화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도발이자, 다수자의 권력으로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였던 것이다.”⁵⁹⁾ “블랙리스트 사태는 개별적 기본권과 개별 헌법 원칙, 개별 법률만을 위반한 사안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이고도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 즉 국가범죄다.”⁶⁰⁾

1심 재판부는 조운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들을 전부 무죄로 판결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일례로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 부당 개입’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자.

박준우 정무 수석 재임 당시 민간단체 보조금 TF가 운영되고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후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이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으로부터 문예기금 등 지원 신청자 명단을 받아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를 선별하여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무수석실에서 문체부의 문예기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점검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조운선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정관주 비서관이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 사실관계에서 많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피고인 김상률도 피고인 김소영으로부터 문예기금 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

58)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문」

59) 한상희, 「블랙리스트 방지 법제도 연구」,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컨퍼런스(자료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8. 1. 17.~18.,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60) 유승익, 「국가범죄로서의 블랙리스트 사태의 위헌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 ‘문화예술계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2017. 9. 27, 국회도서관 사회의실.

시스템 자체는 보고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라고 하여 2015년 문예기금 지원 배제 과정에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 시스템”이 작동되었고, 그에 따라 지원 배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⁶¹⁾ 2015년 문예기금에 대한 공모는 2014년 10월경 공고가 나가 2014년 11월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을 접수한 상태였는데 이 때는 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 재직(2014년 6월~2015년 5월)하고 있었다.

항소심 판결에서 조윤선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 데는 주요 증인의 진술 반복 및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선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2017년 1월 특검 수사에서 “민간보조금 TF에 대해 설명해줬더니 조 전 수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진술했다가 2017년 5월 1심 법정에 나와서는 “사실 기억이 확실치 않다. 조 전 수석이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 한 게 맞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은 2017년 11월 28일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부가 “좌파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이 문제가 돼 ‘민간보조금 TF가 꾸러졌다. 관련 업무를 정무수석실이 담당해야 한다’고 조 전 수석에게 말한 것이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보수단체 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관련 업무로 조 전 수석에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은 “좌파단체 배제와 우파단체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니 챙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⁶²⁾

박준우 전 수석이 진술을 반복한 것은 2017년 8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며 따라 더 이상 조윤선 전 수석의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는 심지어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새롭게 인정됐는데 그 주요한 근거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 254건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자 실수비 회의 결과 문건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을 지목해 좌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현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정무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중복세력 척결’ ‘보조금 지원배제 업무’ 등 내용이 적혀있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문건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전임자인 박준우 전 수석으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고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꾸준히 업무 보

61) 하주희,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의 분석과 과제」,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 과연 무죄인가”’ 발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7. 8. 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2) 「‘진술반복’ 박준우 전 수석, 조윤선과 오늘 또 ‘진실게임」, <중앙일보>, 2017. 11. 30. 참조.
<http://news.joins.com/article/22163662>

고를 받았다고 판결했다.⁶³⁾

조윤선은 항소심을 통해 블랙리스트 혐의가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혐의도 한층 짙어졌다. 특히 2014년 10월 2일 실수비를 기록한 문건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홍성담 화가의 전시 차단,〈다이빙벨〉영화 상영 차단 등 사안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당시 정무수석인 조윤선을 칭찬했다고 적혀 있다. 또한 친정부·보수단체 지원 명단(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OO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2015년 6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차세대문화인연대(차문연) 대표 최모 씨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보면 ‘우리 수석께서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당시 차문연을 보면서 저 단체를 도우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허 전 행정관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이었고 정무수석은 조윤선이었다.⁶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18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허OO 전 행정관의 재판에 OOO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사회공헌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작정한 듯 허 전 행정관이 전경련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을 늘리도록 압박한 내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OOO 전 본부장은 “아래 직원이 허 전 행정관에게 보수단체 지원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했다”, “청와대가 요구한 보수단체 지원금은 40억이었는데 우리 사정이 어려우니 20억으로 줄여주시면 안되겠느냐고 보고 드렸다가 보고하고 온 이들이 ‘깨졌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014~2016년 사이에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한 배후에 박근혜 정부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박준우·조윤선·현기완 전 정무수석들과 관련 비서관들을 재판에 넘겼다.⁶⁵⁾

항소심 재판부가 조윤선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2014.4.경 청와대 내에서 정무수석실의 주도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진행하여 2014.5. 말경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보고서를 작성, 정무수석실은 이를 피고인 김기춘 및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 ② 위 TF는 문화예술계 등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거나 정

63) 「조윤선 읊아맨 3개의 靑 문건」, 〈헤럴드 경제〉, 2018. 1. 24. 참조.

<http://heraldk.com /2018/01/23/%EC%A1%B0%EC%9C%A4%EC%84%A0-%EC%98%AD%EC%95%84%EB%A7%A8-3%EA%B0%9C%EC%9D%98-%E9%9D%91-%EB%AC%B8%EA%B1%B4/>

64) 「블랙리스트 재판 2라운드 끝... 조윤선 옥죄는 3가지 증거」, 〈머니투데이〉, 2017. 12. 19. 참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909258233210>

65) 「초반, 블랙리스트 폭풍 이을 조짐 보이는 ‘화이트리스트’ 재판」, 〈아시아경제〉, 2018. 2. 8. 참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0809385607255>

부를 비판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차단·배제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이고, 위 보고서는 그 결과물로서 그와 같은 지원 배제의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등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완하여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내용인 사실, ③ 피고인 조윤선은 2014. 6. 경 정무수석으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박준우 전임 정무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신동철 소통비서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수용한 사실, ④ 그 후 2014.11. 경부터 정무수석실에서 교문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명단 검토가 반복하여 이루어진 사실, ⑤ 2015.3. 경 정무수석실에서는 위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에 첨부된 지원배제 대상 명단을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문제부에 하달하여 과거 지원 내역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사실, ⑥ 피고인 조윤선은 위와 같은 정무수석실의 이 사건 지원 배제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인식하고 정무수석으로서 그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됨.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 조윤선은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공소 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됨. 66)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에 따른 실행을 지시·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직원의 증언과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을 보면 좌편향 예술계 인사들의 지원을 배제했다는 주요 보고서 등을 보고 받은 사실과, 이런 보고를 받고도 중단하라고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고인에게 보고된 (지원 배제) 대상 중에는 정부와 다른 이념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 비판을 지지하는 개인·단체가 다수 포함됐다”며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 원칙 등 헌법에 반하고 위법한 조치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위를 고려하면 구체적인 개별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67)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 다수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했고, 담당 직원 또한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도 했다. “김기춘의 지

66)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2018. 1. 23. 선고 보도자료」.

67) 「'블랙리스트' 지시 공모 인정... '박근혜 책임 면할 수 없다」, 〈연합뉴스〉, 2018. 4. 6.
[http:// 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6/0200000000AKR20180406127400004.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6/0200000000AKR20180406127400004.HTML?input=1195m)

시, 문화예술계 ‘좌파’에 대한 지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청와대의 기조는 모두 ‘좌편향’돼 있는 문화예술계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지원 배제 행위의 ‘행동대장’으로서 책임을 공유할 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것이다. 그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지원 배제 방침의 초안 격인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및 후속 조치 내역을 보고 받고 승인한 점 등을 짚었다.⁶⁸⁾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2심 판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까지를 종합하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 최고지도자로부터 고위 공무원들과 문체부 및 산하기관들이 공모한 국가범죄로서의 성격이 명확해졌다. 현재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68) 「법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출발점 박근혜’ 단죄», 〈한겨레신문〉, 2018. 4. 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9540.html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절 위원회의 설치 경과 및 목적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내용

제3절 위원회 주요 활동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절 | 위원회의 설치 경과 및 목적

1. 설치 배경과 목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로 정한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 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향유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사건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을 넘어서 청와대 및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법 행위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문화예술인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예술인들은 2016년 10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라는 문구와 9,473명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였고, 검열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⁶⁹⁾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고, 퍼포먼스를 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서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해결 촉구,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해결 촉구도 함께 요구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특별검사의 출범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⁷⁰⁾

69) 「검은 옷을 입고 예술의 죽음을 애도하다」, 〈시사IN〉, 2016. 10. 25.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1일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하였고, 특별검사는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특검 수사를 진행하였다.⁷¹⁾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총 15개 사항이었고, 주요 사건 수사 결과 7개 사항 중 하나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포함되었다.⁷²⁾

특별검사는 2017년 3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건에 대해 “시장 원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의 다양성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 문화 보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여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하였다.⁷³⁾

이후 김기춘, 조운선, 김종덕, 정관주, 김상률, 신동철, 김소영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⁷⁴⁾ 2017년 7월 27일 1심 선고에서 김기춘 징역 3년, 조운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김상률 징역 1년 6월, 김소영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김종덕 징역 2년, 신동철·정관주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모두 항소하였다. 2018년 1월 23일 2심 선

70) 2016. 11. 15.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의원 등 국회의원 209인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17. 11. 17.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2017. 11. 1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률안은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다.

71) 특별검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사를 위해, 2016. 12. 26. 김기춘의 자택, 조운선의 집무실, 문체부 등을 압수 수색 하였고, 2016. 12. 27.~2017. 1. 7.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김상률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결과」, 2017. 3. 6., 2~10쪽, 34쪽.

72) 특별검사의 주요 사건 수사 결과 7개 사항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등 사건, 국민연금 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최순실 민간 인사 및 이권 사업 개입 사건, 비선 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이다.

7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결과」, 2017. 3. 6., 30쪽.

74) 특별검사는 2017. 1. 9. 김종덕·정관주·김상률·신동철의 구속영장 청구하였고, 그 중 김상률을 제외한 3명에게 1. 12.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후 특별검사는 1. 18.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기춘, 조운선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 2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1. 31.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이 구속 기소되었고, 2. 7. 김기춘, 조운선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김상률, 김소영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고에서 김기춘 징역 4년, 조운선은 징역 2년·법정 구속, 김종덕은 징역 2년, 정관주·김상률·신동철은 각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⁷⁵⁾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대통령,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참모진의 수장인 비서실장, 그 외 수석비서관, 비서관, 장관이라는 정부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정부와 다른 사상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그들의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 등에 의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이를 치밀하게 실행에 옮겼다. 이들의 권한 남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문화예술계에서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 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하여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인사들이 금전적으로 고통이나 불이익을 받았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헌법 질서가 훼손되었고, 법치주의가 후퇴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었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의 ‘사회의 정신적 재생산’ 기능이 저해되었다.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고 하였다.⁷⁶⁾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감사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도 실시되었다. 감사원은 2017년 1월 9일~13일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17년 1월 19일~3월 10일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포함한 사항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13일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문화·관광 분야 감사결과에 대해 “문체부는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배제를 산하기관에 지시하고, 배제 지시 이행 관리를 총괄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등을 차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였다고 발표하였다.⁷⁷⁾

감사원의 문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감사원 감사 결과 규탄 및 진상

75) 2018년 10월 현재 김기춘은 2018년 8월 6일 구속 만료 석방, 조운선은 2018년 9월 22일 구속 만료 석방되었고,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재판은 3심이 진행 중이다. 2018년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태 관련 재판 결과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조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76)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7. 1. 23.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77) 감사원, 「감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2017. 6., 2~9쪽.

규명 촉구 문화예술인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은폐한 감사원을 감사하고 대통령 직속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⁷⁸⁾

이상 특검 수사, 법원 판결,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특별검사, 법원, 감사원의 활동 결과

구분	시기	결과	내용
특별 검사	2016. 12. 1. ~ 2017. 2. 28.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 문화 보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여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향유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법원	2017. 7. 27. 1심 선고 2018. 1. 23. 2심 선고	피해 사례 총 374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배제) 19건 - 문예기금 지원 배제 325건 - 영화분야 지원 배제 8건 - 세종도서 선정 배제 22건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정부와 다른 사상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그들의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 등에 의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이를 치밀하게 실행에 옮겼다. 이와 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헌법 질서가 훼손되었고, 법치주의가 후퇴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었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의 ‘사회의 정신적 재생산’ 기능이 저해
감사원	2017. 1. 9. ~ 2017. 3. 10.	범죄사례 총 444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배제) 66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지원 배제) 298건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9건 - 예술인복지재단 외 34건 - 영화진흥위원회 5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2건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배제를 산하기관에 지시하고, 배제 지시 이행을 총괄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등을 차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

78) 「문화예술인들 “대통령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설치해야”», <뉴스스>, 2017. 6. 20.

문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7년 1월 23일 문체부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문체부가 공공 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 문화예술의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 제도와 운영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⁷⁹⁾ 그러나 문체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 구성을 진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이었던 2017년 4월 26일 문화예술인들과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그 1호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꼽아 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 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고하게 물어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 복원할 것을 다짐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⁸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주요 내용

구분	과제목표	주요내용
국정과제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및 문화행정 체계 혁신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17년부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추진
국정과제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예술인 권익 보장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 예술인 복지 강화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 체계 구축
국정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화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해 유망 콘텐츠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공정한 제작·유통 환경 융복합 콘텐츠 육성·지원 한류 확산 및 동반 진출

79) 송수근 장관직무대행 제1차관, 「문체부 대국민 사과」, 2017. 1. 23.

8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7., 104~105쪽.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도종환 국회의원이 거론되었다. 도종환 후보자는 6월 1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며, “활동 내용을 백서로도 남기겠다”고 밝혔다.⁸¹⁾ 2017년 6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등 정치적 난맥 속에서 내부의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데 인사에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차체에 분위기를 일신해 달라”고 말하였다.⁸²⁾

2. 설치 과정

2017년 6월 19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이번 주 안에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받지 않을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술인들도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이면서 형법 위반입니다. 동시에 헌법 위반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⁸³⁾

도종환 장관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2017년 6월 21일 독립·예술영화인 5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⁸⁴⁾

2017년 6월 30일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구성키로 한 가칭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출범에 앞서 사전준비팀(T/F)을 발족하였다. 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에 대한 문체부와 문화예술계 간 견해 차이로 인해 위원회의 출범이 다소 지연되면서 우선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문체부는 “사전준비팀(T/F) 발족은 진상조사위의 신뢰성을 높이고 문화예술계와의 협치 정신을 발현하기 위한 취지”라며, “그간 소통 과정에서 드러난 예술계 안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사전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⁸⁵⁾

81) 「도종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구성…백서 남길 것」, <연합뉴스>, 2017. 6. 12.

82) 「문 대통령 “블랙리스트 책임 묻고 일신해야」, <경향신문>, 2017. 6. 16.

83) 「도종환 제50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 6. 19.

84) 「도종환 장관, 독립·예술영화인 만나 “블랙리스트 다신 없어야」, <연합뉴스>, 2017. 6. 21.

사전준비팀(T/F)은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포함한 분야별 과장급 인사와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사전준비팀(T/F)에 참여한 민간위원은 문화예술계 장르별 대표 인사로 구성되었다. 사전준비팀(T/F)은 약 한 달 간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운영 방안 등을 결정하였다. 사전준비팀(T/F)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사전준비팀(T/F) 회의의 주요 내용

일자	주요 내용
2017. 7. 3.	대통령 직속기구 출범에는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문체부 훈령 기구로 출범하되 충분한 조사 가능하게 하겠음. 이에 대통령 직속 기구(문화예술계 주장)가 아닌 문체부 장관령에 따른 기구 설치를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
2017. 7. 6.	훈령에 블랙리스트 사건의 성격을 정의하는 전문 채택
2017. 7. 13.	위원 구성 및 활동 기간 논의
2017. 7. 20.	통상의 자문기구가 아닌 진상조사위원회임을 확인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 기간은 6개월,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백서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발간 전문위원 수는 16인
2017. 7. 24.	최종 훈령안 조정
2017. 7. 27.	최종 위원 및 전문위원 구성안 논의
2017. 7. 31.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이처럼 약 한 달 동안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문체부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 훈령 제정,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민간 전문위원 채용, 위원회의 성격, 위원회의 활동 기간, 위원회의 성격, 예산, 위원회의 명칭 등을 논의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위원회의 명칭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결정하였다.

2017년 7월 31일 출범한 위원회는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문체부 소속으로 설치되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85)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협치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 6. 30. 정책브리핑 홈페이지(www.korea.kr)

활동을 수행하고, 백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원은 위원으로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학철 민간위원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하였고, 그 외 민간위원 16인 및 문체부 소속 공무원 3인을 포함한 위원 19인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진상조사·제도개선·백서발간소위원회의 소위원장 및 소속 위원을 결정하였다.

제2절 | 위원회의 구성 및 내용

1. 조직 체계

위원회는 전원위원회와 3개의 소위원회(진상조사·제도개선·백서발간소위원회)로 구성되었다. 모든 위원은 전원위원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소위원회에 소속되었다.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개최 횟수 및 주요 논의 내용

구분	개최 횟수	주요 논의 내용
전원위원회 회의	39회 2017. 7. 31.~ 2018. 6. 27.	운영세칙 및 조사세칙 개정 심의·의결 홈페이지 도메인 및 페이스북 페이지 결정 조사 신청 기간 연장 심의·의결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심의·의결 위원회 예산 집행 계획 논의 신청사건 및 직권사건 조사 개시 여부 심의·의결 신청사건 각하 여부 심의·의결 조사 종결 여부 심의·의결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심의·의결 이의신청 처리 심의·의결 제도개선 권고안 심의·의결 백서 편집(안) 심의·의결

구분	개최횟수	주요 논의내용
진상조사소위원회 회의	44회 2017. 7. 31.~ 2018. 6. 22.	조사세척 제·개정 심의 조사 일정 및 방법 논의 자료 수집 방안 논의 신청사건 및 직권사건 조사 개시 여부 심의 신청사건 각하 여부 심의 조사종결 여부 심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심의 이의신청 처리 심의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19회 2017. 7. 31.~ 2018. 4. 27.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범위 및 운영 계획 논의 제도개선 권고안 심의 기관 제도 개선안 심의
백서발간소위원회 회의	12회 2017. 7. 31.~ 2018. 6. 26.	백서 발간 일정 및 자료 수집 방안 논의 백서 편집 방향 및 편집 위원 구성 논의 백서 심의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장 2인, 민간위원 16인, 문체부 소속 공무원 3인을 합한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은 공연, 문학,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 문체부 기획조정실장·문화예술정책실장·감사관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중, 몇 차례의 위원 변동이 있었다. 민간위원 중 위원회 출범 당시 진상조사 소위원장을 맡았던 조영선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함에 따라 2017년 10월 20일 박태원 위원이 새로 위촉되었다.⁸⁶⁾ 후임 진상조사 소위원장에는 김준현 위원이 호선되었다. 당연직 위원 중에서는, 2017년 9월 4일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갑수 위원이 총무실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장이었던 김영산 위원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었던 이우성 위원이 문화예술정책실장으로 전보되어 당연직 위원직을 수행했다.⁸⁷⁾ 또한 감사관이었던 현완교 위원이 감사원으로 발령 받음에 따라 2018년 5월 11일 김영관 위원이 감사관으로 발령되었다.⁸⁸⁾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2018년 6월 30일 현재 위원 명단과 주요 경력을 정리하면 다

86) 조영선 위원은 2017. 9. 29.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87)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전보 인사 공지」, 2017. 9. 1.

88)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정부 인사 발령 통지」, 2018. 5. 10.

음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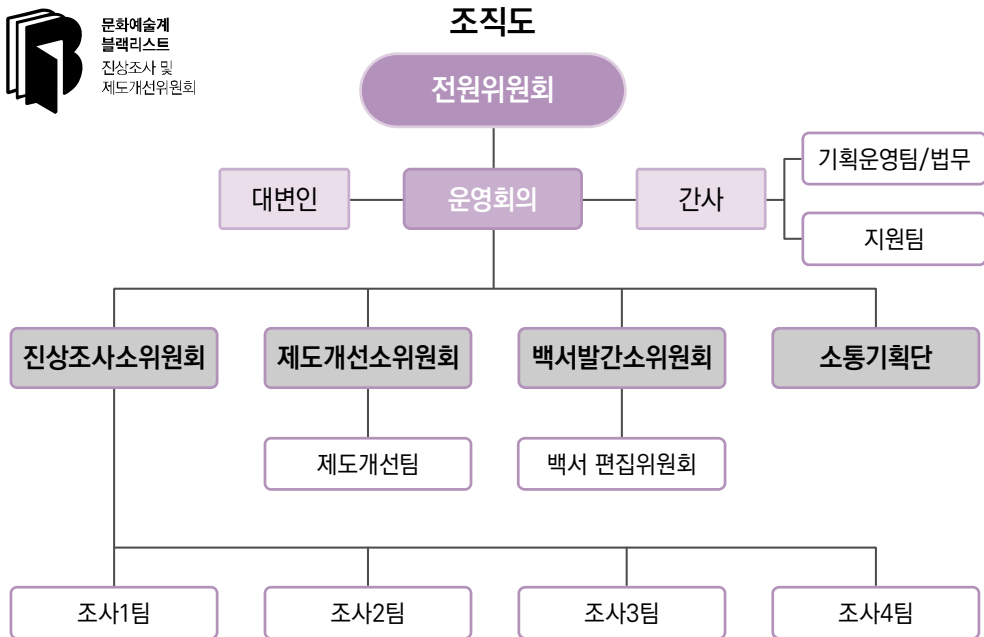
위원회 명단 및 주요 경력

구분	성명	주요 경력	비고/활동기간
공동위원장 2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학철	미술가	
민간위원 16인 (정원 16인, 중도 사퇴 포함 총 17인, 가나다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소통기획단장
	김미도	연극평론가	백서발간소위원장
	김용삼	김포대 문화학부 교수	
	김윤규	안무가	
	김준현	변호사	진상조사소위원장
	류지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박태원	변호사	2017. 10. 20. ~ 2018. 6. 30.
	박희정	수도권풍물연석회의 대표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2017. 7. 31 ~ 2018. 4. 29. 간사
	오동석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2017. 7. 31 ~ 2018. 6. 30. 제도개선소위원장 2018. 4. 30 ~ 2018. 6. 30. 간사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조영선	변호사	2017. 9. 일신 상의 사유로 사퇴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당연직 위원 3인 (정원 3인, 연인원 5인)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2017. 7. 31. ~ 2017. 9. 3 간사, 이후 전보에 따른 위원 해촉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2017. 7. 31. ~ 2017. 9. 3.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2017. 9. 4. ~ 2018. 6. 30. 간사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2017. 9. 4. ~ 2018. 6. 30.
	현완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2017. 7. 31 ~ 2018. 3. 30.
	김영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2018. 5. 11. ~ 2018. 6. 30.

위원회는 실무 인력으로 전문위원, 문체부 소속 공무원, 법무부 파견 검사를 두었고, 그 외 운영회의, 소통기획단을 구성하고 대변인과 간사를 위촉하여 운영하였다.

전문위원은 총 25인으로, 기획운영팀, 진상조사팀, 제도개선팀 등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문체부 지원팀의 소속 공무원은 총 4인으로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무부 파견검사 1인은 법무 자문역을 수행하였다. 위원회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 조직도



2. 전원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는 매주 1회 개최되어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을 심의·의결하였다.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세칙 및 조사세칙 개정, 조사 신청 기간 연장,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위원회 예산 집행 계획,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제도개선 권고안, 백서 편집안 등이 있다.

전원위원회 회의의 개최 일자별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전문위원회 주요 회의 내용

구분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제1차	2017. 7. 31.	<p>민간위원장(신학철) 임명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소위원회: 조영선 소위원장 등 총 11명 - 제도개선소위원회: 이원재 소위원장 등 총 11명 - 백서발간소위원회: 김미도 소위원장 등 총 4명 <p>준비기획단 운영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해, 전문위원 보수 및 자격 요건, 운영세칙, 홈페이지 개설 등 논의 - 구성: 소위원장(조영선, 이원재, 김미도 위원),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송경동 위원, 문체부 지원팀 등 <p>간사 위원 위촉(송경동 위원, 문체부 기획조정실장)</p>
제2차	2017. 8. 11.	<p>운영세칙 수정: 전문위원 업무별 인원 수 삭제 등 전문위원 채용 결과 보고(9명) 위원회 약칭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로 결정 전체 위원 협의체를 '전문위원회'로 명칭 결정 대변인 위촉(이원재 위원) 소통기획단 신설 및 단장 위촉(고영재 위원) 사무 공간 추가 확보 내용 보고(조사실 2실, 민원인 응대 공간)</p>
제3차	2017. 8. 18.	<p>운영세칙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계약 시 채용권자 수정(기획조정실장→문체부 장관) <p>조사세칙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유형 분류(제11조)는 진상조사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 전문위원 조사활동비(제31조2항)는 '조사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금액은 추후 논의 <p>제3차 전문위원회 회의부터 속기록 작성 워크숍 개최 계획 보고(8. 25~26.)</p>
제4차	2017. 8. 25.	<p>전문위원 채용 결과 보고(7명) 소통기획단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및 전문위원 등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원 위촉함 <p>조사세칙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번호 및 사건 유형의 일부 내용 수정 <p>홈페이지 도메인은 blacklist-free.kr로,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은 @blacklistfree2017로 결정 소통기획단이 주체가 되어 위원회의 대외적 활동 개시를 알리는 문화 행사를 기획·추진하기로 결정</p>
제5차	2017. 9. 1.	<p>소통 기획 행사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 개최 방안 논의 준비기획단 해소 및 운영회의 설치 방안 논의 현장 연속 토론회 개최 계획 보고 조사 개시 의결: 직권사건 2건</p>

구분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제6차	2017. 9. 8.	준비기획단 해소 및 운영회의 설치 논의 자료 수집 및 보관 방안 논의 조사세칙 개정 - 조문간 불일치 용어 정비, 자구 수정 등 조사개시 의결: 직권사건 1건
제7차	2017. 9. 15.	인력 총원 필요성 논의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2건, 직권사건 1건
제8차	2017. 9. 22.	소통행사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 개최 결과 보고(9. 18.) - 16개 매체 30여 명 기자 참석, 106건 이상 기사 게재, 현장 조사신청 11건 접수 업무 및 조사 협조를 위한 법무부 검사 1인 파견 위원회 구조 진단 및 인력 총원 필요 논의 국회 토론회 개최 계획 보고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1건, 직권사건 1건
제9차	2017. 9. 29.	국회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9. 27.) - 주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조사 세칙 개정(서식 변경) 2017년 사업 예산 확충 논의 전문위원 예우 조정 및 인력 총원 논의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4건, 직권사건 1건
제10차	2017. 10. 13.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 교체(조영선→김준현) 조영선 위원 사임에 따른 위원 추천(박태원) 2017년 사업 예산 확충 논의 전문위원 예우 조정 및 인력 총원 논의 홈페이지 기능 보강 논의(정책 제안 등)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11건, 직권사건 2건 사전조사 기간 연장 보고: 신청사건 1건
제11차	2017. 10. 20.	신규 위원 임명(박태원) 조사신청 기간이 10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연장 여부 검토하기로 결정(10일 단위로 30일까지 가능)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11건 사전조사 기간 연장 보고: 신청사건 1건
제12차	2017. 10. 27.	조사신청 기간 연장 결정(기존 10월 30일에서 30일 연장) 기자회견 계획 보고(10. 30.)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1건 사전조사 기간 연장 보고: 신청사건 5건
제13차	2017. 11. 3.	기자회견 결과 보고(10. 30.) 전문위원 총원 계획 및 일정 보고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4건, 직권사건 1건 사전조사 기간 연장 보고: 신청사건 1건

구분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제14차	2017. 11. 10.	확대운영회의 개최 계획 논의 2018년 예산 계획(안) 논의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4건, 직권사건 1건 사전조사 기간 연장 보고: 신청사건 1건 각하 의결: 신청사건 3건
제15차	2017. 11. 17.	전문위원 총원 진행 상황 및 업무분장 보고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13건
제16차	2017. 11. 24.	전문위원 채용 결과 보고(9명)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8건 각하 의결: 신청사건 1건
제17차	2017. 12. 1.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8건, 직권사건 5건 사전조사 기간 연장 보고: 신청사건 2건
제18차	2017. 12. 8.	운영세칙 및 조사세칙 개정 - 위원회 운영 및 전문위원의 지위와 역할 등 수정 - 검토보고서 작성 주체 등 각 조문 명확히 함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5건, 직권사건 7건 각하 의결: 신청사건 1건
제19차	2017. 12. 15.	기자회견 계획 보고 전문위원 워크숍 개최 계획 보고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4건, 직권사건 2건 각하 의결: 신청사건 1건
제20차	2017. 12. 22.	기자회견 결과 보고(12. 20.) - 취재 언론사 30여 개, 언론보도 99건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13건, 직권사건 3건
제21차	2018. 1. 5.	전문위원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12. 26~27.) 확대운영회의 개최 결과 보고(12. 28.)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의결(2018. 4. 30.까지)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10건, 직권사건 1건 사전조사 기간 연장 보고: 신청사건 3건
제22차	2018. 1. 12.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부족 상황 해결 요구 사항 논의 조사개시 의결: 직권사건 1건
제23차	2018. 1. 19.	보도자료 시행 결과 보고(1. 11.) - 취재 언론사 20여 개, 언론보도 62건 보도자료 시행 결과 보고(1. 18.) - 취재 언론사 14개, 언론보도 14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체계, 위원 및 전문위원 역할 등 논의 조사개시 의결: 신청사건 3건, 직권조사 1건
제24차	2018. 2. 2.	보도자료 시행 결과 보고(2. 1.) - 위원회 종료 후의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 조사, 후속 조치 등에 대한 계획 마련 필요 예산 집행 계획 등 논의

구분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제25차	2018. 2. 9.	<p>2018년 예산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사업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 회의 참석 사례비를 사업비로 활용하기로 결정 <p>보도자료 시행 결과 보고(2.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재 언론사 33개, 언론보도 43건 <p>기자회견 결과 보고(2.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재 언론사 11개, 언론보도 32건 <p>조사개시 의결: 직권사건 1건</p>
제26차	2018. 2. 23.	<p>전문위원 결원에 따른 채용 결과 보고(2명)</p> <p>조사세칙 개정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 대상: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신청인 - 통지 내용: 진상조사결과 요지→진상조사결과보고서 - 통지 내용 중 개인정보 등은 익명 처리 <p>진상조사결과보고서 심의·의결 방안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별 책임심의위원팀 4개 구성 - 위원 전원이 보고서 초안부터 상시 회람 <p>백서소위 참여 위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준현·박태원·이원재·최승훈·송경동 위원,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소위 위원 위촉 <p>2018년 예산 부족 부분의 일부를 민간위원 회의 참석 사례비 1,800만원을 반납하여 충당하기로 결의. 실행 방안은 운영회의에 위임</p> <p>피해자 및 징계 등 권고안에 대한 기준을 진상조사소위원회에서 논의</p>
제27차 (서면)	2018. 3. 2.	<p>조사개시 의결: 직권사건 1건</p>
제28차	2018. 3. 9.	<p>백서발간 소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 오동석 위원</p> <p>진상조사결과보고서 의견 부분 처리 방안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소위원회 심의 시에는 사실관계 부분만 심의 - 전원위원회에서는 의견란을 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 이후 개별 진상조사결과보고서와 의견란 종합하여 '책임규명권고안' 작성 후, 진상조사소위원회 심의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실시
제29차	2018. 3. 23.	<p>백서 편집안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보고서 -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 제3권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 제4권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 자료집 및 온라인 아카이빙 <p>신청 취하에 따른 조사 종결 결정 의결: 신청사건 2건</p> <p>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신청사건 1건, 직권사건 1건</p>

구분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제30차	2018. 3. 30.	책임규명권고안 및 후속조치권고안 작성 계획 보고 블랙리스트 사건 인정의 판단 기준 마련 논의 - 블랙리스트 사건의 개념 정의, 위원회의 관점, 위원회의 지향점 및 역할, 위원회가 경계해야 할 점, 블랙리스트 사건 범죄 실행 성격 및 책임규명 대상, 블랙리스트 행위 유형과 판단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신청사건 4건
제31차	2018. 4. 13.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의결(2018. 6. 30.까지) 위원회 향후 운영계획안 의결 기자회견 결과 보고(4. 10.) - 방송사 27건, 신문사 18건, 통신사 6건, 사진 보도 65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계획 보고 대국민보고대회 개최 계획 보고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신청사건 9건 제도개선 권고안 채택 의결 3건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개선 권고(안)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선 권고(안)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선 권고(안)
제32차	2018. 4. 20.	보도자료 시행 결과 보고(4. 12.): 총 18건 보도자료 시행 결과 보고(4. 13.): 총 14건 확대운영회의 개최 결과 보고(4. 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계획 보고 대국민보고대회 개최 계획 보고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신청사건 8건 제도개선 권고안 채택 의결 1건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안)
제33차	2018. 4. 2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4. 26.) - 국회 교문위원회 국회의원 6인, 문화예술계 관계자 등 70여 명 참석 대국민보고대회 개최 계획 보고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신청사건 28건, 직권사건 2건
제34차	2018. 4. 30.	송경동 위원의 간사 사임에 따라 이원재 위원이 간사직 수행하기로 함 대국민보고대회 명칭을 '진상조사 결과 발표'로 수정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신청사건 26건, 직권사건 12건 신청 취하서 접수에 따른 조사종결 결정 의결: 신청사건 1건 제도개선 권고안 채택 의결 5건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행정 개선 권고(안)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선 권고(안)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선 권고(안)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선 권고(안)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권고(안)

구분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제35차	2018. 5. 25.	위원회 5~6월 운영예산(안) 보고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신청사건 10건, 직권사건 8건 이의신청 재조사 의결: 신청사건 1건 이의신청 인용(일부) 의결: 신청사건 1건 이의신청 기각 의결: 신청사건 2건 조사개시 의결: 직권사건 1건
제36차 (서면)	2018. 6. 1.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직권사건 5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경정 의결: 직권사건 1건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신청사건 1건
제37차	2018. 6. 8.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직권사건 2건 신청 취하서 접수에 따른 조사종결 결정 의결: 신청사건 1건 이의신청 재조사 의결: 신청사건 4건, 직권사건 1건 이의신청 기각 의결: 신청사건 2건, 직권사건 1건
제38차	2018. 6. 2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경정 의결 건 책임규명권고안 의결
제39차	2018. 6. 26.	백서 의결

3. 소위원회

위원회는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각 소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진상조사소위원회⁸⁹⁾

진상조사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4인으로 구성되었다.

진상조사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사건 및 직권사건의 조사개시 여부, 신청사건의 각하 여부, 사전조사 기간 연장 여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방안, 조사세칙 및 조사 일정 등도 논의하였다. 진상조사소위원회 회의의 개최 일자별 주요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89)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제2권에서 기술된다.

진상조사소위원회 주요 회의 내용

구분	개최일	참석인원	주요 회의 내용
제1차	2017. 7. 31.	소위원장 등 13인	• 소위원장(조영선) 선출
제2차	2017. 8. 8.	소위원장 등 10인	• 관련 기관 자료 요구 방안 논의 • 전문위원 채용 일정 등 논의 • 언론 대응 방안 논의
제3차	2017. 8. 16.	소위원장 등 11인	• 조사세척 및 조사 일정 논의
제4차	2017. 8. 22.	소위원장 등 7인	• 조사세척 변경 논의
제5차	2017. 8. 29.	소위원장 등 12인	• 전문위원 업무 분장 논의 • 문체부 등 관련 자료 협조 방법 논의 • 직권조사 여부 심의: 2건 • 홈페이지 조사 신청 매뉴얼 검토
제6차	2017. 9. 4.	소위원장 등 9인	• 직권조사 여부 심의: 1건 • 자료협조 방안 논의
제7차	2017. 9. 11.	소위원장 등 8인	• 조사개시 여부 심의: 2건 • 직권조사 여부 심의: 1건
제8차	2017. 9. 18.	소위원장 등 10인	• 조사개시 여부 심의: 1건 • 직권조사 여부 심의: 1건 • 문체부 및 산하기관의 자료제출 상황 공유
제9차	2017. 9. 25.	소위원장 등 8인	• 조사개시 여부 심의: 4건 • 직권조사 여부 심의: 1건
제10차	2017. 10. 11.	소위원장 등 8인	• 소위원장 호선(조영선→김준현) • 조사개시 여부 심의: 11건 • 직권조사 여부 심의: 2건 • 사전조사 기간 연장 여부 심의 1건
제10.5차 (서면)	2017. 10. 16.	소위원장 등 11인	• 조사개시 여부 심의: 11건 •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병합: 2건
제11차	2017. 10. 23.	소위원장 등 7인	• 신청 접수 기간 연장 심의 - 기존 10월 30일에서 30일 연장 • 조사개시 여부 심의: 신청사건 1건 • 사전조사 기간 연장 여부 심의: 신청사건 4건
제12차	2017. 10. 30.	소위원장 등 8인	• 조사개시 여부 심의: 4건 •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병합: 1건
제13차	2017. 11. 6.	소위원장 등 7인	• 조사개시 여부 심의: 신청사건 4건 • 직권조사 여부 심의: 1건(신청사건 2건 병합) • 각하 여부 심의: 3건 • 사전조사 기간 연장 여부 심의: 1건

구분	개최일	참석인원	주요 회의 내용
제14차	2017. 11. 13.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 여부 심의: 12건 •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병합: 1건
제15차	2017. 11. 20.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하 여부 심의: 1건 • 조사개시 여부 심의: 9건
제16차	2017. 11. 27.	소위원장 등 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 여부 심의: 8건 • 사전조사 기간 연장 여부 심의: 2건
제17차 (서면)	2017. 11. 30.	소위원장 등 1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조사 여부 심의: 5건
제18차	2017. 12. 4.	소위원장 등 1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 여부 심의: 5건 • 직권조사 여부 심의: 2건 • 각하 여부 심의: 1건
제19차 (서면)	2017. 12. 7.	소위원장 등 1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조사 여부 심의: 5건
제20차	2017. 12. 11.	소위원장 등 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 여부 심의: 4건 • 직권조사 여부 심의: 2건 • 각하 여부 심의: 1건
제21차	2017. 12. 18.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 여부 심의: 신청사건 14건 • 직권조사 여부 심의: 3건
제22차	2017. 12. 26.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 여부 심의: 6건 • 직권조사 여부 심의: 1건 • 사전조사 연장 여부 심의
제23차 (서면)	2018. 1. 2.	소위원장 등 1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 여부 심의: 5건 • 사전조사 연장 여부 심의: 3건
제24차 (서면)	2018. 1. 11.	소위원장 등 1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조사 여부 심의: 1건
제25차 (서면)	2018. 1. 18.	소위원장 등 1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 여부 심의: 3건, • 직권조사 여부 심의: 1건
제26차 (서면)	2018. 2. 5.	소위원장 등 1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조사 여부 심의: 1건(신청사건 1건 병합)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초안 보고: 직권조사 1건
제27차	2018. 2. 12.	소위원장 등 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초안 보고: 신청사건 1건
제28차	2018. 2. 19.	소위원장 등 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초안 보고: 직권조사 1건
제29차 (서면)	2018. 2. 26.	소위원장 등 1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조사 여부 심의: 1건 • 조사결과보고서 책임심의위원 활동 방법 등 논의
제30차	2018. 3. 5.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초안 보고: 직권조사 1건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의견(권고) 부분 처리방안 논의
제31차	2018. 3. 12.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초안 보고: 신청사건 2건

구분	개최일	참석인원	주요 회의 내용
제32차	2018. 3. 19.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취하서 접수에 따른 조사 종결 여부 심의: 2건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신청사건 3건, 직권조사 1건
제33차	2018. 3. 26.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신청사건 3건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세부 진행 절차 관련 논의
제34차	2018. 4. 2.	소위원장 등 1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신청사건 3건
제35차	2018. 4. 9.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신청사건 6건
제36차	2018. 4. 16.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신청사건 10건
제37차	2018. 4. 23.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신청사건 17건, 직권조사 2건
제38차 (서면)	2018. 4. 26.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신청사건 11건
제39차	2018. 4. 27.	소위원장 등 1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신청사건 12건, 직권조사 4건
제40차	2018. 4. 30.	소위원장 등 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취하서 접수에 따른 조사 종결 여부 심의: 1건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신청사건 14건, 직권조사 10건
제41차	2018. 5. 23.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신청사건 9건, 직권조사 10건 • 이의신청 처리방향 심의: 4건
제42차	2018. 5. 29.	소위원장 등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직권조사 4건 • 진상조사결과보고서(경정) 심의: 직권조사 1건 • 이의신청 처리 방향 심의: 1건
제43차	2018. 6. 5.	소위원장 등 1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직권조사 2건 • 조사 종결 여부(안): 신청사건 1건, 직권조사 2건 • 이의신청 처리 방향 심의: 8건 • 책임규명 권고(안) 원칙과 기준 등 논의
제44차	2018. 6. 22.	소위원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처리방향 심의: 3건 •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 신청사건 7건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경정(안) 심의: 신청사건 1건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 심의

나. 제도개선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해 2017년 7월 31일부터 9개월 간 분야별 토론회 개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도개선안 연구 및 컨퍼런스 개최, 문화예술계 현장 및 문화예술 지원기관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소위원회는 9개의 권고를 심의·의결하였다. 권고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행정 개선 권고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선 권고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선 권고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개선 권고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선 권고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선 권고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선 권고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권고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의 개최 일자별 주요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주요 회의 내용

구분	개최일	참석인원	주요 회의 내용
제1차	2017. 7. 31.	소위원장 등 13인	소위원장(이원재) 선출
제2차	2017. 8. 8.	소위원장 등 12인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범위 및 운영 계획 논의
제3차	2017. 8. 18.	소위원장 등 15인	조사세척 일부 내용 수정안 논의 문체부 제도개선 진행 상황 검토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 계획안 논의 기관별 정책별 추진 현황 대면 브리핑 기획
제4차	2017. 9. 8.	소위원장 등 15인	제도개선소위 사업계획안 논의 문체부 진행 상황 검토
제5차	2017. 9. 22.	소위원장 등 10인	분야별 현장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문화재정(9. 18.), 문학(9. 21.) 기관별 제도개선 브리핑 연구 영역 세부 계획안 검토

구분	개최일	참석인원	주요 회의 내용
제6차	2017. 10. 20.	소위원장 등 10인	분야별 현장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연극(9. 25.), 영화(9. 29.), 시각예술(10. 13.) 제도개선소위원회 향후 방향성 논의 현안 수집 및 분석 방안 논의 연구 용역 진행 상황 검토
제7차	2017. 12. 1.	소위원장 등 7인	주요 기관 제도개선안 초안 논의 분야별 현장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출판(10. 20.), 무용 및 전통(10. 20.), 문화산업 분야(11. 14.)
제8차	2018. 1. 5.	소위원장 등 12인	제도개선 권고안 논의 기관 제도개선안 검토 컨퍼런스 일정 논의
제9차	2018. 1. 19.	소위원장 등 9인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결과 평가(2018. 1. 17~18.) 향후 활동 계획 논의
제10차	2018. 2. 9.	소위원장 등 9인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 최 결과 보고(1. 31.) 주제별 전문가 간담회 진행 상황 보고 권고안 작성 기획안 검토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제도개선안 작성 방안 논의 향후 소위원회 일정 논의
제11차	2018. 2. 23.	소위원장 등 10인	권고안 초안 샘플 검토 향후 간담회 일정 논의 권고안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 논의
제12차	2018. 3. 9.	소위원장 등 13인	소위원회 향후 운영 계획 및 일정 논의 권고안 전원위원회 의결 일정 논의 권고안 작성 및 심의 절차 논의
제13차	2018. 3. 16.	소위원장 등 12인	기관간담회, 현장 간담회 일정 논의 권고안 수정안 논의
제14차	2018. 3. 23.	소위원장 등 14인	향후 소위원회 일정 및 계획 논의 권고안 심의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 선 권고(안)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개선 권 고(안)
제15차	2018. 3. 30.	소위원장 등 17인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 토론회 개최 일정 논의 권고안 검토
제16차	2018. 4. 6.	소위원장 등 15인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 토론회 진행 상황 보고 문화행정 혁신 권고안 및 후속 조치 권고안 검토 권고안 심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선 권고(안)

구분	개최일	참석인원	주요 회의 내용
제17차	2018. 4. 13.	소위원장 등 14인	권고안 심의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안)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선 권고(안)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 토론회 진행 상황 보고
제18차	2018. 4. 20.	소위원장 등 15인	권고안 심의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선 권고(안)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선 권고(안)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4. 18.)
제19차	2018. 4. 27.	소위원장 등 17인	권고안 심의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선 권고(안)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행정 개선 권고(안)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선 권고(안)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권고(안)

다. 백서발간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명명백백한 기록, 사태에 대한 다각적 조망, 사태 관련 자료의 집대성, 위원회 출범 및 활동의 기록이라는 편집 원칙을 세우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백서 편집안을 구성하였다.

백서발간소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하고 소위에서 추천된 외부 인사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백서에 위원회의 기록 뿐 아니라 사태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종합적 시각을 두루 반영하도록 하였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다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외부 편집위원 또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각종 참고문헌 등 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하였다.

백서발간소위원회는 백서 발간을 위한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였으며 위원회 활동을 기록한 1권과, 외부 편집위원들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한 4권의 원고를 편집위원 및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진상조사소위원회 활동과 조사 결과를 기록한 2권과,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과 권고안을 기록

한 3권을 포함한 백서 전문에 대해 검토하였다. 백서발간소위원회 회의의 개최 일자별 주요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백서발간소위원회 주요 회의 내용

구분	개최일	참석인원	주요 회의 내용
제1차	2017. 7. 31.	소위원장 등 13인	소위원장(김미도) 선출
제2차	2017. 8. 16.	소위원장 등 11인	백서 발간 일정 및 자료 수집 방안 논의 백서 편집 방향 및 편집 위원 구성 방안 논의 세미나 개최 필요성 논의
제3차	2017. 9. 8.	소위원장 등 6인	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정립 - 구성: 민간위원 5인(김미도, 고영재, 이동연, 오동석, 장지연), 전문위원 7인(이양구, 김소연, 김영록, 박채은, 신용목, 이윤주, 조환준) - 역할: 편집 방향 설정, 목차 구성, 집필진 구성 및 원고 청탁, 원고 검토 및 검증, 제작 및 발행 관련 사안 등
제4차	2017. 9. 22.	소위원장 등 5인	백서 목차(안) 논의 편집 위원 구성(안) 논의
제5차	2017. 10. 20.	소위원장 등 8인	향후 편집위원회 운영 방안 및 일정 논의
제6차	2017. 11. 10.	소위원장 등 6인	외부 편집위원 위촉 - 노이정(연극평론가), 박현선(영화연구자), 심용환(역사학자), 오창은(국문학자), 이재승(법학자), 천정환(국문학자) 백서 목차 논의
제7차	2017. 12. 1.	소위원장 등 5인	내부 편집위원 위촉(김진수 전문위원) 자료 조사 등 백서 발간을 위한 사전 작업 방안 논의 백서발간을 위한 전체 위원 워크숍 개최 방안 논의
제8차	2017. 12. 15.	소위원장 등 6인	백서 발간을 위한 전체 위원 워크숍 개최 방안 논의
제9차	2018. 1. 3.	소위원장 등 6인	백서 발간을 위한 전체 위원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12. 21.) 편집위원 집필 작업 방안 논의
제10차	2018. 3. 5.	소위원장 등 6인	백서 발간 예산 논의 편집안 검토 및 집필 진행 절차 논의 단위별 절차 및 역할 분담 논의 - 백서TF: 소위별 보고서와 백서 결합, 일정, 예산 집행 등 논의 - 편집위원회: 기획, 집필, 작업 방향 점검, 세미나 개최 등 - 소위원회: 예산 집행 관련 의결, 백서 편집안 및 원고 채택, 각종 안건 전원위 상정

구분	개최일	참석인원	주요 회의 내용
			- 전원위원회: 백서 최종 구성 및 원고 채택, 주요안건 의결 백서 편집위원 추가 위촉(이진아 연극평론가) 백서 편집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백서TF가 신설된 점, 전문위원 대부분이 백서(종합보고서) 작업에 참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들은 내부 편집위원 지위를 두지 않기로 함
제11차 (서면)	2018. 4. 30.	-	백서 편집위원 추가 위촉 - 김소연 전문위원의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편집위원으로 위촉
제12차	2018. 6. 26.	소위원장 등	백서 원고 채택 백서 발간 일정 및 계획 논의 비실명화 등 정보 공개 수준 검토

4. 운영기구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회의, 소통기획단, 문체부 지원팀을 구성하였고, 간사·대변인을 위촉하였고, 전문위원을 채용하고 법무부에서 검사를 파견받았다.

운영회의, 소통기획단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간사와 대변인은 위원 중에 위촉하였다. 전문위원은 기획운영팀, 진상조사팀, 제도개선팀, 백서발간팀에서 각자의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문체부 지원팀은 문체부 공무원 4인으로 구성되었고, 법무부 파견검사는 법무부에서 파견된 검사 1인으로 구성되었다.

가. 운영회의

운영회의는 위원회의 운영 방안 및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장, 간사, 소통기획단장, 조사총괄팀장, 제도개선팀장, 기획운영팀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설립 초기였던 2017년 8월에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를 위한 ‘준비기획단’을 운영하였다. 이후 준비기획단의 역할이 일정 부분 달성되자 준비기획단을 해소하고, 위원회의 일상 업무 진행을 위한 회의체로 운영회의를 설치하였다.⁹⁰⁾

운영회의는 2017년 9월부터 필요할 때 개최하여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다가 2017년 11월부터 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였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및 예산 문제 등 핵심 사안을

90) 제6차 전원위원회 회의(2017. 9. 8.)에서 이상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회의는 ‘확대운영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준비기획단 회의, 운영회의, 확대운영회의의 운영 방식은 유사하였다. 주요 내용을 개최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운영회의 개최일 및 주요 회의 내용

구분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준비기획단 회의	2017. 8. 4.	위원회 운영 체계 관련 사항 논의 사무실 업무 현황 파악 사무실 배치도, 전문위원 채용, 예산안 등 논의	
	2017. 8. 11.	준비기획단 위원 확정 운영세칙 제정 방안과 일정 논의 문체부 지원팀 파견 일정 논의 민간 전문위원 채용 인원 및 일정 논의 홈페이지 제작 논의 전체 위원 워크샵 논의 사무실 구조 재배치 논의 외부기관, 문체부 및 문체부 산하 기관 업무 협조 논의 회의 및 회의록 관련 방침 논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관련 언론 브리핑 및 대응 논의 위원 자문료 지급 방안 결정	
	2017. 8. 16.	조사세칙(안) 제정 논의 업무 분장, 보고 라인, 지도감독 권한 등 논의	
	2017. 8. 22.	직제 및 업무 분장 논의 홈페이지 구성안 논의	
	2017. 8. 29.	준비기획단 회의 → 운영위원회로 전환 홈페이지 제보센터 개통(8. 31.) 논의	
	운영회의	2017. 11. 20.	직권조사 방법 및 구조도 작성 논의
		2017. 11. 27.	위원회 활동 일정 논의 위원회 대언론 전략 논의
		2017. 12. 4.	위원회 활동 일정 논의 백서발간소위원회 활동 논의
		2017. 12. 11.	위원회 활동 전략 논의
		2018. 1. 2.	위원회 연장 논의
2018. 1. 8.		블랙리스트 구조도 작성 논의 위원회 기간 연장에 따른 업무 분장 논의	
2018. 1. 15.		진상조사 관련 전략 및 향후 활동 제도개선 향후 활동 논의 백서 관련 예산 논의 간담회 추진 일정 검토 보도자료 내용 논의	

구분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2018. 1. 22.	제도개선 향후 활동 논의 백서 관련 예산 논의 보도자료 내용 논의
	2018. 1. 29.	보도자료 내용 논의 사건조사 진행 현황 검토 위원회 기록물 관리 방안 논의
	2018. 2. 5.	보도자료 내용 논의 백서 일정 논의
	2018. 2. 12.	위원회 후반기 과제 및 전략 논의
	2018. 2. 19.	진상조사소위원회 과제 실행 방안 및 처벌 기준 검토 조사결과 분석 및 대국민 보고대회 기획안 검토 제도개선 관련 권고안 논의 각종 권고안 확인 및 작성 주체 선정 논의 자문위원회 통합 운영 논의 예산 계획안 검토 보도자료 내용 검토
	2018. 2. 26.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안 실행 전략안(초안) 검토 보도자료 내용 검토
	2018. 3. 5.	위원회 종합권고안 작성 프로세스 검토 보도자료 내용 검토 국회 토론회 기획 검토
	2018. 3. 1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일정 논의 위원회 활동 연장 논의 보도자료 내용 검토 국회 토론회 기획 검토
	2018. 3. 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념 정의 논의 확대운영회의 안건 검토
	2018. 3. 2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념 정의 논의 위원회 4월 이후 활동 구조 및 백서 발간 관련 논의 백서 편집위원회 외부 편집위원 자료 열람 방안
	2018. 4. 2.	위원회 4월 이후 활동 구조 논의
	2018. 4. 9.	위원회 5~6월 활동 구조 및 업무 분장 논의 대국민 보고대회 일정 및 준비 내용 논의 언론브리핑 및 보도자료 내용 논의
	2018. 4. 16.	대국민 보고대회 준비 내용 논의 국회토론회 준비 내용 논의
	2018. 4. 23.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미상정 사건 처리 방향 논의 업무 인수인계 방안 논의 대국민 보고대회 준비 내용 논의

구분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2018. 5. 15.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미상정 사건 처리 방향 논의 업무 인수인계 현황 및 처리 방안 논의 책임규명 권고안 준비 내용 논의 백서 준비 내용 논의
	2018. 5. 28.	업무 인수인계 현황 및 처리 방안 논의 책임규명 권고안 준비 내용 논의 백서 준비 내용 논의 후속 조치 관련 사항 논의
	2018. 6. 5.	책임규명 권고안 작성 내용 논의 -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 대상자의 범위 책임규명 권고안 총론 작업 논의 기관에 대한 권고 관련 논의
확대운영회의	2017. 11. 22.	산하기관 자료 협조 현황 논의 위원회 연장 및 예산 논의 해외 문체부 직원 협조 요청 논의
	2017. 12. 28.	위원회 연장 및 예산 문제 논의
	2018. 4. 19.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권고(안) 논의

나. 간사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위원을 두었다.⁹¹⁾ 2017년 7월 31일 개최된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중에서는 송경동 위원이, 당연직 위원 중에서는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갑수 위원이 간사로 위촉되었다. 송경동 위원은 2017년 7월 3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간사로 활동하였고, 이후 건강상의 사유로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원재 위원이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간사로 활동하였다.⁹²⁾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갑수 위원은 2017년 9월 3일까지 간사로 활동하였고, 그 이후에는 김영산 위원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2017년 9월 4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간사로 활동하였다.

간사는 위원회 설립 초기 준비기획단 회의, 그 이후의 운영회의를 주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원회 주최로 개최하는 워크숍, 토론회 등에서 발제자 혹은 토론자로

9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구성)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위원장이 추천한 제2항제1호 위원으로 한다.

92) 2018. 4. 30. 개최된 제3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원재 위원이 간사로 위촉되었다.

참여하였다.

다. 대변인 및 소통기획단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언론 취재 지원 및 국회 소통 지원, 홍보 상황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대변인을 두었다.⁹³⁾ 2017년 8월 11일 개최된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의 대변인을 위촉할 것과 소통기획단을 신설할 것을 의결하였다. 소통기획단장에 고영재 위원이, 대변인에 이원재 위원이 위촉되었다.

소통기획단은 처음에는 ‘홈페이지SNS콘텐츠기획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7년 8월 9일 회의에서 ‘소통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소통기획단은 위원회 설립 초기였던 2017년 8월에는 위원회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다. 8월 7일 소통기획단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후 매 회의에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기획 방안 및 내용, 운영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8월 31일 위원회의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되었다.

2017년 9월에는 소통 행사 개최를 위한 논의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9월 18일 소통 행사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이 개최되었다.

소통 행사가 개최된 이후인 2017년 10월에는 소통기획단 활동의 중간 점검을 하며, 소통기획단의 기본적인 역할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고, 따라서 이후 소통기획단 및 대변인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관련 업무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회의에서 해당 업무를 논의하여 진행하였다.

소통기획단 주요 회의 내용

구분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소통기획단 회의	2017. 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개발 방향 논의 - 위원회 독립 홈페이지 구축 필요: 문체부 내부 서버 연동 대신 독자 페이지 구축 배너 링크 - 홈페이지 컨셉 : 위원회 활동 홍보보다는 피해 사례 수집 및 접수 사례 DB화를 목표로 함 - 디자인보다는 필요 기능을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9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대의 소통) ① 위원회 활동에 대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언론취재 지원 및 국회 소통 지원, 홍보 상황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대변인을 둔다. ② 위원회 활동 전반에 관한 언론 브리핑은 대변인이 담당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언론 취재 등에 응할 수 있다.

구분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2017. 8. 9.	홈페이지 개발 내용 논의 -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전담자 필요성 논의 - 위원회 활동 종료 후, 홈페이지 운영 관리 계획 필요 소통기획단 신설 - 기존의 '홈페이지SNS콘텐츠기획단'을 위원회와 시민 간 소통 관련 기획 및 실무를 총괄하는 '소통기획단'으로 개편
	2017. 8. 16.	홈페이지 개발 내용 논의 - 문체부 내부 서버가 아닌 독립 서버 및 사이트 구축 - 제보센터로서의 메인 기능 중심으로 개발 - 위원회 활동 종료일까지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 위원회 활동 대외 소통 창구로서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필요 - 홈페이지 내 제보센터 구성: 조사신청서 접수, 제보 접수 등
	2017. 8. 23.	홈페이지 명칭 논의 - 홈페이지 명칭 www.blacklist-free.kr, 페이스북 페이지 명칭 @blacklistfree2017을 사용하기로 결정 - 온라인 제보 및 조사 신청을 받기 위한 메뉴 명칭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제보센터'로 결정 홈페이지 개발 내용 및 일정 논의 - 제보센터 1차 오픈: 8. 31. -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8. 31. - 본 홈페이지 오픈: 9. 20. 모든 메뉴 디자인 및 기능 완료
	2017. 8. 3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2017. 9. 7.	대국민 소통 행사 진행 방안 논의 -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 담당자 필요성 논의
	2017. 9. 14.	대국민 소통 행사 기획 논의 기자회견, 현장 조사 신청, 위원회 활동 보고, 이야기 마당 등
	2017. 10. 24.	소통기획단 활동 중간 점검 - 홈페이지, SNS, 로고 등 실무적이고 기본적인 역할 마무리 단계 - 정규 홈페이지 오픈, 정책 제안 및 자료실 기능 등 추가 - 홈페이지 제보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 안정화 - 대국민 소통 행사 이후 각 소위별로 문화예술계와의 협업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소통 활동 전개 향후 활동 방향 - 대국민 소통 활동의 필요성 및 소통 전략 논의 단위 필요 - 소통기획단 및 대변인 등 현재 조직 체계상의 역할 재정립 - 언론브리핑 정례화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 활동 - 정례 언론 브리핑 형식 및 역할 논의
소통행사 개최	2017. 9. 18.	대국민 소통 행사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 - 현장 조사신청, 여는 마당, 이야기 마당

라. 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용은 위원회가 설립되고 2주가 지난 후부터 이루어졌다. 2017년 8월 14일 전문위원 9인이 채용된 것을 시작으로, 8월 25일 전문위원 7인이, 11월 20일 전문위원 9인이 채용되었다. 2018년 1월 전문위원 2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2018년 2월 12일 전문위원 2인이 추가로 채용되었다. 전문위원은 기획운영팀, 진상조사팀, 제도개선팀, 백서발간팀에서 각각의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운영팀

기획운영팀은 기획운영팀장 1인, 팀원 4인 등 총 5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기획 및 총괄, 언론 대응, 대외, 법무,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 및 행정 등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고, 소통기획단, 운영회의, 전원위원회의 회의를 운영하였다. 위원회 활동 초기에는 조사신청사건 접수 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였고, 위원회 활동 종료 시기에는 위원회 후속 이행 점검 및 위원회 마무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언론 대응 업무에는 보도자료 작성, 기자회견 개최 총괄, 언론 보도 상황 분석 등의 업무가 해당하였다. 대외 업무는 위원회 관련 국회 활동 대응 방안 모색 및 실행, 위원회 활동 관련 법률안 검토, 국회토론회 개최 등의 업무가 해당하였다.

법무 업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재판 검토 및 대응, 위원회 활동 및 진상조사 관련 법률 자문 등의 업무가 해당하였다. 기록 관리 업무에는 위원회가 생산 및 수집한 기록물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가 해당하였다.

2) 진상조사팀

진상조사팀은 조사총괄팀장 1인, 조사팀장 및 조사팀원 16인 등 총 17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진상조사팀은 사건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조사1팀부터 조사4팀까지 총 4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진상조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고,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담은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진상조사팀은 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세칙 제정 및 수정, 조사 계획 수립 등 진상조사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였고, 또한 각 사건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였으며,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방안 및 내용을 논의하였다.

3) 제도개선팀

제도개선팀은 전문위원 3인으로 구성되었다. 제도개선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제도적 원인 및 구조를 분석하였고, 현장 문화예술계 및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 관련 주요 지원 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였다.

4) 백서발간팀

백서발간팀은 전문위원 1인으로 구성되었다. 백서 편집위원회가 구성된 후, 내부 위원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외부 편집위원과 접촉하며 원고의 청탁, 계약, 수합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백서발간 소위원장과 각 팀장을 맡고 있는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백서TF에서 실무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백서 발간을 위한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였다. 위원회 초기에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복기하고 해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후기에는 백서 4권의 원고를 검토하면서 편집위원회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백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고, 향후 백서 배포처를 목록화하였다.

마. 문화체육관광부 지원팀

문체부 지원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공무원 4인으로 구성되었다. 2017년 8월 3일 문체부 사무관 1인과 주무관 1인이 지원팀으로 발령받은 것을 시작으로, 8월 7일 사무관 1인이 추가로 발령받았고, 8월 16일 서기관 1인이 발령받아 지원팀장을 맡아 지원팀을 구성했다.⁹⁴⁾

바. 법무부 파견 검사

법무부 파견 검사는 위원회 활동 및 진상조사 업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9월 22일에 파견되어 2018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였다.

94) 이후 몇 차례 인사 이동 등 변동이 있었고, 그 내역은 본권 158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 위원회 주요 활동

위원회의 활동은 크게 진상 조사, 제도 개선, 백서 발간, 대외 소통 사업, 기타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진상조사 주요 활동

가. 조사 신청

2017년 8월 18일 위원회는 원활한 진상조사를 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 세칙」(이하 조사 세칙)을 제정하였다. 조사 세칙은 조사 신청 방법, 사건의 조사, 사건 기록의 관리, 조사의 종결, 이의 신청 등의 내용과 각 서식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신청은 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 외 우편 또는 전자우편, 홈페이지 제보센터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 신청 접수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11월 30일에 완료되었는데, 총 120건이 접수되었다. 신청은 홈페이지 제보센터(68건, 56.6%), 현장(30건, 25%), 전자우편(21건, 17.5%), 우편(1건, 0.8%)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중 홈페이지 제보센터를 통해 가장 많은 조사 신청이 접수되었다.

신청 사건 120건 중에서 4건은 각하되었고, 5건은 취하되었다. 그리고 신청 사건 중 1건이 2건으로 분할되어, 신청 사건은 총 112건이 되었다.⁹⁵⁾ 112건은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심의와 전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조사 개시 결정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조사해야 할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발굴하여,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심의와 전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총 33건의 직권조사 사건이 결정되었다.

위원회는 신청사건 112건과 직권사건 33건을 합한 총 145건의 사건을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공연예술, 문학, 시각예술, 영화, 전통예술, 출판, 기타(기타 문화산업, 예외, 특별 포함)가 그것이다. 분류 결과, 공연예술 분야가 44건(30%), 문학 분야가 18건(12.4%), 시각예술 분야가 9건(6.2%), 영화 분야가 23건(15.8%), 전통예술 분야가 4건(2.7%), 출판 분야가 7건(4.8%), 기타 분야가 40건(27.5%)이었다. 그리고 사건

95) 각하 사건은 공연 분야 2건, 기타 분야 2건으로 총 4건이었다. 취하 사건은 문학 분야 1건, 영화 분야 1건, 기타 분야 3건으로 총 5건이었다. 사건 분할은 문학 분야 1건이었다.

분야와 조사 신청 접수 순서를 반영하여 사건 번호를 부여하였다.⁹⁶⁾

신청사건 및 직권사건의 유형별 사건 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유형별 사건 수

구분	공연	문학	시각	영화	전통	출판	기타	합계
신청사건	36	15	7	18	4	4	28	112
직권사건	8	3	2	5	-	3	12	33
총계	44	18	9	23	4	7	40	145

나. 조사 방법 및 절차

위원회의 진상 조사 단계는 크게 준비, 조사, 보고 단계로 나뉘었다. 각 단계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준비 단계

사건은 유형별로 분류되어 조사 1~4팀에 배분되었다. 각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먼저 사건 조사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에 따라 조사 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 개시’ 의견으로,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각하’ 의견으로 신청서

9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11조(사건번호) 사건번호는 연도 다음에 사건유형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이되, 접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2017문000)

1. 공연예술 (연극, 무용, 마임, 뮤지컬 등) : 공
2. 문학 : 문
3. 시각예술 (미술, 만화, 사진 등) : 시
4. 영화 : 영
5. 전통예술 : 전
6. 출판 : 출
7. 기타 문화산업 : 산
8. 1~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예
9.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구별할 수 없거나 특별한 경우 : 특
10.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직권으로 결정한 사건 : 위 유형에 따라 직시, 직문, 직특 등
11.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의 진상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직권사건의 경우에는 직권 조사의 필요성 및 향후 조사 계획을 담은 사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검토 의견을 작성하기 위한 사전조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조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신청서 검토보고서, 사전조사 보고서 등은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심의 후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조사 개시, 각하, 직권조사 결정 등으로 의결되었다.

전원위원회 의결 이후에는, 의결 내용에 따라 조사 개시 결정통지서, 각하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였다. 결정통지서에는 통지 내용 및 결정 이유, 이의 신청 안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2) 조사 단계

조사 개시 의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건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진행하였다. 주요 자료 수집 대상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기획 및 실행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그리고 문체부의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었다.⁹⁷⁾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조사는 주로 면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위원회 내 조사실에서 진행하거나 전문위원이 신청인 및 참고인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조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진술 조사는 신청인 및 참고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진술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녹음하지 않고 진술 조사를 진행하였다.

3) 보고 단계

진상조사결과보고서에는 조사 취지, 조사 개시의 근거와 목적, 자료 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조사 결과 결론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진상조사결과보고서는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97) 자료 수집 대상 기관 중, 문체부의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은 국립국악원, 국립극단,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현대미술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외한국문화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문화홍보원 등이다.

채택으로 의결되었다.

전원위원회 의결 이후에는 의결 내용에 따라 조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진상조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신청인에게 송부하였다. 조사결과통지서에는 통지 내용 및 결정 이유, 이의신청 안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였다.

다. 조사 결과

위원회가 신청 사건 112건과 직권 사건 33건을 합한 총 145건을 조사한 결과,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완료한 사건이 139건, 조사 개시 이후 신청인이 취하 의사를 밝혀 조사 종결한 사건이 4건, 조사 개시 이후 조사의 한계로 인해 조사 종결한 사건이 2건이다.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완료한 사건 139건은 사건 내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 병합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총 115건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다. 115건 중 85건은 신청 사건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이고, 30건은 직권 사건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이다. 진상조사결과보고서 115건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목록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1	2017공1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극단 진일보’ 선정 배제 사건
2	2017공3	‘전국연극제’의 ‘대한민국연극제’로의 변경과 관련한 ‘서울연극제’ 위상 약화 의혹 사건
3	2017공4	‘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정기 대관 공모’ ‘극단 놀땅’ 선정 배제 사건
4	2017공5	제25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 개입 사건
5	2017공6	극단 하땅세(윤시중) 배제 사건
6	2017공7	2016 공연예술비평 활성화 지원 사업 ‘공연과이론을위한연구모임’ 선정 배제 사건
7	2017공8	2015~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등 ‘극단 허리’ 선정 배제 사건
8	2017공9	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사건
9	2017공1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5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극단 수수파보리’ 선정 배제 사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10	2017공12	극단 마실(손혜정) 배제 사건
11	2017공13	국립현대무용단 부당개입 사건
12	2017공14	2016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및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 개편 과정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 사건
13	2017공15	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공모사업 등 '극단 드림플레이 선정배제 사건
14	2017공16	예술전용공간 임차지원사업 폐지로 인한 퇴거 등 사건
15	2017공17	(사) 충북민예총 배제 사건
16	2017공18	2015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공모 사업 등 '서울연극협회' 선정 배제 사건
17	2017공19	2015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부당 탈락 사건
18	2017공20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 공모 사업 등 '극단 완자무늬' 선정 배제 사건
19	2017공21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 공모 사업 등 '극단두비춤' 선정 배제 사건
20	2017공22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선정 배제 사건
21	2017공23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사업 등 '극단 백수광부' 선정 배제 사건
22	2017공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공연예술(연극) 창작산실 대본공모지원' 사업 등 '극단 미인' 선정 배제 사건
23	2017공25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15 찾아가는 연극' 검열 배제 사건
24	2017공26	'수요자 맞춤형 교육 사업' 심사위원 명단 제출 거부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고사직 강요 사건
25	2017공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극단 연우무대' 선정 배제 사건
26	2017공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선정 배제 사건
27	2017공3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팝업씨어터 공연 방해 및 검열 의혹 사건
28	2017공34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의혹 사건
29	2017공35 (공36 병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등 '서울변방연극제(임인자)' 선정 배제 사건
30	2017공3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서울변방연극제' 검열 의혹 사건
31	2017공38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사건
32	2017문1	한국문학번역원 이시영 등 지원 배제 사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33	2017문3	김성규 등에 대한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 배제 사건
34	2017문7	공지희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 배제 사건
35	2017문8	윤혜숙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사건
36	2017문11	김형중 예술위 심의위원 풀 부당 배제 사건
37	2017문12	인디고서원의 한국국학진흥원 용역 사업 배제 의혹 사건
38	2017문1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예술인파견사업 등 이창숙 배제 사건
39	2017문16	2014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사건
40	2017시1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41	2017시2	2015 작가미술장터개설지원사업 무미아트(민병동) 선정 배제 사건
42	2017시3	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 전' 검열 사건
43	2017시4	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아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
44	2017시5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45	2017시6	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형 의혹 사건
46	2017시7	'(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
47	2017영1 (영11, 영19 병합)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
48	2017영3	맹수진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사전제작지원 심사위원 배제 등 사건
49	2017영4	2009-2010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디어액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
50	2017영7 (영12 병합)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제도를 통한 문제영화 상영 방해 사건
51	2017영9	유인택의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지원 배제 사건
52	2017영10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 사건
53	2017영13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사건
54	2017영14	'㈜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55	2017영16	영화사 '청어람'의 블랙리스트 관리 및 외압 등 사건
56	2017영18	2010~2011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 사업 지원 축소 의혹 사건
57	2017예1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58	2017전1	2015~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등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선정 배제 사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59	2017전2	국립국악원 '소월산천' 공연 취소 사건
60	2017전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국제예술교류지원 1차' 등 '화성 열린문화터' 선정 배제 의혹 사건
61	2017전4	'(사)한국전통문화예술원(고정균 이사장)' 선정 배제 사건
62	2017출1	창비 등 '세종도서' 부당 배제 사건
63	2017출2	시인 이상국 블랙리스트 등재 및 인문독서아카데미 강연, 세종도서 등 배제 의혹 사건
64	2017출3	시인 손세실리아에 대한 세종도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의혹 사건
65	2017출4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관사업 이관 과정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66	2017특2	윤한슬 연출가 관련 전면 배제 사건
67	2017특4	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68	2017특5	극작가 고연옥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69	2017특8	시인 정세훈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70	2017특9	작가 유영소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71	2017특10	소설가 김성군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등 인권침해 의혹의 건
72	2017특13	미술인 양희성의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73	2017특14	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74	2017특15	배우 유정숙(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75	2017특16	대전문화관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76	2017특18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77	2017특19	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 강태재에 대한 사찰 및 탄압 사건
78	2017특20	문화재위원 임명자 김규호의 임명 취소 사건
79	2017특21	작가 김중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80	2017특22	임정희 및 문화연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81	2017특24	한국예술종합학교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82	2017특25 (문15 병합)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
83	2017특26	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
84	2017특27	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85	2017특28	(재)국악방송 사장 선임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86	2017직공1 (공2 병합)	2015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
87	2017직공2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심사번복 요구 및 공연포기 강요사건
88	2017직공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89	2017직공4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90	2017직공5	(재)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91	2017직공6	국립중앙극장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92	2017직공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93	2017직문1 (문4, 문5, 문6, 문8, 문9, 문10 병합)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
94	2017직문2 (문13 병합)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
95	2017직문3	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96	2017직시1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97	2017직영1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98	2017직영3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99	2017직영4 (영2 병합)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문제영화 검열·배제 사건
100	2017직출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101	2017직출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배제 사건
102	2017직출3	한국출판문화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03	2017직특1 (영6, 영8 병합)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104	2017직특2 (직영2 병합)	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사건
105	2017직특3 (특3, 특6, 특11 병합)	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 사건
106	2017직특4	박근혜 정권의 좌파문화예술계 배제 문화융성 정책 입안 및 실행 방안에 관한 직권조사
107	2017직특5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 등의 구성 및 운영 사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108	2017직특6 (특29, 특30, 공33 병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09	2017직특7 (공29, 공30 병합)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110	2018직공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11	2018직산2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농단 의혹 사건
112	2018직시1	국립현대미술관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113	2018직영1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14	2018직특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국가정보원의 관여 내용
115	2018직특2	최철 등의 인사 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2. 제도개선 주요 활동

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은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토론회 개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워크숍 개최, 컨퍼런스 개최, 연구 용역 실행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위원회 설립 초기였던 2017년 9월 총 4회에 걸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2017년 9월~11일에 문화재정, 문학, 연극, 영화, 시각예술, 출판, 무용 및 전통, 문화산업을 분야별 총 8차에 걸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였다. 2018년 1월에는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4월 18일에는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간담회는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블랙리스트 방지 법제 연구, 문화행정혁신TF 전문가 간담회, 현안 분석 전문가 간담회, 제도 개선 의제별 핵심 내용 도출 및 쟁점 토론 전문가 간담회, 기관 간담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나갔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전략 워크숍을 총 5차례

에 걸쳐 개최하였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를 2018년 1월 17일~18일 이틀에 걸쳐 개최하였다. 또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여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활동 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제도 개선 주요 활동 내용

구분	일자	주요 활동 내용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2017. 9. 11.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 9. 12.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9. 14.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7. 9. 26.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 한국콘텐츠진흥원
토론회	2017. 9. 19.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 제1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정을 위하여
	2017. 9. 21.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 제2차 문학 분야
	2017. 9. 25.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 제3차 연극 분야
	2017. 9. 29.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 제4차 영화 분야
	2017. 10. 13.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 제5차 시각예술
	2017. 10. 20.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 제6차 출판 분야 - 제7차 무용 및 전통
	2017. 11. 14.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 제8차 문화산업 분야
	2018. 1. 31.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
	2018. 4. 18.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 토론회 - 토론1: 블랙리스트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 행정 혁신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 - 토론2: 블랙리스트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구분	일자	주요 활동 내용
전문가 간담회	2017. 9. 16.	제1차 블랙리스트 방지 법제 연구 사전 회의
	2017. 10. 30.	제2차 블랙리스트 방지 법제 연구 사전 회의
	2017. 10. 26.	문화행정혁신TF 제1차 전문가 간담회
	2017. 11. 3.	문화행정혁신TF 제2차 전문가 간담회
	2017. 11. 10.	문화행정혁신TF 제3차 전문가간담회
	2017. 11. 22.	문화행정혁신TF 제4차 전문가간담회
	2017. 12. 7.	문화행정혁신TF 제5차 전문가간담회
	2017. 11. 16. 2017. 11. 21.	현안분석 전문가 간담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11. 27.	현안분석 전문가 간담회 : 출판, 영화
	2017. 12. 11.	현안분석 전문가 간담회 : 문화산업
	2017. 12. 12.	현안분석 전문가 간담회 : 영화
	2018. 2. 6.	제도개선 의제별 핵심 내용 도출 및 쟁점 토론 전문가 간담회 - 주제: 지원체계 전반
	2018. 2. 7.	제도개선 의제별 핵심 내용 도출 및 쟁점 토론 전문가 간담회 - 주제: 표현의 자유 법제도 개선 방안
	2018. 2. 8.	제도개선 의제별 핵심 내용 도출 및 쟁점 토론 전문가 간담회 - 주제: 주요 지원기관 개선안(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2. 9.	제도개선 의제별 핵심 내용 도출 및 쟁점 토론 전문가 간담회 - 주제: 주요 지원기관 개선안(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2. 13.	제도개선 의제별 핵심 내용 도출 및 쟁점 토론 전문가 간담회 - 주제: 문체부 조직 개편안
	2018. 3. 6.	영화진흥위원회 기관 간담회
	2018. 3. 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관 간담회
	2018. 3. 15.	영화 분야 현장 간담회
	2018. 3. 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현장 간담회
워크숍	2017. 11. 3.	제도개선소위원회 전략 워크숍 -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준거점들
	2017. 11. 14.	제도개선소위원회 전략 워크숍 - 과제별 개선안 검토 1
	2017. 11. 28.	제도개선소위원회 전략 워크숍 - 과제별 개선안 검토 2
	2017. 12. 5.	제도개선소위원회 전략 워크숍 - 과제별 개선안 검토 3

구분	일자	주요 활동 내용
	2017. 12. 15.	제도개선소위원회 전략 워크숍 - 평가와 환류 워크숍
컨퍼런스	2018. 1. 17~18.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컨퍼런스 - 1. 17.(수): 문화행정 혁신 방안, 법제도 개선 방안 발표 - 1. 18.(목): 문화예술계 주요 지원기관 제도개선 방안 발표
연구용역	2018. 1. 22.	제도개선안 연구 용역 - 블랙리스트 방지 주요 기관 제도 개선 연구, 블랙리스트 방지 법제 연구

3. 백서발간 주요 활동

위원회의 백서 발간을 위한 활동은 크게 백서 편집위원회 운영, 전체 위원 워크숍 개최, 백서TF 운영으로 나뉜다.

백서 편집위원회 회의는 2017년 9월~2018년 6월에 총 7회 개최되었다. 백서 편집위원회는 초기에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체적인 파악을 위해 관련 책과 논문 등을 읽고 토론하였다. 다양한 장르별, 기관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또한 백서 편집안과 목차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백서 발간을 위한 전체 위원 워크숍은 2017년 12월 21일에 개최되었다. 워크숍에는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외부 편집위원 28명이 참여하였고, 백서 편집안 및 발간 일정, 백서발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전자책 발간 및 자료 아카이빙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백서TF 회의는 2018년 3월~6월에 총 3회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백서 구성 및 목차, 백서 편집안, 백서 배포처, 온라인 아카이빙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서 작성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 구입 활동이 있었다.

이상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백서발간 관련 주요 활동 내용

구분	일자	업무 내용
백서편집위원회를 개최	2017. 9. 8.	세미나 개최 - 예술 검열의 계보학(이동연 민간위원) - 타위원회 발간 보고서 목차 분석(이양구 전문위원) - 백서 편집안(김미도 소위원장)

구분	일자	업무 내용
	2017. 9. 22.	세미나 개최 - 자본의 흐름을 통해 보는 블랙리스트 실행 체계(장지연 민간위원) - 위원회 입수 자료를 통해 보는 블랙리스트 실행 흐름과 쟁점(이양구 전문위원) - 백서 편집안(김미도 소위원장)
	2017. 10. 20.	세미나 개최 - 백서 편집안(김미도 소위원장) - 리스트의 역사(이재승 편집위원)
	2017. 11. 10.	세미나 개최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관련성(김미도 소위원장) 백서 편집안 및 목차 구성 논의
	2017. 11. 24.	세미나 개최 - 2009년 한예종 표적 감사와 블랙리스트(심광현 한예종 영상원 교수) 블랙리스트 정책과 블랙리스트 범죄(이재승 편집위원)
	2018. 3. 8.	백서 편집안 및 발간 일정 논의
	2018. 5. 25.	백서 편집안 및 백서 표준 서식 검토 외부 집필위원 원고 검토 및 회람
백서 발간을 위한 전체 위원 워크숍	2017. 12. 21.	백서 편집안 및 발간 일정 논의 백서 발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전자책 발간 및 자료 아카이빙 방안 논의 발제: 백서 발간의 의미와 위상(이동연 위원)
백서TF	2018. 3. 8.	백서TF 구성 및 역할 논의 - 구성: 백서발간 소위원장, 기획운영팀장, 조사총괄팀장, 제도개선팀장, 기록관리 담당 전문위원, 백서 담당 전문위원 - 역할: 백서 발간 일정 및 인력 구조 논의, 예산 관련 논의, 백서 관련 실무 지원 백서 목차 검토 및 예산안 논의 백서 편집안 논의
	2018. 5. 18.	백서 편집안 논의 백서 원고 검토 심의 절차 논의 백서 자료집 구성 방안 논의 백서 배포처 논의
	2018. 5. 28.	백서 발간 일정 논의 백서 편집안 논의 백서 배포(안) 논의 온라인 아카이빙(안) 논의
자료구입	-	원고 집필 및 위원회 조사 등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 구입

4. 대외소통 주요 활동

위원회의 대외 소통 사업은 크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대국민 행사 개최, 정책 토론회 참여,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로 나눌 수 있다.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는 2017년 8월 31일에 개설되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2017년 8월 1달 동안 소통기획단 회의에서 홈페이지 개설 방안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였다.

소통 행사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은 2017년 9월 18일에 개최되었다. 행사는 크게 현장 조사 신청, 여는 마당, 이야기 마당의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현장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제보와 사건 조사 신청을 접수받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를 소개하였고, 위원회 1차 조사 경과 및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야기 마당 ‘블랙리스트를 말하다’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자유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7년 9월 27일에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 정책 토론회는 위원회 이원재 대변인이 좌장을 맡았고, 김준현 진상조사소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⁹⁸⁾

2018년 4월 26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위원회에서 송경동 위원과 오동석 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의 현재와 후속 대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⁹⁹⁾

98)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좌장: 이원재(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대변인)

발제: ①국가범죄로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위험성(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②블랙리스트 관련 여당과 국회의 역할(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황 보고: 이우성(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토론: ①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과제(김준현, 변호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위원)

②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블랙리스트 사태(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③예술의 공공성과 민주주의(김재엽, 연출가, 검열백서위원회 사무국장)

사회: 김석현(오영훈 의원실 비서관)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제5정책조정위원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오영훈, 김병욱, 노용래, 박경미, 손혜원, 설훈, 안민석, 전재수, 조승래 의원실)

9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좌장: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기자회견은 총 4회 개최되었다. 2017년 10월 30일에는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지원 배제 사건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을, 12월 20일에는 위원회 조사 신청 마감 결과· 조사 현황·위원회 향후 계획을, 2018년 4월 10일에는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2015년~2016년에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행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건의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들을 발표하였다. 2018년 5월 8일에는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를 종합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보도자료는 총 9회 배포되었다. 2017년 8월 30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업무 본격 개시 사실을, 2018년 1월 11일에는 청와대의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인사조치 요구 사건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을, 2018년 1월 15일에는 위원회가 주최하는 제도개선 컨퍼런스를, 2018년 1월 18일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 단체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사건의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을, 2018년 2월 1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만화와 공연 등에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사건의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을, 2018년 2월 6일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다큐영화 등에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사건의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을, 2018년 4월 12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 토론회 개최 계획을 2018년 4월 13일에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시국 선언 참여 문화예술인에게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사건의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을, 2018년 6월 28일에는 위원회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의 주요 내용을 다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상의 대외 소통 사업의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 발제: ①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의 현재와 후속 대책(송경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간사, 시인)
 ②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허주희(변호사), 노순택(다큐멘터리 사진 작가),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영열(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공동주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유성엽 위원장, 김한정, 노웅래, 박경미, 오영훈, 장정숙, 조승래)
- 주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후원: 고발뉴스(실시간 중계)

대외 소통 사업 주요 활동 내용

구분	일자	주요 활동 내용
홈페이지 개설	2017. 8. 3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소통 행사	2017. 9. 18.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 - 현장조사신청: 제보 및 조사신청 접수 - 여는 마당: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소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1차 경과 보고 - 이야기마당: 블랙리스트를 말하다
정책 토론회	2017. 9. 27.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2018. 4. 2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발제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의 현재와 후속 대책 - 발제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기자회견	2017. 10. 30.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관련 입수 자료 분석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지원 배제 사건
	2017. 12. 20.	조사신청 마감 결과 및 조사 현황 블랙리스트 문건 종합 및 분석 주요 기관 사건 보고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제도개선 활동 보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향후 계획 발표
	2018. 4. 10.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종합판' - 2015~2016 양국 최대 규모 문화예술행사에서 '2년에 걸쳐' 블랙리스트 실행 - 청와대-국정원-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예술경영지원센터-프랑스한국대사관, 국가기관 동원 - 9,473명 시국 선언 명단 '실제 블랙리스트'로 확인, 60페이지 분량 실제 문건 공개 - 'K-CON 2016 프랑스' 최순실 예산, 청와대 지시로 3일 만에 부실 심사로 집행
2018. 5. 8.	-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 진상조사위 활동 경과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종합 - 분야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 책임규명 권고 - 제도개선 및 후속 조치 권고	
보도자료	2017. 8. 3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업무 본격 개시 - 직권조사 실시 및 온라인 제보센터 열어

구분	일자	주요 활동 내용
	2018. 1. 11.	靑, BIFF 이용관 인사 조치 요구, 부산시 전방위 접촉·압박 -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서 시장 독대해 협조 요구 - 서병수 부산시장, <다이빙벨> 상영 중단 관련 BH 등 사전논의 5건 확인
	2018. 1. 15.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컨퍼런스 - 1.17~18.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1강의실
	2018. 1. 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블랙리스트 적용 - 최소 24명, 5개 단체 배제
	2018. 2. 1.	한국콘텐츠진흥원,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최초 확인' -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심사위원 대거 배제 - 연재만화 심사서 세월호 관련 만화에 최저점, 결국 탈락시켜 - 대중음악 공연, 해외음악페스티벌 지원 등에 심사위원 부당 선정
	2018. 2. 6.	독립다큐영화, 영진위 지원사업 배제 27건 추가 확인 - 한진중공업·밀양·용산·강정·세월호 등 배제 키워드 작동 - 국정원 및 문체부의 문제영화 검증 및 배제 지시 등 지속적 개입 - 2014~2016 독립영화제작지원,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에서 배제
	2018. 4. 1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 토론회 개최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 행정혁신 및 지원 체계 개선방안·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
	2018. 4. 13.	박근혜 정부, 세월호 연대한 문화예술인에 '집요하고 끈질긴 탄압' - 진상조사위, 세월호 시국 선언 참여 문화예술인 1302명 중 116명 실제 배제 대상 - 박근혜 정부 청와대, "세월호 지지=반정부 투쟁" 프레임 씌워 지속적 탄압 - "세월호 연상된다"며 팝업씨어터 '이 아이' 조직적 공연 방해
	2018. 6. 28.	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 - 총 130명, 수사의뢰 26명 및 징계 104명 권고

5. 기타 사업

위원회는 활동 방안 및 향후 계획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총 3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 워크숍은 2017년 8월, 두 번째 워크숍은 2017년 10월, 세 번째 워크숍은 2017년 12월에 개최하여 각 시기의 주요 업무 및 쟁점 사항을 의제로 논의하였다. 위원회가 개최한 워크숍의 주요 활동 내용을 각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

시기	주요 활동 내용
2017. 8. 25~26.	워크숍 프로그램 - 진상조사소위원회·제도개선소위원회·백서발간소위원회 활동 계획 논의 - 소통기획단 활동 계획 논의 참석 인원: 민간위원 17인, 전문위원 12인, 문체부 5인
2017. 10. 17.	워크숍 프로그램 - 진상조사소위원회 및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 경과 공유 - 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 운영 개선 방안 논의 참석 인원: 민간위원 5인, 전문위원 14인
2017. 12. 26~27.	워크숍 프로그램 - 위원회 활동 전략 및 타임 테이블(안) 토의(발제: 송경동 위원)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발제: 김영록 전문위원) -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 및 제도개선(안) 개괄 토의(발제: 김소연 전문위원) 참석 인원: 민간위원 및 전문위원 30인

6. 성과와 한계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피해자 및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의견 수렴,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내용들의 사회적 공유 및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활동기간 대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계가 분명했다.

가. 성과

1)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피해자 관점·기록자 관점 중심의 활동

위원회 설치 경과 및 목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자체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폭로하고 저항해온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제안과 활동에 의해 구성되었다. 활동 방향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의 관점,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협치를 통한 운영 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반영되었다. 위원회는 피해자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 규명에 접근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2)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조사 신청을 받았고, 필요한 경우 직권 조사를 개시하였다.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지, 이의 신청 처리 등에 있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 걸쳐 총 145개(신청사건 112개, 직권사건 33개)의 사건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밝혀냈으며, 많은 개별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가 조사한 사건 중에는 위원회 이전에는 노출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많은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3)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파악, 분석 그리고 의미화

블랙리스트 사태는 법원,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졌다. 하지만 위원회 이전에 블랙리스트 사태는 개별 사건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구조, 흐름, 책임 등이 통합적·체계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 위원회는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의 실제, 구조, 경과, 유형, 방법 등을 밝혀내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요 문건과 구조 파악, 시국 선언 명단 등 블랙리스트 DB의 실제 확보 및 전체 규모 파악, 블랙리스트 사태의 구조와 유형 분석 등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을 파악·분석하고 의미화하는 성과를 낳았다.

4)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와 문화 행정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권고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 규명에 머물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활동 초기부터 블랙리스트 사태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파행적인 문화 행정 구조에 주목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연구·조사, 기관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및 토론회, 현장 공청회 등을 거쳐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 권고했다. 특

히 이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문화예술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토론되는 성과가 있었다.

5)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규명안 도출 및 권고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규명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집행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들에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국가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처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의 책임규명안은 개별 조사 결과에 따른 블랙리스트 사태 관계자들 개개인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권고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책임규명안 권고를 통해 문화 행정을 둘러싼 사회적 정의, 성찰, 공공성, 준법성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6)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유와 토론

위원회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홈페이지, 각종 미디어 활동 등을 통해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과정과 결과물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토론했다.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 의견 수렴하였으며 평가와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위원회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 한계

1) 위원회 권한의 한계에 따른 미진한 진상 조사

위원회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훈령에 의한 자문기구로서,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 규명이라는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집행하기에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실질적인 조사권의 부재,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자료들에 대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진상조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국가기록원의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 캐비닛 자료, 블랙리스트 관련 2심 재판 이후 자료,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세부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 조사를 좀 더 구

체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2)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견제에 따른 위원회 활동의 위축

위원회 활동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조사 방해 행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공식적으로 위원회 활동의 중단·해체를 요구할 정도로 적극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원회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은 또 다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조사 방해 행위로 인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일상적인 조사 활동의 제한으로 이어졌다. 위원회의 조사 위원, 조사 기간, 조사 범위 등 진상 조사 역량 일체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방해로 인해 현저히 축소되었다.

3) 위원회 기간의 한계에 따른 진상 조사 범위의 제약

위원회는 구성 단계에서 6개월의 활동 기간을 명시하되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활동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시간 상, 범위 상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앞서 언급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조사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특히 이전의 과거사위원회들이 다룬 사건들과는 달리 블랙리스트 사태는 현재성을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자체를 조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는 11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 개별 사건들에 대한 세부 조사에서부터 제도개선안 권고,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책임규명안 권고 등 모든 활동을 진행해야 했다. 이에 위원회의 조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 등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4)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한계로 인해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반적인 규모, 주요 사건 조사 등은 진행하였지만, 아쉽게도 블랙리스트 사태 전체에 대한 개별적이고 충분한 조사 과정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 이에 개별적인 블랙리스트 사건들은 아직도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 위원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로 인해 마무리되었지만 향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책임있게 조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토론 필요

위원회는 활동 기간 내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사회적으로 제안하며 의견 수렴 및 토론의 공간을 열어왔다. 그 결과물이 현재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제안하고 권고한 제도개선안이다.

제한된 시간과 역량 속에 마련된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은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토론과 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적인 협치를 기본 철학이자 전제로 작성된 내용들이다.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자율, 분권, 협치에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에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은 그 집행 과정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사회적 토론과 숙의, 그리고 협치를 보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정 혁신 과정 속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3

종합 권고

제1절 종합 권고 개관

제2절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조치

제3절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제4절 후속 진상 규명과 문화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기구의 설치



3

종합 권고



제1절 | 종합 권고 개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범죄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와 관련 제도의 개선,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구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 권고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2절 |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조치

1.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검열, 차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적 범죄 행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이다. 국가기관이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해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위헌·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국민과 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육문화수석 등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연루된 범죄가 장기간 불법적으로 지속되었으며, 그 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수천 건에 이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이 사태의 피해자인 문화예술인들과 시민 모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국정원은 문화예술인, 단체에 대한 지속적 정보 수집 및 신분 검증, 좌파 성향 인적 청산 등을 위한 동향 및 정보 보고 등 법에서 금지한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국정원은 2017년 6월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특정 성향의 문예계 인물·단체의 배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있어 국정원의 부당 개입과 관여를 밝혀낸 바 있고, 과거 국정원의 위법, 위규 적폐 행위 청산을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가 이행되고 세부 실행 계획 수립에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원 배제 등의 실질적 실행 기관이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소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진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후속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5월 16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발표 자리에서 국가 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2018년 4월 4일 영화진흥위원회는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자체 구성한 ‘영진위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례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 5월 17일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하여 예술위가 반헌법적 국가범죄의 공범자가 된 것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2. 책임규명 및 처벌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권력자들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나 현재 재판 대상자는 최고 권력층 일부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정책부서 및 보조금지원 사업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고 배제 조치를 하는 등 위헌,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들은 특검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공적 제도와 공공기관을 통해 문화예술인을 차별하고 그 결과 예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한 위헌·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부처인 문체부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등을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기구로 활용하였으며, 위원회의 조사 결과 상당한 수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이 집권 세력의 조직적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관련된 개별 공직자 등은 잘못된 정권의 희생양이나 도구에 불과하였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 또는 부당한 공무·업무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 전체이며 이에 대한 행위자의 행위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에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직무상 상급자에 대한 복종 의무가 있지만 위법하거나 불법한 지시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 수많은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이며,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지원심의 운영 규정」 등에 의하면 ‘문체부 산하의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면서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문예기금을 별도로 운용 관리하고, 소속 위원들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문예기금의 운용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역시 이와 비슷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 및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이같은 역할과 사명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게 공무와 관련 문화예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청와대 등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적극 동조, 묵인, 방조하며 직접 실행하여 문화예술인들을 차별 대우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이에 대한 합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져야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무너진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문화예술계와 국민 모두와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지시 및 실행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의 책임과 처벌을 넘어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고, 공직자 및 문화예술행정 종사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의 반인권적·반헌법적 의미와 재발 방지책 등 일련의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내용의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해자 명예 회복 및 구제를 위한 조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권리·이익 침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상하고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 공권력의 오·남용 결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명예 회복과 배·보상 그리고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이의 실행을 위한 조치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사건 피해자는 문화예술 창작·표현 활동을 검열 당하거나 각종 지원 사업 등에서 배제된 인물들로 한정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피해의 유형을 국가, 정보기관 등에 의한 ‘①사찰’ 및 ‘②감시’, 예술 작품의 표현이나 공개를 통제 받는 ‘③검열’, 고용·참여·예산 지원 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를 제외시키는 ‘④배제’, 불공정한 제재 조치 또는 부당한 제도 개편을 통한 ‘⑤통제’,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⑥차별’ 등 6가지로 망라하였다.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찰 당하고, 자기 검열을 통해 작품 내용을 수정하거나 지원 신청을 철회하는 등 블랙리스트로 인한 위축 효과가 존재했음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범위는 훨씬 더 확대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자는 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직·간접의 배제 효과에 따라 차별 당한 문화예술인을 광범위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

피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명예 회복 및 보상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질 때, 소멸 시효로 인하여 피해 회복의 길을 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8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가범죄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특성상 국가 기관이 피해 자체를 알 수 없도록 은폐하였던 것이므로, 단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¹⁰⁰⁾은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권리 행사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이 5년 이상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 손해배상이 가능하여야 한다. 위법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국가범죄’ 사건일 경우, 소멸 시효로 인하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이 사태의 교훈을 사회적으로 기억·기록·보존·연구하는 사업 및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릴 수 있도록 위원회가 생산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며, 문체부는 이 기록들을 향후 추가적인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1. 법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문화기본권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 기관에서 문화예술 지원 기관 제외 추진’ 등을 권고하였다. 권고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제도 개선 권고 세부 내용

권고 분야	과제 구분	세부 과제 내용	관련 부처 및 기관	조치 기한
법제도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문화 기본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각 조항 개정 및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국회 	2020. 12.

100)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권고 분야	과제 구분	세부 과제 내용	관련 부처 및 기관	조치 기한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의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 정비 : 『문화기본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대통령 직속 '(가칭)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국회 	2018. 12.
	법 개정·제정을 통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본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법제도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국회 	2018. 12.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 기관에서 문화예술 지원 기관(예술위, 영진위 등) 제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재정부 • 국회 	2019. 12.

2. 문화행정 개선 권고

위원회는 문화행정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국정 운영 차원의 문화정책 정체성 확립’, ‘국정 홍보 기능 혁신 및 조직 분리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개혁을 통한 소속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문화행정 협치 기반 조성 및 제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권고하였다. 권고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행정 개선 권고 세부 내용

권고 분야	과제 구분	세부 과제 내용	관련 부처 및 기관	조치 기한
문화행정	국정 운영 차원의 문화정책 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문화국가의 원칙 확립 및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가칭)문화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언' ■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재조정 및 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8. 12.
	국정 홍보 기능 혁신 및 조직 분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에서 국정 홍보 기능 재정립 ■ 국정 홍보 정책 및 사업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9. 12.

권고 분야	과제 구분	세부 과제 내용	관련 부처 및 기관	조치 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개혁을 통한 소속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등과 중층적 협치 구조 확보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업무 재조정 및 “기능+장르” 체계로 개편 ■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추진 및 예술정책 조직 개편 ■ 성과협약 체결 및 성과 체계 마련 ■ ‘(가칭)문화예술지원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12.
	문화행정 협치 기반 조성 및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행정 협치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및 이행 계획 수립 ■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의 책임”을 「문화기본법」에 명시 ■ 국가 단위 정책 수립 과정에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 ■ 참여와 협치에 기반 한 문화 행정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8. 12.

3. 주요 문화예술기관 개선 권고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예술 지원 정책의 인식 전환과 원칙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운영 혁신’,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통한 예술정책의 자율성·전문성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위원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가칭)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체성 확립’, ‘예술인의 참여에 기반을 둔 개방적 구조 마련’, ‘정책 역량 강화와 사업 구조 및 운영 방식 개편’, ‘예술 현장에 기반을 둔 협치 구조 확대’ 등을 권고하였다.

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영화 ‘진흥’에서 영화 ‘가치 확산’으로 정책 혁신’, ‘영화 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 전환’, ‘위원회 권한 및 책임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위원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기관 위상 및 이사회 권한 정립’, ‘출판 문화 지원 기관으로서의 운영 혁신 및 전문성 강화’, ‘표현의 자유 확대와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사업 구조 혁신 및 세종도서 선정 사업 민간 위탁’ 등을 권고하였다.

마.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장르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전문성 있는 문화산업 지원 기관으로 재탄생’, ‘심사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협치 기반의 정책 심의 및 지원 체제 구축’ 등을 권고하였다.

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기관 위상 재정립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직적인 사업 구조 개혁’,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관으로서의 협치 기반 마련’, ‘지원 사업과 심사 제도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주요 문화예술기관 개선 권고 세부 내용

권고 분야	과제 구분	세부 과제 내용	관련 부처 및 기관	조치 기한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예술 지원 정책의 인식 전환과 원칙 수립	■ 새로운 예술 지원 체계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12.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운영 혁신	■ 위상과 역할 재정립 : 기 관명 변경, 『공공기관운 영법』 제외, 호선제 도 입, 위원추천위원회 구 성 권한 이관 외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기획재정부 • 국회	2019.12.

권고 분야	과제 구분	세부 과제 내용	관련 부처 및 기관	조치 기한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운영의 투명성 강화 : 회의 운영 공개, 연차보 고서 발간, 심의제도 혁 신 외 ■ 재정 구조의 독립성과 안 정성 강화 ■ 사업 운영의 개방성과 전 문성 확보 : 사업 구조 개 편, 사업모니터링단 운 영 외 ■ 예술 현장과의 협치 기반 마련 : 사무처 직위 개방, 소위원회 활성화, 참여 형 사업 운영 외 			
	(가칭)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검 토 및 추진 : 국가예술위 원회 설립 추진단 구성 및 단계별 사업 추진 외 ■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회 	2020. 12.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가칭)예술인 복지위원회 설치와 예술인 복지재단 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 ■ 예술인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9. 12.
	예술인의 참여에 기반을 둔 개방적 구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추천과 선임을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임원 추천위 구성 ■ 이사회 당연직 비율 축 소, 의제별 이사 배분 ■ 이사가 참여하는 의제별 소위원회 구성 ■ 개방형 직위 도입 ■ 상담, 경력 관리, 불공정 신고 대응을 위한 예술인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12.	
	정책 역량 강화 와 사업 구조 및 운영 방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정책기획팀 신설 ■ 예술인의 삶과 사회적 가 치 보고서 제작 ■ 예술인복지정책 공개 제 안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12.	

권고 분야	과제 구분	세부 과제 내용	관련 부처 및 기관	조치 기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풀제 도입과 별도 운영 			
	예술 현장에 기반을 둔 협치 구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복지정책 평가회 정기 개최 ■ (가칭)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 협치 주체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지역문화재단 	2018. 12.	
	영화진흥위원회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호선제를 위한 법 개정 ■ 위원의 단체 추천 의무화 ■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비의 최대 비율 명문화 ■ 의제와 분야에 따른 위원 구성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재정부 	
	영화 '진흥'에서 영화 '가치 확산'으로 정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위원회'로 명칭 변경 ■ 자율성, 다양성, 창조성에 기반을 둔 가치 중심 지원 ■ 위원회 정책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진흥위원회 	2018. 12.	
	영화 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직위제 실시 ■ 모든 주요 업무에 소위원회 신설 ■ 소위원장 호선제 실시 ■ 참여예산제 실시 ■ 정책 설명제 실시 ■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개선 ■ 중장기 발전 계획안 공청회 의무화 ■ 사업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진흥위원회 	2019. 12.	
	위원회 권한 및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영화계정 직접 관리 ■ 영화발전기금 중 영화진흥위원회 자율적 집행 실행제 도입 ■ 불공정 행위 조사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진흥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청 	2018. 1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관 위상 및 이사회 권한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위상 재정립, 민관 협치 체계 활성화 ■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임원 구성 및 이사회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09.	

권고 분야	과제 구분	세부 과제 내용	관련 부처 및 기관	조치 기한
		재정립 :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의 구성 요건, 이사회 개최 정례화 등을 정관 개정을 통해 명시		
	출판문화 지원 기관으로서의 운영 혁신 및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 ■ (가칭)출판문화연구센터 설립 ■ 운영 및 평가 관련 정보 공개 ■ 사업 선정 결과 문체부 보고 방식 폐기, 심사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12.
	표현의 자유 확대와 간행물 윤리위원회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09.
	사업구조 혁신 및 '세종도서 선정사업' 민간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과제 도출 및 사업 구조 전면 혁신 ■ '(가칭)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 TF'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12.
한국 콘텐츠 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혁신위원회 운영 ■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혁신(안) 도출 ■ 『문화산업기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06. (법개정 제외 일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 평가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제도개선위원회 운영 ■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제도 개선(안) 도출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 평가 지침 개정 ■ '심사 평가 옴부즈만제도' 등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08.
	문화산업전략 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기본법』 개정 ■ 문화산업전략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04.
	협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협치형 사업 공모 ■ 문화콘텐츠협치지원센터 운영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03.

권고 분야	과제 구분	세부 과제 내용	관련 부처 및 기관	조치 기한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	기관 위상 재정립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직적인 사업 구조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위상과 역할 재정립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역할 재정립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예산 구조 개편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상임이사직 폐지 또는 상임감사제도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03.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협치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운영 정상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에 예술 강사, 지역 문화예술지원기관 관련 상설적인 협치 조직 설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구조 내에 참여예산제도 기반 지원 사업 구조 마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국회 	2019. 12.
지원 사업과 심사 제도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사업 구조 혁신: 다년지원제도 확대, (가칭)중기 문화예술교육재정 협약 도입 등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규정·조직·행정 체계 개선을 통한 투명성 강화 ■ 외부 신고 체계 개설 ■ 심사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전문성 확보 ■ 심사위원 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 ■ 심사 옴부즈만(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12. [지원사업 구조 개편의 경우 2019.12]

제4절 | 후속 진상 규명과 문화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기구의 설치

1. 후속 기구 설립의 필요성

위원회 활동의 종결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법령에 의한 조사 기구가 아닌 훈령에 의한 자문 기구 성격으로, 광범위한 조사 영역에 비해 부족한 권한, 촉박한 조사 시간, 기관 협조 미진 등의 한계로 충분한 조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혐의가 추가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 등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이후 관련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추가적 수사 내용이 확보되어야 총체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블랙리스트 문건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는 방송, 언론, 체육, 관광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국가범죄의 실상과 이를 야기한 구조적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후속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기관과 공무원, 민간인이 동원되어 다양한 기제를 통해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이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신고, 조사, 피해구제, 처벌 등을 포함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문화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구로서 ‘(가칭)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위원회’의 설립을 권고한다.

2.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위원회(가칭) 설립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적인 협치 기구로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표현의 자유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기구로 설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문화기본법』의 개정 또는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령 신설을 권고한다. 표현의 자유 위원회는 형식화 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기구의 목적 달성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관 협치형 행정위원회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 및 후속 조치 활동을 하며, 특히 조사 활동을 위해 자료 접근 및 수집, 관련자의 소환 등 충분한 조사 권한이 확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 예술가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센터’ 운영 및 이에 대한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활동’도 주요한 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인 권리 증진 사업 및 표현의 자유 관련 권고 및 평가 활동 등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이행협치추진단 운영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정부의 약속 이행을 검증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이행협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문체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추진단은 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후속 기구인 ‘표현의 자유 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설치하고, ‘표현의 자유 위원회’ 설립 기반 마련 후 활동을 종료한다. 주요 업무 내용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책임규명 권고, 제도개선 권고, 후속 조치 권고 등의 이행을 추진 및 점검하고,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권고 이행을 점검하며, 위원회 기록을 검토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고, 위원회 활동 결과를 담은 백서 배포 및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

별첨

자료 1 위원회 활동 일지

자료 2 위원회 명단

자료 3 위원회 훈령

자료 4 위원회 운영세칙

자료 5 위원회 조사세칙



4

별첨



자료 1 | 위원회 활동 일지

일자	차수	활동
2017. 07. 31.	제1차	전원위원회
	제1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제1차	제도개선소위원회
	제1차	백서발간소위원회
2017. 08. 04.		준비기획단 회의
2017. 08. 07.		소통기획단 회의
2017. 08. 08.	제2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제2차	제도개선소위원회
2017. 08. 09.		소통기획단 회의
2017. 08. 11.	제2차	전원위원회
		준비기획단 회의
2017. 08. 14.		전문위원 채용 9인 - 김소연, 김영록, 박채은, 박태하, 송윤정, 이양구, 이윤주, 전민경, 조환준
2017. 08. 16.	제3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제2차	백서발간소위원회
		준비기획단 회의
		소통기획단 회의

일자	차수	활동
2017. 08. 18.	제3차	전원위원회
	제3차	제도개선소위원회
2017. 08. 22.	제4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준비기획단 회의
		소통기획단 회의
2017. 08. 23.		소통기획단 회의
2017. 08. 25.	제4차	전원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7인 - 김영홍, 김진수, 김혜진, 이용헌, 정윤하, 최현우, 최현정
		위원회 전체 위원 워크숍
2017. 08. 29.	제5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준비기획단 회의
		보도자료 배포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업무 본격 개시- 직권조사 실시 및 온라인 제보센터 열어」
2017. 08. 31.		소통기획단 회의 홈페이지 제보센터 : blacklist-free.kr
2017. 09. 01.	제5차	전원위원회
2017. 09. 04.	제6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7. 09. 07.		소통기획단 회의
2017. 09. 08.	제6차	전원위원회
	제4차	제도개선소위원회
	제3차	백서발간소위원회 백서 편집위원회
2017. 09. 11.	제7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09. 12.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통기획단 회의 주요 지원 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7. 09. 14.		소통기획단 회의
2017. 09. 15.	제7차	전원위원회
2017. 09. 18.	제8차	진상조사소위원회 대국민 소통 행사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

일자	차수	활동
2017. 09. 19.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제1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정을 위하여
2017. 09. 21.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제2차 문학 분야
2017. 09. 22.	제8차	전원위원회
	제5차	제도개선소위원회
	제4차	백서발간소위원회
		백서 편집위원회
		법무부 검사 파견 - 권방문
2017. 09. 25.	제9차	진상조사소위원회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제3차 연극 분야
2017. 09. 26.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09. 27.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7. 09. 29.	제9차	전원위원회
		조영선 위원, 진상조사 소위원장 사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제4차 영화 분야
2017. 10. 11.	제10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7. 10. 13.	제10차	전원위원회
		진상조사소위원장 호선(김준현 위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제5차 시각예술
2017. 10. 17.		워크숍
2017. 10. 20.	제11차	전원위원회
	제6차	제도개선소위원회
	제5차	백서발간소위원회
		위원 위촉(박대원 위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제6차 출판 분야, 제7차 무용 및 전통
		백서 편집위원회
2017. 10. 23.	제11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일자	차수	활동
2017. 10. 24.		소통기획단 회의
2017. 10. 26.		문화행정혁신TF 제1차 전문가 간담회
2017. 10. 27.	제12차	전원위원회
2017. 10. 30.	제12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제2차 블랙리스트 방지 법제 연구 사전 회의
		기자회견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관련 입수자료 분석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지원 배제 사건
2017. 11. 03.	제13차	전원위원회
		문화행정혁신TF 제2차 전문가 간담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전략 워크숍
2017. 11. 06.	제13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7. 11. 10.	제14차	전원위원회
	제6차	백서발간소위원회
		문화행정혁신TF 제3차 전문가간담회
		백서편집위원회
2017. 11. 13.	제14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7. 11. 14.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제8차 문화산업 분야
		제도개선소위원회 전략 워크숍 - 과제별 개선안 검토 1
2017. 11. 16.		기관 운영 개선 연구 현안 분석 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11. 17.	제15차	전원위원회
2017. 11. 20.	제15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운영회의
		전문위원 채용 9인 - 김세진, 민왕기, 박수진, 이관형, 정유경, 정이수, 최지현, 최홍섭, 현석이
2017. 11. 22.		확대운영회의
		문화행정혁신TF 제4차 전문가 간담회
2017. 11. 24.	제16차	전원위원회
	제7차	백서발간소위원회
		백서 편집위원회

일자	차수	활동
2017. 11. 27.	제16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운영회의
2017. 11. 28.		제도개선소위원회 전략 워크숍 - 과제별 개선안 검토 2
2017. 11. 30.	제17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7. 12. 01.	제17차	전원위원회
	제7차	제도개선소위원회
2017. 12. 04.	제18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운영회의
2017. 12. 05.		제도개선소위원회 전략 워크숍 - 과제별 개선안 검토 3
2017. 12. 07.	제19차	진상조사소위원회 문화행정혁신TF 제5차 전문가 간담회
2017. 12. 08.	제18차	전원위원회
2017. 12. 11.	제20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운영회의 기관 운영 개선 연구 전문가 간담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12. 12.		기관 운영 개선 연구 전문가 간담회 : 영화진흥위원회
2017. 12. 15.	제19차	전원위원회
	제8차	백서발간소위원회 평가와 환류 워크숍
2017. 12. 18.	제21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7. 12. 20.		기자회견 : 블랙리스트 문건 종합 및 분석, 주요기관 사건 보고(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2017. 12. 21.		백서발간을 위한 전체 위원 워크숍
2017. 12. 22.	제20차	전원위원회
2017. 12. 26.	제22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7. 12. 26~27.		위원회 전문위원 워크숍
2017. 12. 28.		확대운영회의
2018. 01. 02.		운영회의
2018. 01. 03.	제23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제9차	백서발간소위원회

일자	차수	활동
2018. 01. 05.	제21차	전원위원회
	제8차	제도개선소위원회
2018. 01. 08.		운영회의
2018. 01. 11.		보도자료 배포 : 「靑, BIFF 이용관 인사조치 요구, 부산시 전방위 접촉·압박」
2018. 01. 15.		보도자료 배포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컨퍼런스」
	제24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8. 01. 12.	제22차	전원위원회
2018. 01. 15.		운영회의
2018. 01. 17~18.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컨퍼런스
2018. 01. 18.	제25차	진상조사소위원회
		보도자료 배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블랙리스트 적용 (개인 24명, 5개 단체 배제)」
2018. 01. 19.	제23차	전원위원회
	제9차	제도개선소위원회
2018. 01. 22.		운영회의
2018. 01. 29.		운영회의
2018. 01. 31.		전문위원 계약 만료 2인 - 최현우, 현석이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
2018. 02. 01.		보도자료 배포 : 「한국콘텐츠진흥원,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최초 확인」
2018. 02. 02.	제24차	전원위원회
2018. 02. 05.	제26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운영회의
2018. 02. 06.		제도개선 의제별 핵심 내용 도출 및 쟁점토론 전문가 간담회 - 지원체계 전반
		보도자료 배포 : 「독립다큐영화, 영진위 지원사업 배제 27건 추가 확인」
2018. 02. 07.		제도개선 의제별 핵심 내용 도출 및 쟁점토론 전문가 간담회 - 표현의 자유 법제도 개선 방안
2018. 02. 08.		제도개선 의제별 핵심 내용 도출 및 쟁점토론 전문가 간담회 - 주요 지원기관 개선안(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02. 09.	제25차	전원위원회
	제10차	제도개선소위원회
		제도개선 의제별 핵심 내용 도출 및 쟁점토론 전문가 간담회 - 주요 지원기관 개선안(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일자	차수	활동
2018. 02. 12.	제27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운영회의 전문위원 채용 2인 - 이하영, 한승주
2018. 02. 13.		제도개선 의제별 핵심 내용 도출 및 쟁점토론 전문가 간담회 - 문체부 조직 개편안
2018. 02. 19.	제28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운영회의
2018. 02. 23.	제26차	전원위원회
	제11차	제도개선소위원회
2018. 02. 26.	제29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운영회의
2018. 03. 02.	제27차	전원위원회
2018. 03. 05.	제30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제10차	백서발간소위원회 운영회의
2018. 03. 06.		영화진흥위원회 기관 간담회
2018. 03. 08.		백서 편집위원회 백서TF 회의
2018. 03. 09.	제28차	전원위원회
	제12차	제도개선소위원회
2018. 03. 12.	제31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운영회의
2018. 03. 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관 간담회
2018. 03. 15.		영화 분야 현장 간담회
2018. 03. 16.	제13차	제도개선소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현장 간담회
2018. 03. 19.		운영회의
	제32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8. 03. 23.	제29차	전원위원회
	제14차	제도개선소위원회

일자	차수	활동
2018. 03. 26.		운영회의
	제33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8. 03. 30.	제30차	전원위원회
	제15차	제도개선소위원회
2018. 04. 02.		운영회의
	제34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8. 04. 06.	제16차	제도개선소위원회
2018. 04. 09.		운영회의
	제35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8. 04. 10.		기자회견 :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종합판」
2018. 04. 12.		보도자료 배포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 토론회 개최」
2018. 04. 13.	제31차	전원위원회
	제17차	제도개선소위원회
		보도자료 배포 : 「박근혜 정부, 세월호 연대한 문화예술인에 '집요하고 끈질긴 탄압」
2018. 04. 16.		운영회의
	제36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8. 04. 18.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 토론회
2018. 04. 19.		확대운영회의
2018. 04. 20.	제32차	전원위원회
	제18차	제도개선소위원회
2018. 04. 23.		운영회의
	제37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8. 04. 26.	제38차	진상조사소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18. 04. 27.	제33차	전원위원회
	제39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제19차	제도개선소위원회

일자	차수	활동
2018. 04. 30.	제34차	전원위원회
	제40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제11차	백서발간소위원회
		전문위원 계약 만료 9인 - 김소연, 민왕기, 박태하, 이용현, 전민경, 정유경, 정이수, 조환준, 한승주
2018. 05. 08.		기자회견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2018. 05. 15.		운영회의
2018. 05. 18.		백서TF 회의
2018. 05. 23.	제41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8. 05. 25.	제35차	전원위원회
		백서 편집위원회
		백서 TF 회의
2018. 05. 28.		운영회의
2018. 05. 29.	제42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8. 05. 31.		전문위원 계약 만료 2인 - 김영록, 정윤하
2018. 06. 01.	제36차	전원위원회
2018. 06. 05.	제43차	진상조사소위원회
		운영회의
2018. 06. 08.	제37차	전원위원회
2018. 06. 22.	제38차	전원위원회
	제44차	진상조사소위원회
2018. 06. 25.		백서 편집위원회
2018. 06. 26.	제12차	백서발간소위원회
2018. 06. 27.	제39차	전원위원회
2018. 06. 28.		보도자료 배포 : 「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총 130명, 수사의를 26명 및 징계 104명 권고」
2018. 06. 30.		전문위원 계약 만료 14인 - 김영홍, 김진수, 김세진, 김혜진, 박수진, 박채은, 송윤정, 이관형, 이양구, 이윤주, 이하영, 최지현, 최현정, 최홍섭

자료 2 | 위원회 명단

1. 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주요 경력	비고/활동기간
공동위원장 2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학철	미술가	
민간위원 16인 (정원 16인, 중도 사퇴 포함 총 17인, 가나다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소통기획단장
	김미도	연극평론가	백서발간소위원장
	김용삼	김포대 문화학부 교수	
	김윤규	안무가	
	김준현	변호사	진상조사소위원장
	류지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박태원	변호사	2017. 10. 20. ~ 2018. 6. 30.
	박희정	수도권풍물연석회의 대표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2017. 7. 31 ~ 2018. 4. 29. 간사
	오동석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2017. 7. 31 ~ 2018. 6. 30. 제도개선소위원장 2018. 4. 30 ~ 2018. 6. 30. 간사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조영선	변호사	2017. 9. 일신 상의 사유로 사퇴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당연직 위원 3인 (정원 3인, 연인원 5인)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2017. 7. 31. ~ 2017. 9. 3 간사, 이후 전보에 따른 위원 해촉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2017. 7. 31. ~ 2017. 9. 3.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2017. 9. 4. ~ 2018. 6. 30. 간사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2017. 9. 4. ~ 2018. 6. 30.
	현완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2017. 7. 31 ~ 2018. 3. 30.
	김영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2018. 5. 11. ~ 2018. 6. 30.

2017/9/29 조영선 진상조사 소위원장이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직 수행하게 됨에 따라 사임 (전원위 보고일자 기준)

2017/10/13 김준현 위원 진상조사 소위원장 선출 (전원위 보고일자 기준)

2017/10/20 조영선 위원 해촉에 따른 박태원 변호사 위원 위촉

2018/4/30 송경동 총괄간사 사임, 이원재 총괄간사 호선

2. 소위 명단

※ 소위원회 중복 참여 가능

□ 진상조사소위원회(총 11명)

직위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소위원장	조영선	변호사	2017. 7. 31. ~ 2017. 9. 29.
	김준현	변호사	2017. 10. 13. ~ 2018. 6. 30.
민간위원 ※ 가나다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김미도	연극평론가	
	김용삼	김포대 문화학부 교수	
	김윤규	안무가	
	류지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오동석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박태원	변호사	2017. 10. 20. ~ 2018. 6. 30.
간사	박승범	문체부 서기관	2017. 8. 10. ~ 2018. 2. 14.
	안현태	문체부 서기관	2018. 2. 19. ~ 2018. 6. 30.

□ 제도개선소위원회(총 11명)

직위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소위원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민간위원 ※ 가나다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김윤규	안무가	
	김준현	변호사	
	류지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직위	성명	주요 경력	비고
	박희정	수도권풍물연석회의 대표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간사	박승범	문체부 서기관	2017. 8. 10. ~ 2018. 2. 14.
	안현태	문체부 서기관	2018. 2. 19. ~ 2018. 6. 30.

□ 백서발간소위원회

직위	위원	주요 경력	위촉	해촉	변동 사유
소위원장	김미도	소위원장, 연극평론가	2017. 7. 31.	2018. 6. 30.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2017. 7. 31.	2018. 6. 30.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17. 7. 31.	2018. 6. 30.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2017. 7. 31.	2018. 6. 30.	
민간위원 ※ 가나다순	오동석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2018. 3. 9.	2018. 6. 30.	전문위원대부분이 백서(종합보고서)작업에 참여해야하는 점등을 고려하여당연직(백서소위원회) 외에는 내부 편집위원 지위를 두지 않기로함에 따라 편집위원에서 소위 위원으로 전환함.
	송경동	시인	2018. 2. 23.	2018. 6. 30.	2018. 2. 23. 제26차 전원위원회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2018. 2. 23.	2018. 6. 30.	백서논의 및 작업에
	김준현	변호사	2018. 2. 23.	2018. 6. 30.	진상조사소위 및 제도 개선소위의 참여
	박태원	변호사	2018. 2. 23.	2018. 6. 30.	가필요한점, 백서에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2018. 2. 23.	2018. 6. 30.	위원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참여위원을 확대함.
당연직 위원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2018. 2. 23.	2018. 6. 30.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2018. 2. 23.	2018. 6. 30.	
간사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2017. 7. 31.	2018. 6. 30.	

3. 전문위원 명단

구분	성명	활동 시작	활동 종료	비고
기획운영팀	박재은	2017. 8. 14.	2018. 6. 30.	
	민왕기	2017. 11. 20.	2018. 4. 30.	
	이하영	2018. 2. 12.	2018. 6. 30.	
법무	전민경	2017. 8. 14.	2018. 4. 30.	
진상조사 총괄팀장	김진수	2017. 8. 25.	2018. 6. 30.	
진상조사1팀	박태하	2017. 8. 14.	2018. 4. 30.	
	최현정	2017. 8. 25.	2018. 6. 30.	
	현석이	2017. 11. 20.	2018. 1. 31.	
진상조사2팀	이양구	2017. 8. 14.	2018. 6. 30.	
	김혜진	2017. 8. 25.	2018. 6. 30.	
	박수진	2017. 11. 20.	2018. 6. 30.	
	이관형	2017. 11. 20.	2018. 6. 30.	
	이용현	2017. 8. 25.	2018. 4. 30.	
	이윤주	2017. 8. 14.	2018. 6. 30.	
	김영록	2017. 8. 14.	2018. 5. 31.	
진상조사3팀	김영홍	2017. 8. 25.	2018. 6. 30.	
	정유경	2017. 11. 20.	2018. 4. 30.	
	정윤하	2017. 8. 25.	2018. 5. 31.	
	정이수	2017. 11. 20.	2018. 4. 30.	
	조환준	2017. 8. 14.	2018. 4. 30.	
진상조사4팀	김세진	2017. 11. 20.	2018. 6. 30.	
	최홍섭	2017. 11. 20.	2018. 6. 30.	
	김소연	2017. 8. 14.	2018. 4. 30.	
제도개선팀	최지현	2017. 11. 20.	2018. 6. 30.	
	최현우	2017. 8. 25.	2018. 1. 31.	
	한승주	2018. 2. 12.	2018. 4. 30.	
백서발간팀	송윤정	2017. 8. 14.	2018. 6. 30.	

4. 백서 편집위원 명단

위원	주요 경력	위촉	해촉	해촉 사유
김미도	편집위원장, 연극평론가	2017. 9. 8.	2018. 6. 30.	
이양구	전문위원	2017. 9. 8.	2018. 3. 9.	당연직(백서소위원회) 외에는 내부 편집위원 지위를 두지 않기로 함
김소연	전문위원	2017. 9. 8.	2018. 3. 9.	당연직(백서소위원회) 외에는 내부 편집위원 지위를 두지 않기로 함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2017. 9. 8.	2018. 6. 30.	
김영록	전문위원	2017. 9. 8.	2018. 3. 9.	당연직(백서소위원회) 외에는 내부 편집위원 지위를 두지 않기로 함
박채은	전문위원	2017. 9. 8.	2018. 3. 9.	당연직(백서소위원회) 외에는 내부 편집위원 지위를 두지 않기로 함
이윤주	전문위원	2017. 9. 8.	2018. 3. 9.	당연직(백서소위원회) 외에는 내부 편집위원 지위를 두지 않기로 함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17. 9. 8.	2018. 6. 30.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2017. 9. 8.	2018. 6. 30.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9. 8.	2018. 6. 30.	
조환준	전문위원	2017. 9. 8.	2018. 3. 9.	당연직(백서소위원회) 외에는 내부 편집위원 지위를 두지 않기로 함
노이정	연극평론가	2017. 10. 20.	2018. 6. 30.	
천정환	국문학자	2017. 10. 20.	2018. 6. 30.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10. 20.	2018. 6. 30.	
심용환	역사학자	2017. 11. 10.	2018. 6. 30.	
오창은	국문학자	2017. 11. 10.	2018. 6. 30.	
박현선	영화연구자	2017. 11. 10.	2018. 6. 30.	
이진아	연극평론가	2018. 3. 5.	2018. 6. 30.	
김소연	전문위원, 연극평론가	2018. 4. 30.	2018. 6. 30.	전문위원 활동 종료 후 편집위원 위촉

5. 지원팀 명단

성명	근무 기간	직급
박승범	2017. 8. 16. ~ 2018. 2. 14.	서기관
안현태	2018. 2. 19. ~ 2018. 7. 4.	서기관
이수지	2017. 8. 3. ~ 2017. 12. 4.	사무관
장동엽	2017. 8. 7. ~ 2018. 3. 31.	사무관
양성미	2017. 12. 5. ~ 2018. 5. 27.	사무관
조경미	2018. 4. 1. ~ 2018. 7. 4.	사무관
이정록	2017. 8. 3. ~ 2018. 5. 22.	주무관
노효은	2018. 5. 23. ~ 2018. 7. 4.	주무관

6. 파견 검사

성명	근무 기간	비고
권방문	2017. 9. 22. ~ 2018. 4. 30.	

자료 3 | 위원회 훈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7. 3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320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3.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수립
4. 기타, 위원회의 세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결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제외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공연, 문학,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감사관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위원장이 추천한 제2항 제1호 위원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조사소위원회
2. 제도개선소위원회
3. 백서발간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을 두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위원회에 의결권이 없는 간사 1명을 두며, 진상조사소위원회 및 제도개선소위원회의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장, 백서발간소위원회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본다.

-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의 제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의를 공개로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10조에 따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 직원 및 전문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정한 활동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은 진상조사 및 심의·의결 시에 객관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 제10조(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지원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장관은 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감사관을 통해 관련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사건의 실제 파악과 기록,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정책 권고안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 최종 결정을 거쳐 확정하고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기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단위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진상조사 등이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위원회의 존속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제정 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자료 4 | 위원회 운영세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세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4조(운영세칙)에 따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등의 의무) ① 위원, 지원팀과 제8조의 전문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등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 등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 등은 위촉 또는 채용될 때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따른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위 직위에 있

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의결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훈령 제4조 제4항 간사는 위원회 업무 지원 및 운영을 총괄하되, 필요한 경우 제8조의 전문위원 중에서 업무 보조를 위한 운영팀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보존·관리한다.

② 위원장은 차기 회의 시 전차 회의 회의록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받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소위원회 운영

제5조(회의 등) ①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3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따라 회의록의 작성 여부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작성된 회의록은 소위원회 간사가 분류하여 보관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제8조의 전문위원 중에서 그 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둘 수 있다.

제6조(직무) 소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과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관련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소관) ① 진상조사소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및 사실관계 파악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상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신청, 조사 대상, 조사 방법과 절차, 통지 및 종결 등에 관하여 조사세칙을 규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반적인 실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2. 제보·신청을 통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3. 위원회가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사건의 실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② 제도개선소위원회는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백서발간소위원회는 진상조사소위원회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정리된 사항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백서로 제작·발간함을 소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소위원회 소관 사항의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편중된 경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전문위원의 지위와 역할

제8조(전문위원의 구성) 훈령 제10조의 전문위원은 16인으로 구성한다. 단, 운영의 필요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의 채용) ① 전문위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과 관련한 일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되, 전문위원 중 9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속한 위원회 활동 지원 및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서류전형만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 또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나 감사·조사, 공직윤리 관련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전문위원의 채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5인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⑤ 채용권자는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의 보수) 전문위원의 보수 수준은 팀장급 전문위원의 경우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타직 보수(위원회 상근직) 가급 상당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 전문위원의 경우 동 지침 기타직 보수(위원회 상근직) 나급 상당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전문위원의 지위와 역할) ① 진상조사 분야 전문위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산하기관, 대외기관,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② 진상조사 분야 전문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③ 제도개선 및 백서발간 분야 전문위원은 각 소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제5장 보 칙

제12조(대외 소통) ① 위원회 활동에 대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언론 취재 지원 및 국회 소통 지원, 홍보 상황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대변인을 둔다.

② 위원회 활동 전반에 관한 언론 브리핑은 대변인이 담당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언론 취재 등에 응할 수 있다.

제13조(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위원회 활동의 대국민 소통 및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의 온라인 신청과 제보 접수 등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② 위원회 홈페이지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되,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제14조(용역 및 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전문가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 소위원회 등에 출석·참여하는 위원 및 자문에 참여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예산 집행지침 및 국내 여비규정에 따라 수당, 자문료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출범 이전에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자문을 한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 합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원 위촉 등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위원회 위원 등

성명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지원팀/전문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활동 기간 중은 물론 활동 후에도 적용)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 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성 명

(서명)

자료 5 | 위원회 조사세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1. 조사세칙을 규정하는 이유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제3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진상조사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함.
- 특히 신청에 의한 경우 외에 직권에 의한 조사를 명문화함으로써 블랙리스트에 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 규정 내용

- 신청인의 진상조사 신청 절차 및 직권조사 근거 등을 마련함(제4조, 제17조)
- 조사신청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필요한 경우 10일씩 30일까지 연장하게 함으로써 지연 신청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제4조)
- 신청에 따른 접수, 조사소위의 조사신청서 검토, 소위원회의 의결 및 전원위원회 조사개시 결정 등 절차를 규정함(제9조 내지 제16조)
-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감사관을 통한 자체 감사 등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8항)
- 전문위원들의 조사 방법 등을 기술함(제3장)
- 조사 대상자, 참고인 등의 진술거부권, 협조에 따른 조사 일정을 규정함으로써 절차와 방향 등에 대한 원칙을 설정함(제25조, 제26조)
-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여비, 숙박비 규정, 아울러 조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조사 활동 수당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제31조)
- 진상조사결과보고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권고할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제37조 제3항)

3. 조사 일정 (안)

일자		조사 경과	비고
2017.8.28.	신청서 접수 개시	조사신청서 검토보고서	신청 기간 60일
2017.9.11.		첫 진상조사 개시 결정(예정)	
2017.10.28	1차 조사신청 접수 마감	진상조사검토보고서	
2017.12.28	조사 완료	최종 진상조사검토보고서	
2018.1.31.		최종 마무리	기간 연장 검토

4. 조사 신청에서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까지 경과

관계자	진행 업무	비고 (조사세척)
① 신청인	조사신청서	제5조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10일씩 3회 연장)
② 접수 담당 전문위원	신청사건 분류, 사건번호 부여	제11조, 제12조
③ 조사 소위원회	조사신청서 검토보고서	제18조
④ 전원위원회	조사 개시 결정	제21조 조사개시 결정 후 30일 이내
⑤ 조사팀	사건대상자, 참고인 등 대면, 출장 조사	제22조 이하
⑥ 진상조사소위원회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심의 의결	제35조, 제36조
⑦ 전원위원회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제37조
⑧ 위원회	신청인에게 통지	제38조 통지14일 이내 이의 신청 시 ②이후 절차 진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세칙 제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사세칙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4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훈령 제3조, 제7조의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훈령 등에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사의 방식)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훈령 제3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장 조사신청

제4조(조사신청서 제출) ①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출석하여 구술로 조사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신청 기간) ① 신청인은 제4조(조사신청서 제출)에 의한 신청을 위원회가 처음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일 단위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우편에 의한 신청은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을 신청일로 본다.

6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와 그 구성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홍보) 위원회는 조사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신청 보완 요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3.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5.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조사신청 접수 담당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접수대장의 기재) 위원회 접수 담당자는 조사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접수증명의 교부)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사건번호) 사건번호는 연도 다음에 사건 유형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이되, 접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2017문000)

1. 공연예술 (연극, 무용, 마임, 뮤지컬 등) : 공
2. 문학 : 문
3. 시각예술 (미술, 만화, 사진 등) : 시
4. 영화 : 영
5. 전통예술 : 전
6. 출판 : 출
7. 기타 문화산업 : 산
8. 1~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예
9.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구별할 수 없거나 특별한 경우 : 특
10.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직권으로 결정한 사건 : 위
유형에 따라 직시, 직문, 직특 등
11.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의 진상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

제12조(조사신청서의 분류 등) ① 위원회 접수 담당자는 접수된 조사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11조에 의한 사건 유형에 따라 지체 없이 분류하여 진상조사 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조사신청서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제13조(조사신청 분류에 대한 위원회 보고 등)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분류된 사건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전원위원회에 조사개시 결정 등을 요청한다.

제14조(조사신청서의 송부) 위원회 접수 담당자는 분류한 조사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소관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조사신청 취하서가 접수되면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6조(재신청) 각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17조(직권사건의 사건번호 부여 등)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 접수담당자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18조(조사신청서 검토) ①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사건의 분리·병합)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다수의 사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사전조사) ①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여부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2조(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전문위원은 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진상조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 내용·조사 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 내용·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①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의한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진상조사소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또는 사전조사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전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1. 각하
2. 조사개시
3. 직권조사

③ 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38조(결정 등의 통지)를 준용한다.

제22조(조사의 절차) ①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세칙 제7조 제1항, 조사세칙에 따라 조사를 하는 전문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사실조회·감정의뢰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기록 및 각각의 통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진술서 제출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참고인 등에게 진술서 제출, 출석, 방문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해자 및 이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진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24조(전문가 참관 등) ① 위원회는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관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인·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부서, 위원회의 책임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하여 정부기관에 대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훈령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감사관을 통한 자체 감사 등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5조(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직계친족·형제자매·배우자·가족·동거인·변호인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진술청취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연령·성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 신청을 한 때에는 전문위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 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동석 신청자가 조사 기밀 누설이나 조사 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동석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문위원은 조사 기밀 누설이나 조사 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동석자가 부당하게 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사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6조(조사대상자 진술청취) ① 전문위원은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④ 조사대상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⑤ 전문위원은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조사과정확인서에 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하여 조서의 일부로 편철하여야 한다.

제27조(참고인 진술청취) ① 전문위원은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제2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준용하고 조사대상자는 참고인으로 본다.

제28조(진술의 녹음 등) ① 전문위원은 진술인의 요청 또는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제29조(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등) ① 전문위원은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18호, 제19호 서식의 보관 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준용한다.

제30조(감정의뢰) 위원회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의한다.

제31조(참고인 등 여비, 수당) ① 위원회는 조사실 및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청하여 참석한 조사대상자, 참고인 등에게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조사세칙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건기록의 관리

제32조(사건기록관리책임 등) ①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조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관리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관리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사건기록의 작성)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건 표지와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건기록 목록, 별지 제25호 서식의 관계인 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사건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 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할 수 있다.

- ④ 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부분·진술조서·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 사항 및 사건관련자명부의 주소 등 변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별책을 만들어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물건 등의 보관) ① 신청인으로부터 물건,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수령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명칭·내용·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제출자의 성명·물건 등의 번호·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26호 서식의 물건 등의 보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령·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수령·입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5장 조사의 종결

제35조(조사결과와 보고) ① 전문위원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별지 제27호 서식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진상조사 소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당사자
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
3. 조사의 경과
4. 조사 사항·내용

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근거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
- ③ 제1항의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 방지에 필요한 대책
 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진상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6.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기타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의견

제36조(진상조사소위원회의 심의) ① 진상조사소위원회는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을 심의한 후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한다.

② 진상조사소위원회가 위 심의에서 추가 검토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추가 검토 또는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추가 검토 또는 조사를 마친 후 진상조사 소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37조(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전원위원회는 진상조사소위원회가 상정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한다.

②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당사자
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
3. 조사 경과
4. 조사 사항·내용
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근거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
6. 결론
7. 의결일자

8. 위원회 명칭

③ 제2항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④ 진상조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가 원본임을 증명하여 위원회에 보존한다.

제38조(결정 등의 통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서식 제 28호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각하 결정, 조사개시 결정
 2.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채택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다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은 익명 처리한다.
- ② 전항의 통지는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결재일을 그 기산일로 하여 7일 이내에 한다.
- ③ 제1항 제1호 각하 결정의 통지에는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이의신청

제39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의 내용

제40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위원회 접수 담당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진상조사 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전문위원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2호의 서식에 따라 진상조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또는 기각 결정 등을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전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경우,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채택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2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에 의한다. 다만,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송달과 관련하여 이 조사세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등)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조사활동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위원·전문위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조사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증인 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서식의 변경) 이 조사세칙에 의해 정해진 별지 서식은 위원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사세칙은 전원위원회 의결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운영세칙과의 관계) 이 조사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사세칙 시행 이전에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업무 처리는 이 조사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 1호	조사신청서
별지 제 2호	위임장
별지 제 3호	대표자선정 신고서
별지 제 4호	조사신청서 보완요구서
별지 제 5호	조사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 6호	조사신청서 접수증명서
별지 제 7호	조사신청 취하서
별지 제 8호	직권사건대장
별지 제 9호	신청서 검토보고서
별지 제10호	전문위원 증
별지 제11호	제출요청서
별지 제12호	출석협조요청
별지 제13호	동석신청서
별지 제14호	조사대상자 진술조서 (회)
별지 제15호	참고인 진술조서 (회)
별지 제16호	진술의 녹화·녹음 동의서
별지 제17호	보관조서
별지 제18호	보관목록
별지 제19호	보관물 총목록
별지 제20호	감정의뢰서
별지 제21호	참고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영수
별지 제22호	사건기록관리대장
별지 제23호	사건기록 (표지)
별지 제24호	사건기록 목록
별지 제25호	관계인 주소록
별지 제26호	물건 등의 보관 표지
별지 제27호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별지 제28호	결정 등 통지서

별지 제29호	이의신청서
별지 제30호	이의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31호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
별지 제32호	이의신청서 검토보고서
별지 제33호	이의신청 처리통지서
별지 제34호	우편송달보고서
별지 제35호	송달보고서
별지 제36호	조사보고서

[별지 1호 서식]

(총 3면 중 1면)

조사신청서 ※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접수기관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유형	<input type="checkbox"/> 공연예술 (연극, 무용, 마임, 뮤지컬 등) <input type="checkbox"/> 문학 <input type="checkbox"/> 시각예술 (미술, 만화, 사진 등) <input type="checkbox"/> 영화 <input type="checkbox"/> 전통예술 <input type="checkbox"/> 출판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화산업 <input type="checkbox"/>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구별할 수 없거나 특별한 경우	

신청인 (단체)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의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제출 필요 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조사세칙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 위임장 등

사건 관련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건 당시 소속
피해자					

담당자	
기관/위원회	
발생일시	
해당사업	

관련자 · 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관련 증거·자료	자료명	내용

타기관 신청·조사 여부	신청일자	기관명	조사내용	조사결과	처리일자

(총 3면 중 2면)

신청의 취 지					
사 건 경 위					
피 해 내 용					
진상규명 대상·과제					
진상규명 필요 이유					
기 타					
<p>「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상규명조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귀중</p> </div>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접수담당자</th> <th style="text-align: center;">접수일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30px;"></td> <td style="height: 30px;"></td> </tr> </tbody> </table> </div>		접수담당자	접수일자		
접수담당자	접수일자				

(총3면 중 3면)

※ 이 란은 신청인이 구술로 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기 록 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작 성 유 의 사 항 〉

1.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
※ 신청인의 성명란에는 단체명을 함께 기입
2. 신청인의 “관계” 란은 사건과 신청인의 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를 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
※ 제출 필요 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조사세칙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 위임장 등
3. “사건 관련자” 란은 신청사건 관련자(피해자, 사건 담당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4. “사건 관련 기관”, “경험자 또는 목격자”, “관련 증거·자료”, “진정·조사 여부” 란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
※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5. 신청의 취지,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 그리고 진상규명의 대상·과제·필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 신청서,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제2호 -1 서식]

위임장				
수 임 인	성 명	①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①	생년월일	
	관 계	①	생년월일	
<p>위 사람을 조사신청인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임인(신청인) (다수 일 경우 별지 기재)</p> <p style="text-align: right;">이름</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주민번호</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귀중</p>				
<p>위임인이 다수일 경우 붙임 자료</p>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선정 신고서				
(접수번호 :)				
대 표 자	성 명	①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①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①	생년월일	
	주 소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을 조사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별지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귀중</p>				
붙임 : 신청인 명단 1부				

[별지 제6호 서식]

조사신청서 접수증명서

접수기관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취지			
접수일		년	월 일
접수자	성명		
<p>위와 같이 조사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p> <p style="text-align: right;">직인 또는 접수인 날인</p>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 739-5875

팩스 (02) 720-4794

전자우편

주소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광화문 빌딩 West 12층

[별지 제9호 서식]

신청서 검토보고서					
사건번호		접수일자	20	사건유형	
사 건 명					
신 청 인			관련기관		
사 건 발생위원회			분 야		
신청 요지					
확인 사항					
신 청 인 제출 자료					
검토의견					
작성일		담당부서		담당자	(인)

[별지 제10호 서식]

(앞 쪽)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문위원 증

사 진
(2.5cm × 3cm)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기 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60mm × 90mm

(뒤 쪽)

제 호

앞 사람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제11조에 따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조사를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요청서				<input type="checkbox"/> 진술서 <input type="checkbox"/> 자료 또는 물건
문 서 번 호 :				
수 신 :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제출할 자 (기 관)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 (기관의 경우 기입하지 아니함)	
	주 소			
제출요구 자료 또는 물건, 진술서 등				
제출기한				
제출할 곳				
<p>위의 사건에 관하여 진상규명에 필요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을 요청하오니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p>				
문의할 곳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출석 협조 요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 사건 :) OOO 귀하에게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7. O. O. 10:00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2층)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고,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가지고 나오십시오.

출석하실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 (전화번호)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별지 제13호 서식]

동석 신청서

수 신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귀 위원회 사건(사건번호:)에 대하여 를(을)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동석을 신청합니다.

다 음

동석자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조사대상자(참고인)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20

신청인

(인)

[별지 제14호 서식]

조사대상자 진술조서 (회)			
성명		생년월일	
<p>위 사람에게 대한 < > 사건에 관하여 2017. 0. 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조사실에서 전문위원 000는 전문위원 000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다.</p>			
문	성명, 직업,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성명은		
	직업은		
	직장 주소는		
	직장 전화번호는		
	전자우편(E-mail) 주소는		
	주소는		
	자택 전화번호는		
	휴대(핸드폰) 전화번호는		
	입니다.		
<p>전문위원은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참여 하에 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p>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 받았는가요

답 (가급적 자필 아니면 기명+날인)

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가급적 자필 아니면 기명+날인)

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가급적 자필 아니면 기명+날인)

이에 전문위원 000은 조사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임의로 제시받아 본인 임을 확인한 후 조사대상자에게 질문한 바,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문

답

문

답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 후 서명날인 하게 함.

진 술 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 문 위 원

조사 과정 확인서

구분	내용
1. 조사 장소 도착 시각	
2.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input type="checkbox"/> 시작시각 : <input type="checkbox"/> 종료시각 :
3. 조서 열람 시작 및 종료 시각	<input type="checkbox"/> 시작시각 : <input type="checkbox"/> 종료시각 :
4.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자필)
<p>전문위원 000는 @@@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으로부터 확인받음.</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확인자 : (인) 전문위원 : (인) </p>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 받았는가요

답 *(가급적 자필 아니면 기명+날인)*

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가급적 자필 아니면 기명+날인)*

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가급적 자필 아니면 기명+날인)*

이에 전문위원 000은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임의로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참고인)에게 질문한 바,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문

답

문

답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 후 서명날인 하게 함.

진 술 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 문 위 원

조사 과정 확인서

구분	내용
1. 조사 장소 도착 시각	
2.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input type="checkbox"/> 시작시각 : <input type="checkbox"/> 종료시각 :
3. 조서 열람 시작 및 종료 시각	<input type="checkbox"/> 시작시각 : <input type="checkbox"/> 종료시각 :
4.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자필)
<p>전문위원 000는 @@@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으로부터 확인받음.</p> <p style="text-align: right;"> 확인자 : (인) 전문위원 : (인) </p>	

[별지 제16호 서식]

진술의 녹화·녹음 동의서

사건번호 :

사건명 :

진술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녹화 녹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호의 1서식]

보관물 총 목록				
번호	물 건 명	수량	보관목록 정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별지 제19호의 2서식]

5cm	보관물건명	
	보관번호	
	사 건 명	
	사건번호	
	담 당	팀 ○○○
	10cm	

[별지 제20호 서식]

감정의뢰서	
제 호 수 신 제 목 감정의뢰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의뢰사항	
비 고	
<p>위 사건의 진상규명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감정을 의뢰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년 월 일</p> <p>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p>	

[별지 제21호 서식]

(1) 참고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영수						
(2) 영수인 (3) 인적사항	(4) 성 명	(5)	(6) 생년월일	(7)		
	(8) 주 소	(9)		(10) 전화번호	(11)	
(12) 비 용	(13) 금 원정 (₩)					
(14) 사건번호	(15) 구 분	(16) 내 역				
(17)	(18) 운 임	(19) 출발지	(20) 도착지	(21) 거리와 요금		
				(22) 종별	(23) 거리(km)	(24) 요금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구 분	(41) 단 가	(42) 일(박)수		(43) 금 액	
	(44) 일 당	(45)	(46)		(47)	
	(48) 일 비	(49)	(50)		(51)	
	(52) 숙박비	(53)	(54)		(55)	
	(56) 식 비	(57)	(58)		(59)	
(60) 합 계	(61)	(62)		(63)		
(64) 영수방법	(65) (은행명)		(66) (계좌번호)			
(67) 위와 같이 참고인 등의 비용을 청구 및 영수합니다.						
(69)	(68) 년 월 일		청구 및 영수인		(서명 또는 날인)	
(70)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71)						
(7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별지 제23호 서식]

보존 종별	재 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사건기록 (표지)
년	제 호	

사건번호			사 건 명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직권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위 원 회	의 안 번 호						
	의 결 일						
	의 결 결 과						
담당부서			담 당				
이 의 신 청							
위 원 회	의 안 번 호						
	의 결 일						
	의 결 결 과						
담당부서			담 당				
기록관리	책 임 자		부 책 임 자		종 결 확 인	담 당	소위원장

[별지 제26호 서식]

물건 등의 보관 표지	
사건번호	
사건명	
물건 등의 유형	
표제	
제출자	
보관 번호	
보관 담당	팀 전문위원
기 타	

[별지 제27호 서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안)

【사 건】 2017...000

【사건명】 0000

【신청인】 000(직권조사 경우 ‘위원회 직권조사’로 기재)

I. 신청 또는 사건 개요

II. 조사 경과

III. 조사 사항·내용

IV. 의견

20 . . .

전문위원 000

[별지 제28호 서식]

결정 등 통지서		
사 건 번 호		
사 건 명		
통지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 명	주 소
통지내용	<input type="checkbox"/> 조사개시결정 <input type="checkbox"/> 각하결정	<input type="checkbox"/> 진상규명 조사결과
결정 등의 이유	※ 필요 시, 별지 작성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별지 제29호 서식]

이의 신청서				
사건번호				
사건명				
이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지받은 날 짜		년 월 일		
통지받은 사 항		<input type="checkbox"/> 각하 결정 <input type="checkbox"/> 조사개시 결정 <input type="checkbox"/> 진상규명 조사결과		
이의신청 내 용		※ 필요 시, 별지 작성		
<p>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귀중</p>				
<p>※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 등 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p>				

[별지 제31호 서식]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			
사건번호			
사건명			
이 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이의신청서 내용			
<p>귀하의 이의신청서를 년 월 일까지 보정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p>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별지 제32호 서식]

이의신청서 검토보고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이의신청인		사건과의 관 계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자 ()	
결정 등 통지서 수령일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조사신청 요 지					
통지내용	<input type="checkbox"/> 기각 결정	<input type="checkbox"/> 조사개시 결정	<input type="checkbox"/> 진상규명 조사결과		
통지이유 요 지					
이의신청 요 지					
확인사항					
추가제출 증거자료					
검토의견					
작 성 일		담당부서		담 당 자	(인)

[별지 제33호 서식]

이의신청 처리통지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이의신청인	
처리내용	
처리이유	
<p>귀하의 이의신청이 위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p>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별지 제34호 서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우편송달보고서				
송달 서류명	(사건(접수)번호:) 재증 발송일 : 20 . . .			
받을사람	성명 주소			
받은사람	<input type="checkbox"/> 본인에게 전달함			
	송달 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본인을 안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람에게 송달함 <input type="checkbox"/> 사무원 <input type="checkbox"/> 고용인 <input type="checkbox"/> 동거자 성명()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둠 <input type="checkbox"/> 송달받을 본인 <input type="checkbox"/> 사무원 <input type="checkbox"/> 고용인 <input type="checkbox"/> 동거자 성명()			
받은날짜	년 월 일 시 분			
송달장소				
송달하지 못한 사유	횟수	1회	2회	3회
	사유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위와 같이 <input type="checkbox"/> 송달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송달하지 못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우체국 집배원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광화문 빌딩 West 12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1. 직접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2. 전달 장소는 번지까지 자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우편일부인을 날인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36호 서식]

조사보고

담당 전문위원	진상조사 소위원장

2017. . . .

사건번호 : 000

사건명 : 000000000000 사건

보고자 : 조사2팀 전문위원 000

제목 : 000000000000 보고

【000000000000 사건(사건번호 : 000)】관련, 참고인 ○○○이 임의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다 음 -

1. 면담 경위

○ 대상자

- 성명 :
- 사건관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면담자 : 전문위원 000

○ 일시·장소 :

2. 주요 내용

가. □□□□□ 관련 사항

3. 특이사항(특이사항 있을 시 작성)

4. 향후계획 등

■ **기획·편집**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집** **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백서 편집위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인 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2019 문화체육관광부

※ 백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누리집(www.blacklist-free.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9 791163 570363

ISBN 979-11-6357-036-3

ISBN 979-11-6357-035-6 (세트)

비매품/무료
94300